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12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12

한국국제협력단

저자

책임연구원

이 해 경

- 현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장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직업재활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직업재활전공) 이학박사

주요 연구 실적

- ▷ 저서(공저): 장애정책의 이해(2020), 직업재활시설론(2014)
- ▷ 연구보고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2020),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태조사 방안 등 연구(2019), 인천전략 이행측정지표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매뉴얼 개발 연구(2019),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 및 Post-인천전략 대응방안 마련 연구(2018),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2018) 외 다수

공동연구원

최 승 철

- 현 서울시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장애인개발원 초빙연구원
- 미국 위스컨신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주요 연구 실적

- ▷ 최근 논문: 면접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조력인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제10권, 제1호, 2019.
- ▷ 최근 연구: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KOICA 용역연구, 2016.

이 선 화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박사 수료

주요 연구 실적

- ▷ 최근 논문: 시설 보호 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이 탈시설 욕구에 미치는 영향(서해정 · 이선화) 장애인복지연구 제11권1호, 2020.
- ▷ 최근 연구: 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20, 공동), 장애등급제 폐지시행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2020, 공동), 인천전략 이행측정지표 통계 및 보고서 작성 매뉴얼 개발 연구(2019, 공동),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2019, 공동) 외 다수

자문위원

김 미 연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이 태 수

-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조 성 민

- 더인디고 대표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koica.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문 요약

이 연구는 KOICA가 장애 관련 개발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이행하고 KOICA의 장애포괄적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의 작업들을 수행한다. 먼저, 호주를 포함하여 4개국이 장애포괄적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2017년 이래로 KOICA가 수행한 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나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획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장애포괄적이지 않았는지 분석하여 향후 장애 관련 사업들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2020년에 KOICA가 착수한 비장애 관련 사업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었는지 회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소지가 있는지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의 국제개발 협력기구들은 장애포괄적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직원들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다. 둘째,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들은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의 몇 가지 핵심 요소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사업들은 기획 단계에서 장애통계를 구축하는 데, 증거에 기반하여 니즈조사를 하는 데, 장애인감한 지표를 구축하는 데, 그리고 사업의 기획에 장애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데 개선이 필요했다. 셋째, 2020년에 착수된 KOICA의 비장애 관련 사업들 중 약 절반 정도가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주류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은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하는 니즈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점,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제도적, 환경적, 또는 태도적 장애물들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해당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분야들은 교육, 보건, 농림수산 등이고, SDGs 세부목표들 중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세부목표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 사항들을 근거하여 이 연구는 KOICA에 대해 장애포괄적 사업의 전담인력의 배치,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침의 마련, 증거에 기반한 장애포괄적 사업의 기획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된 장애포괄적 사업들의 중장기적 확대 등의 정책들을 제안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ree tasks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disability-inclusive improvement of KOICA's disability-related projects and to progressive expansion of its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Firstly, it derives implications helpful to KOICA through analysis of cases in which four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have successfully implemented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Then, it analyzes the disability-related projects done by KOICA since 2017, in order to figure out how much disability-inclusively the projects were designed and in which features of disability-inclusiveness they were relatively weak, and suggest measures for improving them in more disability-inclusive manner. Lastly, it examines retrospectively how many projects and in which areas could have been disability-mainstreamed among KOICA's non-disability-related projects launched in 2020, in order to predict the possible expansion and direction of KOICA's disability-mainstreaming projec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ies of Australia, Austria, the United Kingdom, and Finland have prepared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assigned their personnel to supervise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and provided relevant trainings for their employe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ir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Secondly, KOICA's disability-related projects were weak in several key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cluding collection of disability statistics, evidence-based analysis of needs, establishment of disability-sensitive indicators, and engaging of persons of disabilities at the designing of projects. Lastly, it was estimated that about half of KOICA's non-disabled-related projects launched in 2020 could be implemented in the disability-mainstreaming mode.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possibility of disability-mainstreaming are that the needs of the disabled are satisfied unequally compared to the non-disabled people in the needs to be satisfied by a project, that institutional, environmental, and/or attitudinal barriers making the need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atisfied unequally can be identified, and that measures to eliminate them can be incorporated in the project. Also, major areas in which disability–mainstreaming can be implemented are education, health, and agriculture/fisheries, and are largely relevant to the SDGs targets which explicitly target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ed several policies and programmes to KOICA, including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disability–inclusive project, allocation of personnel specialized in and dedicated to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evidence–based designing of disability–inclusive project, and mid– to long–term expansion of disability–inclusive projects related to the SDGs targets which explicitly target persons with disabilities.

목 차

국문 요약	i
Abstract	ii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2
1) 연구내용	2
2) 연구방법	4
 II.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개념 및 원칙	6
1. 장애포괄적 개발 세부 구성 개념	6
1) 장애포괄적 개발의 개념	6
2)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 개념	7
2. 장애포괄적 개발의 주요 원칙	8
3.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기반 접근	12
1)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12
2) 인권기반 접근에서의 개발과 장애	14
 III.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해외 사례	16
1. 호주	16
2. 오스트리아	20
3. 영국	24
4. 핀란드	29

IV.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분석	32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32
1) 분석 목적	32
2) 분석 방법 및 내용	32
3)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43
2.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58
1) 조사 목적	58
2) 조사 방법 및 내용	58
3) 조사 대상 비장애 관련 사업	60
4)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결과	60
5) 소결	71
V. 결론 및 제언	74
1. 결론	74
2. 정책제언	75
1) 증거 기반 사업 추진	75
2) 장애인의 참여	76
3) 증거기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77
4) 장애주류화 사업 분야 확대	77
참고문헌	80
부록	82
[별첨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82
[별첨 2]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대상 사업	119
[별첨 3]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122
[별첨 4]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업과 불가능 사유	171
[별첨 5] 장애포괄적 사업의 주요 요건	178

표 목차

〈표 Ⅱ-1〉 장애포괄적 개발에 핵심적 인권규칙 적용 방안	11
〈표 Ⅲ-1〉 장애주류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5가지 모니터링 단계	22
〈표 Ⅲ-2〉 해외 사례를 통한 코이카의 함의 요약	31
〈표 Ⅳ-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틀	35
〈표 Ⅳ-2〉 장애물의 유형	40
〈표 Ⅳ-3〉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예시)	44
〈표 Ⅳ-4〉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1	62
〈표 Ⅳ-5〉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2	64
〈표 Ⅳ-6〉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3	66
〈표 Ⅳ-7〉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4	68
〈표 Ⅳ-8〉 사업 형태별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72
〈표 Ⅳ-9〉 사업 분야별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72

그림 목차

[그림 Ⅱ-1] 이중트랙 접근	13
[그림 Ⅲ-1] 장애포함에 대한 DFID의 변화 이론 요약	27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국제사회는 뉴욕에서 열린 UN세계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개발(Leave no One Behind)”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2030년까지의 17개 목표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장애이슈가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SDGs는 명시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세부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UN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라 함)’을 2008년에 비준하였고, CRPD는 2009년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이 되었다.

또한 UN에서는 아·태지역 장애인들이 전 세계 장애인구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2년 선포된 ‘UN 장애인 10년(1983~1992)’의 결과가 생각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해 지역사회에서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아·태장애인 10년’이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계획(인천전략)’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실현(Make the Right Real)에 초점을 둔 UN ESCAP 62개 회원국의 공동행동전략, 2013년 7월에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되어 장애가 범분야 이슈에 포함시킴으로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KOICA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10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2018년 7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향후 이들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양적으로 적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KOICA가 개발협력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장애포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 목표는 첫째, KOICA 사업이 장애포괄적 원칙 또는 장애 관점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장애 관련 사업의 현황과 수행 내용 및 방식을 분석하여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 관련 사업 현황 분석은 OECD/DAC의 장애정책마커(disability policy marker)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로 KOICA 장애 관련 사업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사업의 특정 편중성 등의 문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둔다.

KOICA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수행 내용 및 방식을 OECD/DAC의 평가기준 등의 기준을 기반으로 장애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KOICA 장애포괄적 사업의 확대 수행 및 우선적 수행을 위해 먼저, KOICA의 지난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추진 가능성을 회고적으로(retrospectively) 조사한다. 추후 장애주류화 사업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외국 사례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KOICA 및 국내 NGOs 등의 역량, SDGs 등을 고려하여 KOICA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애포괄적 사업의 범주를 제시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개념 정립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장애포괄적 개발과 관련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나아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권 기반 접근과 장애포괄적 개발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장애포괄적 개발의 실천은 ‘이중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평등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며, ‘이중트랙 접근법’은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회,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장애 민감한 조치를 통합시키는 ‘장애주류화’와 장애인의 권한 부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 특정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하는 ‘장애 특정적 조치’로 구성된다.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관심사항 및 경험을 모든 개발 정책 및 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수 부분으로 만듦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개발의 이념, 기획 및 이행에서 연속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절차 및 방법의 해외 사례 조사

장애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진정으로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종 구체적 조치들을, 가령 관련 지침,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외국 사례와, 장애포괄적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외국 사례를 조사한다.

시사점은 KOICA가 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도출하고 KOICA가 향후 어떠한 범주의 장애포괄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하는 데 활용한다.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해외 사례로는 호주의 DFAT 사례와 영국의 DFID, 오스트리아, 핀란드 사례를 조사하였다.

장애포괄적 사업의 현황에 대한 사례로는 호주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의 모두를 위한 개발(Development for All) 2015-2020의 처음 3년 성과에 대한 호주 개발효과청(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 ODE)의 평가 자료¹⁾, 그리고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DFID)의 장애포괄 추진전략²⁾을 분석하였다.

(3) KOICA 개발협력사업 현황 분석

KOICA 장애 관련 사업의 일반 현황과 여러 차원의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2017. 1.~2020. 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장애 관련 사업들을 장애주류화/장애 특정적 사업 유형, 사업 분야, 사업 형태, 예산 규모 등의 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KOICA 장애 관련 사업이 적절하게 장애포괄적으로 계획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

1)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Development for All: Evaluation of Progress Made in Strengthening Disability Inclusion in Australian Aid, Nov. 2018.

2) 영국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는 2020년 8월부터 외무, 연연방청과 통합되어 외무, 연연방 개발부(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로 대체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8년 DFID에서 발표된 자료임.

1.~2020. 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장애 관련 사업들의 개별 기획서 또는 제안서가 사업의 장애포괄을 보장하는 장애영향평가를 적절히 수행했음을 보여주는지 조사하였다.

(4) KOICA 장애포괄적 사업의 질적 개선 및 확대 방안

KOICA 장애 관련 사업에 대한 장애 관점에서의 분석, KOICA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문제점의 주요 영역의 한 그룹은 장애 관련 사업의 편향적 수행, 장애 관련 사업에서 장애 관점의 미진한 또는 부적절한 반영, 비장애 관련 사업에서 장애주류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다.

문제점의 다른 그룹은 장애포괄적 사업의 양적 부족이다. 이 양적 부족 여부는 호주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포괄적 사업을 확대하되, 우선적으로 확대 또는 집중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예측되는 장애주류화 사업의 확대의 경우에도 사업 분야의 우선성과 균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2) 연구방법

(1)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연구

본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의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OECD/DAC, EU) 등의 문건 및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수행 기준을 마련한, 그리고 사업의 확대 전략을 수립한 대표적 해외 사례(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2) KOICA 장애 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분석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및 주류화 사업의 분석 기준 마련을 위해 장애 관련 KOICA 정책 자료 및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였다. KOICA의 장애주류화 및 장애특정적 사업을 분야별로 관련 기준의 충족 여부나 정도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KOICA의 기종료된 비장애포괄적 사업들의 장애포괄적 추진 가능성을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구성 요소별로 회고적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실시

KOICA 비장애사업의 장애포괄적 추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포괄적 개발 기본구성 요소별로 분석하고, 장애포괄적 가능성이 있는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였다.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연구진의 의견을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그 사유와 근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연구진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제시한 경우, 전문가가 가능사업으로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을 별도로 기술하였다.

또한 장애계, 개발협력사업 관련 전문가, 발주처 담당자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조사방법과 내용, 조사결과 논의, 주요결과 및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얻고자 연구기간 동안 2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여 비대면회의(서면자문)를 병행하였다.

Ⅱ. 장애포괄적 개발의 기본 개념 및 원칙

1. 장애포괄적 개발 세부 구성 개념

1) 장애포괄적 개발의 개념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포괄(Inclusion)’을 “그룹이나 구조물에 포함시키거나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상태”로 정의한다. 개발협력포용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이 사회, 정치, 경제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평등하게 이익을 얻도록 보장한다.

개발(development)은 발달은 모든 집단, 특히 성, 민족, 인종, 빈곤 또는 장애로 인해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집단들이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성과(achievement)로부터 동등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포괄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포괄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은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개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만들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contribution)를 중시하고 요구하는 것은 pro-poor approach이라 한다.

국제 장애 및 개발 컨소시엄(International Disability and Development Consortium : IDDC)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포괄적 개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포용적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 포함(inclusion)과 개발(development)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 포함은 과정이자 목표이다.
- 다양성은 삶의 사실이며, 차이는 정상이고, 어떤 사람들은 차이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보편적, 일부 문화 및 맥락에 특화된 요인일 수 있다.
- 포용은 사회가 차이를 좁히고 차별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 아닌 사회를 문제로 보고 있다.
- 포함을 달성하려면 트윈 트랙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 배제(주장)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에 초점을 맞춘다.

- 역량강화 및 참여 로비를 지원하기 위해 배제된 그룹에게 초점을 맞춘다.
- 포용은 사회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협력과 네트워크는 포용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 그러므로 포괄적 개발은 모든 소외/배제 집단이 개발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 장애포괄은 SDGs와 인천전략 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2015년 SDGs의 일부 세부 목표에서 장애를 명시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빈곤, 불평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전략은 인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및 촉구하는 방법과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 걸치는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의미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 개념

포괄적 개발의 달성은 개발 의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간과하지 않도록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주류화는 이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며 필요한 전략이다.

즉, 장애 주류화는 개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장벽을 없애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차별을 방지하여 장애와 비장애인이 개발협력 측정에서 평등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the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 ADC).

따라서 장애 주류화는 장애인을 포함하거나 장애 관점을 개발 협력에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주류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개발협력 방안과 개입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고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류화는 끝이 아니라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모든 부문에 걸쳐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참여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DPO와의 협력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과거에 입증된 바 있다.

장애주류화는 성주류화와 같이 범분야 이슈와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에 속한다는 유사성이 있는 반면, 접근성의 차이점이 있다.

유엔 문건에서는 장애주류화와 성주류화의 성공의 지점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주류화 접근에서 핵심적 요소는 ‘개발’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유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의였고, 그것은 ‘개발의’ 목표, 전략 및 자원할당에 영향을 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다른 행위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으며, ‘성평등의 수준’을 변화시켰다. 장애주류화의 경우의 성공은 장애인이 개발 과정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해주는,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좌우될 것이다”

2. 장애포괄적 개발의 주요 원칙

개발협력의 경우, 주로 장애를 개인 손상의 결과로 정의하는 "의료 모델"에서 환경 및 사회적 장애물에 초점을 맞춘 "사회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모델은 문맥적 요소, 즉 장애인의 포함에 대한 신체적, 수직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한다.

사회적 모델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에서는 장애에 대한 대응이 단순한 치료와 재활 조치 이상의 것을 수용해야 한다.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개발 협력에서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다중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독일 ‘경제협력 및 개발부’(연방정부)에서는 핵심 인권 원칙으로 유엔 조약기구가 정교하고 독일의 개발정책에 의해 채택된 비차별, 기회의 평등, 참여, 권한 부여, 책임감 및 투명성을 포함한다.

CRPD의 8가지 일반 원칙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고 그것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다.

일부 일반 원칙(예: 비차별, 기회균등)은 장애의 맥락에서 핵심 인권 원칙을 명시.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차별(예: 남성과 여성의 평등, 아이들의 진화하는 능력에 대한 존중)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것(차이에 대한 존중, 고유 존엄과 개인의 자율성, 접근성, 사회적 보호)은 장애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측면을 강조. 전체적으로 일반 원칙은 포용적 사회의 기본을 구성한다.

독일 ‘경제협력 및 개발부’(연방정부)에서는 장애포괄 개발에 적용되는 주요 인권규칙들은 다음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존중 강화
- 접근성 보장
- 비차별, 기회의 평등, 성평등 강조
- 장애아동의 권리 보장 촉진
-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
- 책임성 강화

이러한 원칙이 자신의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업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 각각은 세 가지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국가나 지역사회의 법률, 정책 또는 관행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존중하는가?

- 우리 자신의 조직이나 프로젝트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원칙을 존중하는가?
- 파트너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어느 정도 원칙을 존중하는가?

또한 기본 질문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우리가 일하는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가능 요소와 장벽을 알고 있는가?
- 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모든 잠재적 참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는가?
- 장애 포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 장애인을 포함하는 조직적 실행방안이 있는가?(예를 들어, 장애직원의 고용을 통해)
- 장애인과 그 조직이 우리의 활동에 대한 계획, 실행,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는가?
- 파트너가 장애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과정이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개방성이 필요하다.

이론적 원칙이 실제 상황에 적용될 때마다, 모호성과 불완전성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장애 포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권리의 점진적 실현은 인권기반 접근의 자연스러운 차원이다.

다음 사항은 인권 기반 장애 접근법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 **Small steps count** : 수세기 동안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장애인에 대한 배제는 종종 장애인의 사회로의 완전한 포함을 불가능한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낙담하지 말고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가장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한다.
- **Given limited resources, trust your creativity** : 종종 장애인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 환경에서는 간단한 솔루션이 중요하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직원들이 포괄적인 업무 관행을 위한 상식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장려할 것이다.
- **Involve the leadership of your organisation** :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은 의무수행을 강화하여 권리를 주장할 의무와 권리보유자(duty-bearers)를 강화하는 것이다. 리더스태프에게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게 하고 본보기로 이끌도록 독려한다.
- **Let persons with disabilities help you** : 장애에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고 장애인을 다루는 실수를 피하고 싶어 ‘잘못된 일’을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생각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재빨리 추측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을 참여시켜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Celebrate your successes** :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위해서는 성공 스토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가정에 직면해 왔으며, 많은 실무자들은 오랜 기간 메인스트림 이슈의 맥락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시행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조직이 장애 포함을 위해 취하고 있는 작은 조치에 자부심을 갖고 이를 다른 조직과 공유할 것이다.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방식은 부가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발 조직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인권기반 접근은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포괄적이며, 보다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기여하고, 따라서 장애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고 있다.

〈표 Ⅱ-1〉 장애포괄적 개발에 핵심적 인권규칙 적용 방안

영역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에 대한 존경 강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장애인은 어느 정도인지, 국가 법률, 정책 및 전략은 어느 정도인지, 공공 및 민간 기관은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실제로 존중하는지, 직장 직원은 장애인 및/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편견을 보이거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는가?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등에 관한 정책이 있는가? 장애인 또는/그 밖의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는가? 등
접근성 정의 및 당면 과제 보장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장애인이 건물, 급수, 위생 및 운송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합리적 가격의 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장벽을 알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접근성과 보편적 설계를 지침 원칙으로서 준수하고 촉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라 접근성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등
비차별, 기회의 균등과 성평등 강조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장애인이 활동과 행사에서 눈에 보이는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촉진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는가?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에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우리 자신의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어느 정도까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을 취업면접에 초대하는가? 장애를 가진 직원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장애인 직원의 비율은? 등
장애아동의 권리보장 촉진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활동적인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존경 받고 있는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보이는가? 그들은 조직을 대표하는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비장애인 또래와 동등한 수준에서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사회적 배경이나 장애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하고 진화하는 능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고수하고 장려하는가?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의 특정 취약점을 존중하는 아동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가? 등

영역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강화 촉진 및 보장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장애인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대표하는 그룹(장애인단체)로 조직되어 있는가?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은 빈곤퇴치 전략 설계와 같이 지역사회, 지역 또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표되는가? 장애인이 정부기관 및/또는 NGO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장애인이 직원, 외부 고문, 이사 등 우리 조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이 리더 포지션에 있는가? 장애 직원들이 우리의 내부 역량 개발 및 우천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가? 등
책임성 강화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특정 인권 핵심 원칙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질문	국가법과 CRPD 사이의 차이와 편차가 존재하는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존의 법률, 정책,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등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위한 질문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불만 사항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가? 등

* 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2).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in development

3.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기반 접근

1) 장애포괄적 개발과 인권

세계적인 추산에 따르면 15세 이상 세계 인구의 약 15%가 장애인이다. 또한 전 세계 인구 중 약 3.8%가 시각장애나 하반신 마비 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빈곤은 장애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물이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는 여성, 노인, 그리고 가난한 인구 집단 사이에서 더 널리 퍼져 있고, 장애인은 오명과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WHO/World Bank 2011). 따라서 장애는 발달과 인권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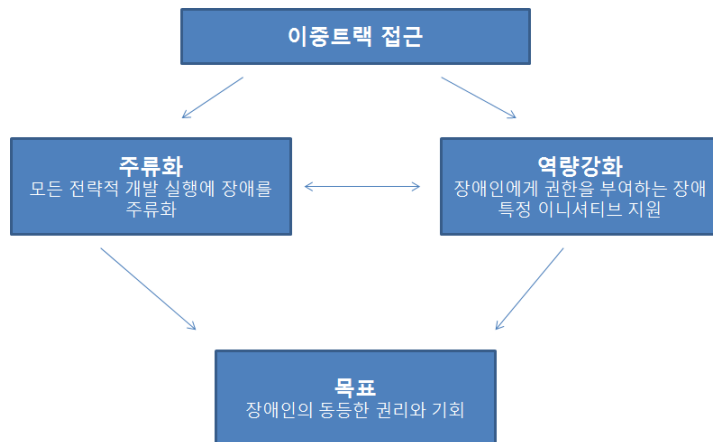
인권은 독일 개발 정책의 지침이다. 최근 연방경제협력개발기구(BMZ)의 ‘독일 개발정책 인권’(BMZ 2011) 전략은 인권기반 접근(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 HRBA)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의 개발협력에 체계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그것은 차별에 특히 영향을 받는 집단과 개인(예: 여성, 아동, 청년, 성소수자, 원주민 집단, 장애인, 노인)의 포함을 촉진하는 것이 그들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는 사회 내부의 장벽을 해체함으로써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CRPD를 언급하고 장애에 대한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권기반 접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소위 트윈트랙접근(twin-track approach)으로 불리는 접근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모든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장애에 대한 포괄적 인권 관점을 주류화하는 것과,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에 대한 이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특화 시책을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DPO를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역량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한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이 포함)이다.

[그림 II-1] 이중트랙 접근



* 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2)

인권기반 접근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법적 청구권이 있는 적극적 대상자일 뿐 아니라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수동적인 지원 대상자일 뿐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발 협력은 "의무 보유자" 즉,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주장할 "소유자"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인권기반 접근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장애인을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대상 그룹에 추가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또한 핵심 인권 조약, 특히 CRPD에 있는 국제 인권 표준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표준, 즉 특정 권리의 내용은 유엔 인권 조약 기구가 발표한 일반 논평에 명시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형성하는 핵심 인권원칙을 준수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권기반 접근에서의 개발과 장애³⁾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람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가난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양한 차별 패턴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별이나 민족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연적 다양성의 요소로서 개인의 장애를 존중하며, 장애 특유의 편견, 태도 및 인권 향유에 대한 기타 장벽을 다르다.

장애인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준으로 권리보유자로 인식.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장애인을 사회에 완전히 포함시키기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 의무를 지닌 자(duty-bearer)로 인식한다.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관한 장애인 및 기타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

다음은 목표로 하는 조직,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 인권기반접근을 적용하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문제가 다 있는 것은 아님.
-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권기반접근의 적용은 항상 진행 중인 작업이다. 마찬가지로, 인권기반접근 결과와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단일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은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목표와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유엔 조약체계의 인권지표는 국제인권협약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협력국들이 가지고 있는 진행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지원의 영향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지원 및 참여 또는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세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데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

인권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인권과 장애포괄적 관점을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연쇄결과로 통합시켜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핵심 인권 기준과 원칙을 프로그램

3) F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12),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in development 발췌·요약함

목표와 각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 중재(산출)는 장애인 및/또는 의무자의 역량 강화(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영향 수준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지표는 장애인과 기타 취약계층을 결과와 영향 수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차별화해야 한다. 또한 표현된 욕구와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포함과 인권 영향을 측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양적 및 질적 지표와 방법을 혼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영역에서의 장애 포함은 정규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교사가 포용적 문화를 촉진하고 장애나 사회적, 민족적 배경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서로 받아들일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결국, 지표의 특성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부문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권기반 접근을 적용하려면 단순히 장애인을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대상 그룹에 추가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그것은 핵심 인권 조약, 특히 CRPD에 있는 국제 인권 표준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러한 표준, 즉 특정 권리의 내용은 유엔 인권 조약 기구가 발표한 일반 논평에 명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인권법을 형성하는 핵심 인권원칙을 준수하고 증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기반 접근을 주류화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의 모든 단계, 즉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인권표준과 원칙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프라 분야(물 및 위생, 주택)와 사회분야(보건, 교육, 사회보호)의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하며, 고용, 경제발전, 전문교육 및 거버넌스와 같은 다른 분야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다.

Ⅲ.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해외 사례

1. 호주⁴⁾

호주의 2015~2020년 전체를 위한 개발(Development for All 2015-2020)에서는 외교 통상부(DFAT) 성과관리 시스템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장애 포함 여부를 평가한다. 국가, 지역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APPR), 개별 투자에 대한 지원 품질 검사(Aid Quality Check : AQC)가 그것이다. 이 평가에서는 연차 프로그램 수행 보고서(Annual Program Performance Report : APPR)가 아닌 AQC가 장애 포함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AQC를 사용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AQC는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장애 포함의 주요 측면의 구현에 대한 정보와 표준화된 평가를 제공하며,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호주의 장애포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2015~2020년 전체를 위한 개발(Development for All)’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포괄은 전략의 지리적 중점 영역인 태평양과 동남 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 장애 포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장애 포괄이 강화되었다. 장애인들은 CRPD의 시행으로 그들의 권리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 Development for All ‘Nothing about us without’에 요약된 핵심 원칙이 채택되었다. 검토된 모든 프로그램들은 현재 훨씬 더 큰 역량을 가진 DPO의 능력을 구축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호주 원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작업은 또한 DfA2⁵⁾에 설명된 다른 원칙들과 일치한다. 포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증거에 기초했고 프로그램 혜택이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다양성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왔다.

두 번째 전략에서 확인된 포괄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접근법이 사용되었다. 메인스트림과 장애 관련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트윈 트랙 접근법을 통해 장애 포괄이 달성되었다.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접근법도 잘 활용되고 있다. DFAT의 리더십은 파트너

4)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Development for All: Evaluation of Progress Made in Strengthening Disability Inclusion in Australian Aid, Nov. 2018에서 발췌·요약함

5) DfA2는 원조 프로그램에서 장애포괄을 강화하기 위한 2015-2020년(2기) 계획인, “Development for All 2015-2020: Strategy for strengthen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 Australia’s aid program”을 의미함

구현 프로그램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었다. 사람 대 사람 연계는 네트워크와 연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육성되었다. 잘 활용되지 않은 접근법은 ‘민간 부문 자원과 아이디어를 해치는 것’이다.

장애 포괄을 가능케 한 요인은 검토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활성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인 노력, 즉 작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장된 다음 수년간 장애에 초점을 맞춤
- DPO 역량 구축 및 DPO와 파트너십 체결
- 기술적 전문지식의 활용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DFAT 고위 경영진과 모든 계층의 DFAT 직원들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참여시키는 것이다. 장애 포괄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자금, 특히 합리적인 배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중요한 요소다. 어떤 경우에는 DFAT 및 파트너 조직에서 일하는 혁신적 프로그래밍과 헌신적인 개인이 장애를 포괄하는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비록 좋은 진전이 있었지만, 호주 원조 프로그램은 여전히 완전한 장애를 포함한 것과는 거리가 아직은 멀다. 2018년 평가에서는 장애포용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 호주의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더욱 포괄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에서 확인된 지원자가 전체 지원 프로그램에 걸쳐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면 장애 포괄이 강화된다.

장애 포괄은 성공적이었던 분야에서 더욱 개선될 수 있다. DPO를 위한 역량 구축은 검토된 모든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그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역량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애인들은 포괄적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대표 기관에 대한 역량 구축은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시행 파트너들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면 인도주의적 대응에 장애 포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가에서 덜 포괄적이라고 판명된 영역에서 장애 포괄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 장애 포괄은 일반적으로 지역 투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특히 취약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네팔, 솔로몬 제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도 장애 포괄이 약하다. 특히 기반시설과 농업, 수산, 수자원 분야에 대한 포괄적 투자가 비례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부문도 포괄을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 포괄은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부 구성요소 및 일부 국가에서의 시행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인도주의적 대응에서, 일부 실행 파트너들이 제공한 지원은 NGO들이 제공한 지원보다 훨씬 덜 포괄적이었다.

Recommendation 1. 인권 및 지원 우선순위로 장애에 대한 호주의 지속적인 개발 약속은 다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구축함으로써 입증되어야 한다.

- CRPD의 비준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 프로그램의 개발, 구현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 포괄을 고려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
- 지리적으로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에 계속 초점
- 지원 및 인도주의적 투자에 있어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주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에 특화된 활동과 함께 트윈 트랙 접근방식을 계속 사용
- 성별과 장애의 교차점에 관련된 복합적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점점 더 많은 지원 업무
- 다양한 장애인의 포괄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Recommendation 2. DFAT는 다음을 포함하여 DPO 역량 구축의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 핵심 자금을 포함한 자금 제공
- DPO와 파트너십 체결

Recommendation 3. DFAT는 DFAT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파트너 기관이 품질 장애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 캔버라 장애부 직원 수를 대폭 늘려 장애 포괄을 지원하기 위한 DFAT의 내부 기술 역량 구축 및 기타 조치
- 기술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개발

Recommendation 4. DFAT는 다음을 포함하여 DFAT 내에서 장애 관련 개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장애 포괄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일관된 메시지
- DFAT의 자체 내부 운영을 DFAT 장애 조치 전략 2017-2020과 일관되게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 특정 교육 기회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역량 개발 전략, 기존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장애 통합, 업무 설명에 장애 포괄 개선 및 모니터링 작업, 장애 초점 파악 및 구축
- 장애 포괄에 대한 학습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

Recommendation 5. DFAT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명된 분야에서 장애 포괄을 개선해야 한다.

- 지역 프로그램
- 일부 국가의 bilateral 프로그램
- 사회기반시설과 농업, 물, 생활 등 일부 부문

- 호주 NGO 협력 프로그램에 포함된 장애에 대한 평가 및 호주 파트너 NGO가 취약한 부분을 다루도록 요구
- Australia Award short courses
- 일부 태평양 섬 국가에서 호주상 장학금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된 글로벌 프로그램의 시행
- NGO 이외의 인도주의적 실행 파트너에 의한 지원
- 인도주의적 지원에 DPO의 참여

Recommendation 6. DFAT는 다음을 포함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걸쳐 장애 포괄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확립해야 한다.

- 장애 관련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AQC의 유용성 개선을 위한 작업
- APPRI가 장애 결과와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캡처하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 개발
- 가능한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걸쳐 조정되는 장애인의 결과를 식별하는 프로그램 요구
-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에 결과의 측정값을 포함하도록 요구

호주사례에서의 합의점은 첫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트윈트랙 접근(twin-track approach)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고위층 및 모든 계층의 지지·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 셋째, DPO의 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며, 넷째, 파트너 기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관련 부서의 직원수를 확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관 내 장애 관련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통해 장애포괄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KOICA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에 특화된 사업과 함께 장애포괄적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 트랙 접근방식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KOICA의 모든 직원이 장애 포괄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 수를 늘려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PO와의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KOICA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2. 오스트리아⁶⁾

Appear 프로젝트는 대학이 자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ppear 프로젝트는 개발지향적 접근방식을 따르며, 이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고 사회현실을 프로젝트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사회 변화의 진전)을 따름으로써 적절히 분석, 모니터링 및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이익이 없어져야 한다. 여기서 포용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발휘되었다.

Appear 프로그램에 따라 그리고 프로젝트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즉 계획 단계,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 장애 주류 및 포괄적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에 따른 사회적 차별은 고등교육 기관만 추적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적절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가능한 개입과 연구 분야는 고등교육기관의 신체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지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접근성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Appear 파트너십은 프로젝트 작업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Appear 학문적 파트너십에서의 장애 주류화 적용과 장애 석사 및 박사 지원자의 우대(동일한 자격을 가진 경우)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PRD)의 원칙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다음 활동 분야는 개념화 또는 개념화 시에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로젝트의 시작 대신 그들은 프로젝트 기간 전체에 걸쳐 가능한 활동과 개입의 목록으로 기능해야 하며 이미 실행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도 고려할 수 있다.

- **장애관점의 통합** : 장애인의 요구와 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DPO와의 협력을 한다.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DPO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준선을 제공하기 위해 포함시킬 수 있는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 톨의 정교화뿐만 아니라 니즈, 격차, 성과, 도전, 성공 등을 추적할 수 있는 톨의 개발을 옹호한다. 각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 격차, 포괄성 및 장벽 인식과 관련된 평가를 옹호한다. 장애학생이 소풍, 현장실습, 강의 등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며, 현장 연구 또는 내부 대학 조사를 위한 데이터가 수집될 때마다 소외된 그룹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한다.

6)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2016), Austrian Partnership Programme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 에서 발췌 · 요약함

- **인식 제고** : 프로젝트 회의, 다른 이해관계자, 교사 등과의 회의 중 장애 주류화 및 포괄에 대한 질문을 해결한다. 각 기관과 협력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정보자료를 정교하고 보급한다. TV, 라디오, 신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결과나 노력까지도 문서화하고 전달하며, 대중적 태도와 공공 정책의 변화에 기여한다. 고등교육기관 또는 DPO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단기 또는 장기 장학금의 가능성을 홍보한다. 접근 가능한 환경과 포괄적인 커리큘럼을 옹호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학생을 초대하여 미팅,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발표하여 역할 모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접근성** : 점자 대본, 대형 인쇄물 및 기타 보조 장치 및 기술(예: 음성 스트림)과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을 위한 훈련 및 교재 개발을 옹호한다. 지상 화장실, 경사로 건설, 보행자 환경 등과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한 접근성 제공을 고려하도록 물리적/구조적 접근성을 옹호한다. 적절한 정보 자료와 언어를 사용하고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회의와 이벤트를 계획한다. 장애학생을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목표 그룹으로 구체화 한다.
- **프로젝트 관리** : 참여 기관과 이 과학 분야의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포괄에 관한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협력기관에서 장애 주류화에 관한 지침이나 정책이 있는가? 어떻게 지표를 포괄 친화적인 접근(inclusion-friendly approach)을 포함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가? 장애인 이해당사자가 계획 단계와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중에 포함되었는가? 그들의 서로 다른 욕구는 무엇인가? 사업예산에 포괄 관련 활동이 포함되었는가? 프로젝트 팀의 구성은? 장애인의 참여에 장벽이 있는가? 그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은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포함되었는가?

다음 내용은 사업 신청자와 프로젝트 팀원이 장애주류화 조치에서 도출된 성과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그 질문들은 프로젝트 제안의 정교함과 더 많은 논의를 위한 것으로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ADC, 2016).

각 차원의 질문은 지원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명시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차원을 설명하는 목적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목록들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루어야 하는 측면의 전체 목록이나 모든 프로젝트 내에서 반드시 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각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5차원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그리고 5차원에서 장애

주류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프로젝트가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다른 측면들이 더 적합할 수 있다.

〈표 Ⅲ-1〉 장애주류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5가지 모니터링 단계

주제 또는 조직 차원	구체적 내용
1. 프로젝트 설계 및 실질적 질 (혁신적, 문제 지향적, 그리고 학제간 접근법이 필요)	• 제안된 활동을 어떤 맥락과 배경으로 설정(모든 파트너의 지역적, 제도적, 과학적 요구와 요구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가? •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경험적, 교육적 측면의 측면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는가? • 제안된 활동은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역량 개발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는가? • 관련 기관에서 유사한 고등 교육/연구 협력(과학적 및 제도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도된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들 기관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 이 사업에는 대상국 간의 지역협력이 포함되어 있는가?
장애 주류화 차원	• 프로젝트 환경에서 장애재학생이나 장애인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있는가? • 혁신적인 접근법에는 장애/포용에 민감한 접근법도 포함되어 있는가? • 작업 환경에서 장애 메인스트림(모범 사례)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었는가? 어느 수준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결과를 얻는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거나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역량 개발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장애인/장애학생이 이로우니까? • 프로젝트 설계에 장애(주요) 전문가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였는가, 아니면 프로젝트의 구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이것이 예고되었는가? 누구와 어떻게? •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장애 주류화 정책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는가?
2. 프로젝트 관리 및 컨소시엄 역량	• 프로젝트의 조정과 각 파트너의 역할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 팀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컨소시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에 기여하는가? • 주니어 팀과 시니어 팀, 여성과 남성 팀, 오스트리아 팀과 파트너 국가 팀 구성원 간의 균형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 특정 기관과의 협업이 왜 중요하며, 파트너십의 장기적 효과는 개발 영향, 주제 관련 의사결정 등이 예상될 수 있는가?
장애 주류화 차원	• 프로젝트팀 구성은? 장애인의 참여에 장벽이 있는가? •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은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단계 및 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에서 장애 주류화를 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장애학생 대표 사무실 등 각 사무실에 연락할 것을 예고하는가? • 참여 기관과 이 과학 분야의 장애학생 및/또는 장애인 포괄에 관한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협력기관에서 장애 주류화에 관한 지침이나 정책이 있는가?
3. 개발 관련성 및 기여	• 제안된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 국가의 국가/지역 개발 계획이나 빈곤 감소 전략에 기여하는가? • 제안된 활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 집단과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가? • 제안된 활동은 각 국가에서 기관의 제도적 역량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강화하는가? • 사회적 차원에서 제안된 활동의 "수혜자"는 누구이며 예상되는 직간접적 혜택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레벨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주제 또는 조직 차원	구체적 내용
	* 지역 수준(지역사회, 소외 그룹) * 기관 수준(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기관, NGO, 기타 기관) * 지역/국가 수준(기관, 정부기관)
장애 주류화 차원	• 장애 주류화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전략/행동계획은 국가 및 지역 개발계획과 국가 차원에서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들은 당신의 프로젝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1)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포함과 2)광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계획된 활동이 어떤 관련성과 영향을 미치는가? • 포괄적 대학 및/또는 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하여 계획된 활동이 어떤 목적 적 합성과 영향을 미치는가? •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막는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예고되어 있는가? •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이 귀사의 프로젝트의 대상 그룹 및/또는 수혜자인가?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그들의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 결과와 지속가능성	• 컨소시엄은 자금지원 기간을 넘어 지속가능한 협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 프로젝트가 여성의 기회, 생활 여건, /또는 지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 장애인의 기회, 생활환경 및/또는 지위 및 비차별(부가가치)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가? • 제안된 활동은 기관의 교육, 연구 및/또는 관리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이 프로젝트는 어떤 방식으로 국제, 지역, 어드레스 국가 간의 과학 네트워크에서의 파트너의 통합 증대에 기여하는가? • 예상되는 결과 및 결과물의 보급 활동과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스핀오프, 후속 조치, 출판물, 회의, 교육, 교육과정, 감사 교류, 지역 또는 국가 개발 전략 및 활동에 대한 실용적 활용 등)?
장애 주류화 차원	• 프로젝트 활동은 1)해당 파트너 기관의 포함 친화적 접근방식(inclusion friendly approach)과 2)장애인의 생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프로젝트 환경 너머에도 장애학생과 장애인이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장애 주류화는 프로젝트 활동 및 결과(커리큘라, 워크숍, 교구, 점자 성적 등)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 협력기관의 강화는 어떤 용어로 정의되며, 고등교육 내에서 포용적 교육 및 장애 주류화의 교육, 연구 및/또는 관리 측면을 예상하는가? • 사업의 영향과 관련하여 어떤 장애/포용 민감성 지표가 개발되었는지(사업기간 중 단기, 지속가능성에 관한 장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지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5. 비용 효과성	• 예산 균형과 협력사 간 배분이 적절한가? • 현물 기여는 없는가?
장애 주류화 차원	• 사업 시행에 어떤 장애 주류화 전략과 계획이 사용될 것이며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 예산안에 구체적인 장애 주류화 활동이 있는가? (예: 파트너 기관 내외부의 대표자와의 워크숍 및 회의, 점자, 대형 인쇄물, 각 과학 분야에서의 장애학생의 니즈 분석 및 참여 등과 같은 특정 니즈 형식의 번역 비용) • 모두에게 접근성/설계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한가?

* 출처: ADC(2016). Austrian Partnership Programme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APPEAR).

오스트리아 사례에서의 함의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지향적 접근 방식을 추구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장애관점에서의 통합, 둘째, 인식제고, 즉 장애주류화 및 장애포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 셋째, 교재 및 물리적 편의와 같은 접근성 제고, 넷째, 장애주류화 지침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계획,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KOICA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 주류 및 장애 포괄적 접근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 내부 직원 및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심사 및 관리 관계자들에 대한 실시, 장애포괄적 사업을 위한 물리적·정보접근성 제고에 대한 계획 수립을 마련하여 프로젝트 추진 시 장애인의 참여와 의사결정과정 참여의 보장 등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제안한다.

3. 영국⁷⁾

영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장애포괄적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DFID의 비전은 모든 장애인, 여성, 남성, 소녀, 소년들이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는 세계, 즉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A world where no-one is behind)으로서 빈곤 감소와 평화,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전략은 우리가 그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장애 포용적 개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시킬 것이다.

-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과 그들의 가정, 지역사회, 기관 및 사회의 리더로서 참여, 자문, 대표, 경청, ‘우리에 관한 것은 없고, 우리 없이는’의 원칙을 진정으로 실천
- 차별과 유해한 규범에 도전하고 정부와 시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하고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서 권한을 부여
- 개발 프로세스와 결과물에 완전히 포함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인과 동등한 기준으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고 누림

7)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023’에서 발췌·요약함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다음 네 가지의 필수적인 결과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요구한다. 첫째, 모든 장애인의 인권은 완전히 인정되고 존중되며 이행된다, 둘째, 사회와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하고 능동적인 참여, 대표 및 리더십, 셋째, 모든 장애인을 위한 기회와 결과에 대한 동등한 접근, 넷째, 장애 관련 배제의 규모와 성격 및 장애인을 위한 결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 항목에 대한 증거 기반 이해.

DFID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야망을 더 키우고,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정한다.

DFID는 DFID의 모든 업무, 즉 모든 정책, 프로그램, 모든 국가 사무실 및 모든 분야의 장애 포함을 메인스트림하고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메인스트림의 트윈 트랙 접근법을 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DFID는 국제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 DFID는 다른 국가들을 우리 자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잡고, 양자 및 다자 파트너와의 전략적 관계, 공급자와 파트너에 대한 자금 지원, 정부 전체의 개발 및 외교적 노력에 동참하는 등 변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우리는 the Global Disability Summit 2018(GDS18) 약속의 책임과 전달을 보장할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처음에는 DFID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주요 장애를 계속 유지하면서 규모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구별되고 혁신적인 영역 집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향후 5년간 DFID는 행동의 네 가지 전략적 영역을 우선시할 것이다: (i) 포용적 교육, (iii) 사회 보호, (iii) 경제적 능력 강화, (iv) 인도주의적 행동. 이러한 영역과 SDG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DFID가 비교우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영역이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OECD 개발지원위원회의 장애포함 및 권한 부여 마커를 사용하여 모든 영역에서 2023년까지 장애 포함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킴으로써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성공을 측정할 것이다. 이러한 초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작업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장애 포함에 필수적인 세 가지 cross-cutting 영역을 채택하고 있다: (v) 낙인과 차별에 대처하고, (vi) 장애가 있는 소녀와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vii) 적절한 보조 기술에 대한 접근이다.

DFID는 또한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에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인 정신건강 상태와 정신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차별, 낙인의 순환(cycle)을 깨고 있다. 이러한 초점과 함께 모든 DFID 사업부서가 문화와 관행을 변경하고,

장애인의 조직과 의미 있게 협력하며,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기준(standards)을 도입할 것이다. DFID는 모든 연령의 모든 장애인에게 변화무쌍한 변화의 전달을 보장하는 인생 코스로 접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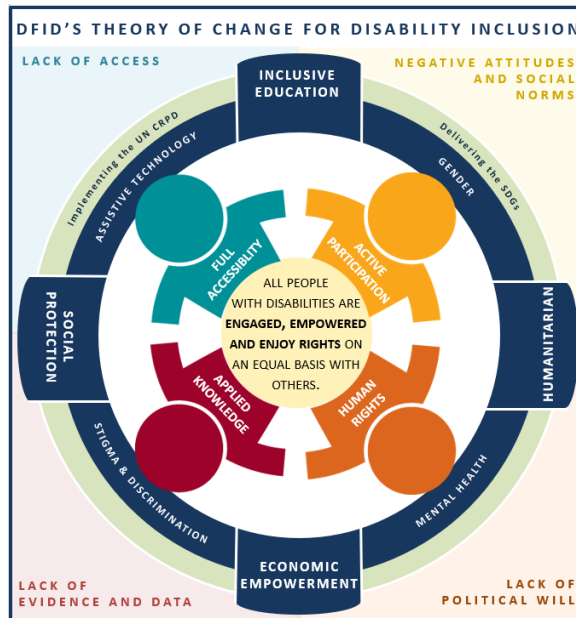
첫번째 영역은 포괄적 교육으로, 모든 장애아동이 현재 학교를 중퇴한 아동을 포함하여 학습과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DFID는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학교를 결석한 수백만의 장애 아동(정신건강 상태, 정신사회적 장애, 지적 장애자 포함)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또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에 접근하는 장애 아동의 수를 늘리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적 개입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의지, 도구, 자원을 촉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고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은 높은 생활비와 의료, 교육, 고용 및 기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에 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DFID는 이러한 전달을 지원하고 장애에 대한 전 세계 및 국가의 집중과 지원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포용적 사회보호를 중심으로 증거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 경제적 강화 부분으로,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이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고 선택과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는 경제적 강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위협적인 장벽을 해소하고, 정신사회적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차별금지법과 정책(및 이행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유해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네 번째, 인도주의적 행동으로서, DFID 내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시스템에 걸쳐, 증거에 기반하고, 공정하며, 설계에 포함되며, 존엄성, 안전, 권한 부여 및 보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완전한 포괄적 인도주의적 대응을 촉진한다.

[그림 Ⅲ-1] 장애포함에 대한 DFID의 변화 이론 요약



DFID는 장애주류화를 위해 모든 DFID 사업부가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종합 표준 기준을 도입했다. 이 표준은 모든 국가 사무소와 부서가 그들의 지도력과 문화를 검토하고, 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프로그래밍을 조정하고, 데이터와 증거를 개선하도록 요구한다. 다섯 가지 표준은 다음 영역을 포괄한다.

- **DFID의 접근 방식과 문화** - 리더십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임. 모든 사업부에 장애인 챔피언⁸⁾을 임명하고, 핵심 계획과 전략에 장애를 포함하며, 장애인 직원을 확대
- **장애인의 참여와 역량 강화** - 우리는 프로그램 및 정책 및 전략의 설계, 구현 및 평가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적인 조직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수행할 것임. 이것은 역량을 쌓아야 하며, 모든 집단을 포함해야 하며, 소녀들과 여성들 그리고 정신 사회적 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함. 이것은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책임 메커니즘의 핵심 부분으로서 강력한 장애 운동의 개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들의 조직에 대한 충분한 투자로 뒷받침될 것임

8) 장애포괄과 정신건강에 대한 내부 챔피언 커뮤니티를 만들어 DFID 전체 팀과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BP(Best Practice)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 - 우리는 국가 정부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장애 포함에 대한 정기적인 참여와 이것이 DFID에 중요한 문제라는 일관된 신호 전달을 기대함. 정부와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오명과 차별을 해결하고 UN CRPD에 의거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래밍** - 우리는 프로그램 목록 조사를 수행하며, 모든 새로운 비즈니스 사례와 모든 연례 리뷰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장애인을 포함하는 정도를 평가할 것이며 모든 프로그램은 OECD-DAC 장애 포함 및 권한 부여 마커를 기준으로 표시될 것임.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규모에 따라 결과를 제공
- **데이터 및 증거** -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관련 지표를 위해 장애 구분 데이터를 수집, 사용 및 분석. 우리는 워싱턴 그룹의 질문들을 사용할 것이고 정신사회적 장애 포함을 다루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장려할 것임. GDS18을 기반으로 10개 국가 정부가 곧 있을 국가 검열이나 조사에서 워싱턴 그룹 질문을 사용하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질문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파일럿 프로그램과 새로운 증거로부터 얻은 교훈은 정기적이고 광범위하게 공유될 것임.

영국은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까지도 포함하는 원칙들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근거가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년간의 계획에서는 교육, 사회적 보호, 경제적 능력 강화, 인도주의적 접근을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OECD DAC의 장애포괄 및 권리부여 마커를 사용하여 모든 영역에서 장애포함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것이 지속가능하도록 DFID 직원의 모니터링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장애 구분 데이터 구축, 장애 포괄적 개발에 대한 교육, 외부기관을 통한 원조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KOICA에 주는 시사점은 다른 나라와 유사하며,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기준 마련, KOICA 직원의 장애 관련 사업 및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을 통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핀란드⁹⁾

핀란드의 역사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어떻게 모두의 필수적인 권리와 복지가 성공적으로 증진되었는지 많은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또한 핀란드는 강력한 장애 운동의 덕을 크게 보였으며, 핀란드 사회 정책과 실천에 발자취를 남겼다. 장애인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개발 정책에도 반영되는데, 평등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투자는 핀란드 모든 개발의 cross-cutting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불평등과 장애 권리를 해결하기 위한 핀란드 모델은 네 가지 주요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모든 활동의 핵심으로서의 인권
- ② 평등하고, 접근 가능하고, 차별이 없는 국가 기관, 전략 및 정책을 지원하고, 모든 계층에서 모든 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의무 보유자의 역량 보장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는 투자
- ③ 성평등은 모든 중재에 걸쳐있으며, 핀란드의 핵심 우선순위
- ④ 특히 시민사회 참여는, 장애인 권리 측면에서 달성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원칙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핀란드 발전협력의 목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칙임

핀란드의 개발협력은 인권기반이다. 이것은 전체 개발프로그램이 장애포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전략이다.

핀란드는 심각한 빈곤에 직면한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정책과 조치들을 지원하는데, 그리고 개발 결과로써 인권 실현을 지원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핀란드의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도덕적 질문이 아닌 인권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란드는 책임의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전달을 위한 구조와 자원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리 보유자, 의무 보유자 및 기타 책임 있는 행위자의 역량을 구축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하면서 모든 활동이 최소한 비차별, 포함 및 참여와 같은 인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The Finnish Approach to Address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olicy에서 발췌 · 요약함

핀란드 개발 협력은 수십 년 동안 장애를 주로 인권 문제로 인식해 왔다. 아직도 대부분 자선이라는 틀 안에서 장애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1980년대에, 그리고 전형적으로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의 관심사로서 핀란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변화, 정책,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예외적이었다.

장애포용에 대한 핀란드 접근법의 핵심 원칙은 "우리 없이는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이다. 이 원칙은 개발협력의 추진과 과정에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DPO)가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또 하나의 핀란드식 접근법의 독특한 점은 장애인 조직의 역량 지원에 집중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상대적으로 저역량 풀뿌리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장애 포함에 대한 핀란드 지원의 상당 부분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설계하고 시행한다.

■ 핀란드의 전략적 우선 순위

- **의무 이행자의 역량강화** : 핀란드는 인권 존중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기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이러한 기구들 중 하나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파트너십(UNPRPD)이다. 핀란드는 아프리카 연합 장애 건축(AUDA)도 지원하고, 핀란드는 2013년부터 아프리카연합(AU) 부서, 회원국, 지역경제공동체 등의 장애 주류화 역량을 지원해 왔다. 이 지원은 또한 아프리카 장애인의 10년을 위한 대륙별 행동 계획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 **권리 의무자로서 장애인의 역량 강화** : 장애 특정적 펀딩의 70%는 핀란드 DPO와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를 통해 할당되며, 핀란드는 또한 주로 국제 장애 연맹(IDA)을 통해 전세계 장애 운동을 지원한다.
- **기본적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원** : 핀란드는 기본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네팔,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교육 분야의 많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장애 관련 CSO 프로젝트는 포괄적이고 특별한 필요성 교육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접근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인도주의적 행동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 : 핀란드는 2013년부터 '강제 배제 장애인 보호 강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여성난민위원회와 손잡고 난민운영에 장애 포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UNHCR 직원에게 장애 문제, 적절한 서비스

및 보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모니터링 및 책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월드비전(World Vision)과 공동으로 케냐, 우간다, 이라크 등의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간편하고 저렴한 기술솔루션과 혁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의 보호, 안전,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물과 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 사례에서의 함의를 정리해보면, 핀란드의 개발협력사업은 인권에 기반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개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해 여러 기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기관에는 장애 주류화 역량 지원을 통해 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DPO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관련 사업이 민간협력사업인 바, 핀란드의 사례에서처럼, DPO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에 의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애포괄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마련을 통해 KOICA의 사업영역 확대 및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종합해보면, 장애포괄적 개발이라는 것은 사업개발 및 추진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코이카의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Ⅲ-2〉 해외 사례를 통한 코이카의 함의 요약

국가	현황	코이카
호주	- 트윈트랙 접근 - 모든 계층의 지지·참여를 중요시 - 장애관련 부서 직원 확대 - DPO 역량 강화	- 트윈트랙 접근 강화 - 전직원의 참여 필요 - 장애관련 부서 현재 부재 - 다양한 민간협력사업 및 역량강화 지원 개발 필요
오스트리아	- 장애관점에서의 통합 - 장애주류화, 장애포괄에 대한 인식제고 - 장애주류화 지침, 정책 마련	- 사업계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장애포괄적 접근 필요 - 전직원 장애주류, 장애포괄에 대한 교육, 인식제고 - 장애포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마련, 실행 모니터링 필요
영국	- OECD DAC의 장애마커 활용 - 직원에 대한 장애포괄적 개발 교육 - 직원의 모니터링과 책임성 강조	-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기준 마련·적용 - 직원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교육 필요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외부기관을 통한 관리 필요
핀란드	기관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역량 지원 및 역량강화	DPO 역량강화 사업 및 지원 강화

IV. KOICA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분석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1) 분석 목적

KOICA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을 분석하는 목적은 해당 사업들이 장애포괄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획되었는지, 사업 기획의 어느 부분이 장애포괄 원칙을 준수하는 데서 취약한지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장애포괄의 핵심 요소라 할, 장애인의 관련 니즈의 평등한 충족 또는 관련 권리의 평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2019년 OECD DAC 장애마커(disability policy marker)가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마커의 도입은 향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장애포괄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2) 분석 방법 및 내용

2017. 1.~2020. 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의 제안서 또는 기획서의 주요 내용들이 장애포괄적인지, 즉 사업이 장애포괄적으로 기획되었는지를 장애포괄성 확보의 주요 도구라 할 수 있는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¹⁰⁾에 기반하여 분석한다.

여기서 ‘장애 관련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내용으로 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정책·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으로 전부 또는 일부 구성된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장애 관련 사업이라고 하여 모두 장애포괄적인 사업인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장애포괄적 개발’은 개발의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장애인 및 그 가족의 니즈 및 소망을 고려하는 관점)을 반영시키고, 그리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이 비장애인과 함께 개발의 수혜자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장애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장애인이 개발 과정 및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어떤 장애 관련 개발 사업이 장애포괄적 개발 사업이 되려면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니즈와 소망을 고려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해당 개발의 수혜자가 되도록

10)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는 “한국국제협력단(2017.10.),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붙임 2]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이다.

보장하고, 장애인을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을 하지 않는 장애 관련 사업은 장애포괄적 사업이 아니거나 불충분하게 장애포괄적인 사업이다.

어떤 개발 사업이 장애포괄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연히 장애포괄적 개발의 구성요소들이어야 하는데, 개발 사업의 기획서가 장애포괄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장애포괄적 개발의 구성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목록으로 만든 것이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개발 사업을 성주류화하기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인 ‘성분석’ 체크리스트의 항목과 매우 유사하다. 참고로, 성분석은 “성주류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도구”로, “다양한 레벨에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역할 및 노동, 분업, 자원과 개발기회에의 접근성의 차이, 자산의 통제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필요, 책임, 의사결정력, 영향력 등 현재의 격차를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요소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 보다 양성평등한 사업이 이행”¹¹⁾되도록 보장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성분석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성분석 체크리스트다. 성분석은 성주류화의 도구이고, 성분석 체크리스트는 성분석의 도구라 할 수 있다.

한편, 성분석 체크리스트와 유사한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성분석과 유사한 분석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 다만 장애포괄과 관련한 분석은 ‘성분석’처럼 널리 통용되는 이름은 아직 없고, 그나마 개념 정의가 있고 장애에 관한 분석임을 보여주는 개념으로는¹²⁾ ‘장애영향평가’가 있다. 장애영향평가는¹³⁾ 어떤 사업이 “장애인의 평등에 미치는 결과와 관련하여 그 영향을 확인하고, 분석하며 평가”하는 과정¹⁴⁾으로, 장애인의 평등에 대한 장애물이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에 통합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의 평등한 사업 수혜와 사업 참여를 보장하기

11) 한국국제협력단, 2017년도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안내서, 2016. 6. p.236.

12) 독일에서는 ‘(장애 민감한) 상황 분석’((disability-sensitive) situation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세계은행은 ‘사회 분석’(social analy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Kieck, Bettina et. al.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p.51. World Bank, Social Analysis and Disability: A Guidance Note: Incorporat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to Bank-Supported Projects, March 2007.

13) 성주류화의 경우, 장애영향평가에 상응하는 것으로 ‘성분석’(gender analysis)이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사용된다. 장애포괄의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 없다. 성분석에 상응하는, 장애영향평가라 명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성분석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고 있다.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도 성분석의 항목이라 할 ‘성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다.

14)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How to Conduct a Disability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for Government Departments, 2012.

위한 장애포괄의 도구이고,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는 장애영향평가의 도구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장애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분석이 OECD DAC 장애마커에서 향후 가질 수 있는 위상이다. 젠더마커의 3점 점수 체계에 따르면, 어떤 개발협력사업이 “성평등 주요 목적 사업” 또는 “젠더마커 2점 사업”이나 “성평등 중요 목적 사업” 또는 “젠더마커 1점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에 대해 성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OECD DAC가 2019년에 내놓은 ‘장애인의 포괄 및 역량강화를 위한 마커 핸드북’(Handbook for the markers for the inclusion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르면 장애마커도 젠더마커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3점 점수 체계를 채택했는데, 향후 장애마커 2점이나 1점 사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성분석과 그 분석틀이 거의 같은, 장애영향평가에 해당하는 분석(이하 가칭 “장애분석”이라고 한다)을 필수적으로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할 때, 장애분석의 도구인, 정확히 말하자면, 장애분석의 항목의 목록인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마커를 KOICA 사업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한편, 이 분석 작업에서 개발협력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기획서나 제안서에 대해 장애분석을 실시한다. 장애포괄의 개념에 나와 있듯이, 장애포괄은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도구인 장애분석도 마찬가지지만, 기획 단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장애포괄을 보장하는 조치를—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을 탐색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를—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사업의 가장 앞선 단계에서 하면 할수록, 가장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용 절감적으로 장애포괄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장애포괄성의 분석틀로서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KOICA가 사용하는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라 한다)를 사업 제안서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체크리스트의 개별 항목들이 사업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수행되는 영역인 KOICA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의 사업 제안서의 ‘기획 및 설계 세부 심사표’(이하 “제안서 심사표”라 한다) 상의 ‘확인 사항’들을 체크리스트의 항목들과 연결시켜 본 결과, <표 VI-1>에서 보듯이 그 둘은 비교적 잘 연결된다. 아래 표는 세부 심사표 상의 ‘평가 항목’ 및 해당 ‘확인 사항’과, 확인 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항목, 그리고 체크리스트 항목을 부연설명하고 제안서 심사표의 확인 사항과 연결시켜서 발전시킨 ‘장애포괄성 세부 분석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 IV-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틀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기획 및 설계 세부 심사표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항목	장애포괄성 세부 분석 항목
평가 항목	확인 사항		
사업 내용의 타당성	...(중략)...	[1~1] 사업 계획서가 사업 목표 지역에서 장애와 관련한 예방, 재활, 교육, 고용 및 기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언급하고 있는가?	동일 사업지역 내 다른 장애 관련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그 영향력을 검토했는지 파악한다. * [1~1]은 중요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아니기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협력 가능성 - 같은 지역 내의 같은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공여기관이 있는가?		
	...(중략)...		
	...(중략)...		
사전 조사의 충실도	• 사전 조사 수행방식의 적절성 - 사전 조사에서 기초선 조사(Baseline survey)가 수행되었는가?	[1~1] '장애분리 통계'가 수집되었으며 동 사업을 기획하는 데 사용되었는가?	-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사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목표와 관련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를 수집했는가?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애특정적 통계를 수집했는가? -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중략)...		
	• 수요조사(Needs assessment)의 적절성 - 사전 조사에서 잠재적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needs assessment)가 실시되었는가?		
	- 수요조사 분석결과가 사업 구성요소 및 성과 관리 기획에 반영되었는가?		
		[1~3] 제안된 사업 활동은 모든 주민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해결하거나 불평등을 영속시키는 사회적 혹은 기타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가?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의 장애물(태도적 · 환경적 · 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기획 및 설계 세부 심사표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항목	장애포괄성 세부 분석 항목
평가 항목	확인 사항		
사전 조사의 충실도	- 수요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에 있어 협력 대상국 내 제약사항 여부 혹은 관련 사업환경을 분석하였는가?(예: 특정분야 정부 정책, 규제, 규정, 인적자원 현황, 종교 및 관습의 특이점 등)	[1-6] 하위분야에서의 장애이슈의 유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 식별 단계에서 참고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었는가? (특히 “하위분야를 위한 현지국의 정책, 전략이나 계획” 등)	* 체크리스트 [1-6]은 상기 [1-3]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 상의 ‘참고자료’는 국가적 수준의 제도적 장애물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 참고로, 협력국이 CRPD를 비준한 경우, 국가보고서와 그에 대한 CRPD 위원회의 최종권해는 관련 제도적 장애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시행 가능성	- 내외부적 위험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사업 관련 위험 회피 및 대응 전략이 마련되었는가? ...(중략)...	[2-2] 수혜자들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위험성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중략)... • 명확한 성과지표의 수립 - 측정수단의 명확성 - 기준치 대비 목표치의 현실성 및 달성가능성 ...(중략)...		
예산 편성의 타당성	• 운영 및 유지보수, 사후관리, 현지 이관 계획 - 사업종료 후, 동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혹은 사후관리, 현지 이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3-1] 수혜자들이 받게 될 혜택이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 이전, 필요 자원 및 자원의 조달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한가? ...(중략)...	[3-2] 수원국 혹은 수원기관이 동 사업 기간 내 필요 문제에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였는가?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기획 및 설계 세부 심사표		장애 스크리닝 체크리스트 항목	장애 포괄성 세부 분석 항목
평가 항목	확인 사항		
제더 취약 계층 및 환경, 인권에 대한 고려	• 범분야 이슈에 대한 고려 여부 ...(중략)... - 사업기획, 실행, 모니터링 과정에 수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가? ...(중략)...	[1-4] 제안된 사업은 장애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요소, 전략, 예산배분 혹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2-1] 관계기관에서 나온 장애인과 수혜 그룹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했는가? [3-3] 사업상 장애 포괄과 장애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부정적 태도와 같은 외부 상황이 고려되었는가? 그에 따른 조치가 계획되었는가?	-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 체크리스트 [3-3]은 상기 [2-2]에 포함되는 것이다.
	- 사업에 관련된 개발도상국 학생 및 고용인, 주민 등에 대한 아동보호, 성범죄 예방, 노동권 보호를 하기 위한 계획 및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중략)...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가장 많이 연결되는 제안서 심사표의 평가 항목은 ‘사전 조사의 충실도’로 체크리스트 [1-1], [1-2], [1-3] 등과 연결된다. 체크리스트 [1-1] ‘장애분리 통계의 수집과 그 사용’은 사업 목표와 관련한 장애분리 통계를, 가령 졸업률 향상이 사업 목표라면 장애로 분리되는 졸업률 통계를 수집했는지, 수집한 통계를 기초선 수립에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니즈 충족에서 기존의 격차를 보여주는 장애분리 통계를 적어도 한 가지는 제시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의 니즈와 관련하여 해당 니즈가 있음에도 충족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 등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가령,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사업은 일상생활의 원활한 영위라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과 같은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지 못하는 정도에 관한, 즉 해당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는 정도에 관한 통계도 제시될 수 있는 장애특정적 통계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장애분리 통계가 아닌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한다. 그래도 이러한 사업에서도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다. 만약 사업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의 니즈가 직업세계와 같은 특정 사회생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라면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사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경쟁적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장애로 분리된 취업률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런데 협력국이 관련 장애분리 통계뿐만 아니라 장애특정적 통계도 생산하지 않아서 이를 구할 수 없을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관련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한편,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는 주요 지표의 기초선 수립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한 통계는 사업의 목표에 가장 적합하게 수집된 통계라 할 수 있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지표의 기초선 수립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통계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에서 수립하는 통계의 주요 용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충족된 장애인의 니즈가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체크리스트 [1-2] ‘불충족된 장애인의 니즈 조사’는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조사하고 그 불충족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다.

인권적 차원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니즈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교육, 건강, 고용 등에

관한 니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같다. 다만 비장애인의 니즈와 달리, 장애인의 니즈는 장애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충족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불충족되는,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니즈는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라고¹⁵⁾ 할 수 있다. 비장애인과 대비하여 정의되어야 할 장애인의 니즈는 장애인에게 특정한, 장애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충족된 니즈이다.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는 필히 그들을 통해 조사되어야 한다. 이 조사는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를 조사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 불충족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법(사업 내용)과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도(사업 목표)에 대해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장애인의 니즈를 사업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업에 대한 그들의 참여라는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체크리스트 [1-3] ‘니즈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불평등의 해소’는 장애분석의 요점으로, 이는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태도적·환경적·제도적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활동들을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사실 상기와 같은 ‘확인’과 ‘해소’는 사업 제안서 상의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의 골자인데, 그러한 확인과 해소를 장애 민감하게 수행하는 것이 장애분석이다. 장애분석에 대한 이 서술은 장애주류화 사업과 장애특정적 사업 둘 다를 망라하지만 각 유형의 사업에 좀 더 들어맞게 구분하여 서술하자면, 장애주류화 사업에 대한 장애분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들의 니즈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자 할 때,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15) 장애주류적 사업이나 장애특정적 사업이나 둘 다 장애인의 불충족될 소지가 있는 또는 불충족된 니즈의 부분이 장애와 부정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경우일 때 이를 장애특정적인 방식으로, 비장애인에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충족시킨다. 다만, 장애주류적 사업에서는 사업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의 니즈의 큰 부분이 장애 중립적인(장애특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충족되고 나머지 작은 부분만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장애 특정적인 방식으로 충족되는 반면에, 장애특정적인 사업에서는 사업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의 큰 부분이 장애특정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충족되고 나머지 작은 부분만 장애 중립적인 방식으로 충족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정 니즈가 본질적으로 같지만 그 니즈의 불충족의 큰 부분이 장애와 부정적인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이고 그래서 그 불충족의 해소가 장애특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장애인을 비장애인에게서 분리하여 따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논리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니즈를 가진다는, 그래서 달리 그리고 분리하여 대우할 수 있다는 차별의 함의를 제거한다. 이중트랙접근 중 장애특정적 접근이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는 비장애인에게에는 없는, 장애인에게만 있는 니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관련 장애인의 니즈의 큰 부분을 장애특정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그래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의 예는 재활치료와 직업재활 사업이다.

포함시키는 것이다. 장애특정적 사업에 대한 장애분석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거나 특정 사회생활(교육, 고용, 보건 등과 관련한 생활)에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니즈가 불충족된 것을 완화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불충족을 야기한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한편,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은 비장애인의 니즈 충족에는 장애물들로 작용하지 않는, 장애와 상호작용하여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야기하는 장애인만 겪는, 장애특정적인 장애물들이다. 그러한 장애물들은 아래 표에서처럼 제도적·환경적·태도적 장애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장애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은 최대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상기 세 부류의 장애물들 중 환경적 장애물의 확인이 가장 쉽고, 제도적 장애물의 확인이 제일 어렵다. 후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할 수 있다. 태도적 장애물은 면접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표 IV-2〉 장애물의 유형¹⁶⁾

태도적 장애물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장애물일 수 있다. 이 장애물은 장애포괄에서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표출될 수 있는 것으로, 스테레오타입, 편견, 문화적·종교적 표명 및 가정 등이다. 그 결과, 많은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쓸모없고, 의존적이며,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자선과 의존이라는 끊기 어려운 순환을 초래한다.
환경적 장애물	이것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애물일 수 있다. 이것은 접근 불가능한 건물, 좁은 통로, 불편하지 않은 표면, 접근 불가능한 포맷으로 된 인쇄물 및 전자 정보 등이다.
제도적 장애물	이것은 확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애물일 수 있다.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이것들이 종종 사회적·문화적 규범과 연결되고 있고, 정책과 입법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법체계, 고용법, 선거제도, 교육 정책, 보건 서비스 규정, 사회서비스, 신념체계 및 종교, 인도주의/개발 기관 정책 등을 포함한다.

만약 어떤 장애물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가령, 제도적 장애물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예를 들면 장애물이 되는 협력국의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 [2-2] ‘장애 민감한 위험의 분석’은 사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16) Kieck, Bettina et. al,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p.16.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위험 중 장애 민감한 위험이, 즉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위험¹⁷⁾이나 장애특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이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장애 민감한 위험 중 일부는 사업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사항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이고, 일부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가령, 지역주민을 한 장소에 모아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하는 개별활동은 지역주민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지만 장애인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모으기 어렵다는 장애 민감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다른 행사를 이용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위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되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의 예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차원의 바리스타 양성 교육에서 화기를 다룰 때 타인들보다 더 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그러나 전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화상 위험이 적은 화기를 사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험 요인은 사업 외부적인 것, 사업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것, 사업 조직에서 비롯되는 것 등 다양하다.

체크리스트 [1-5] ‘장애 민감한 지표(disability-sensitive indicator)의 구축’은 사업이 소득, 교육, 건강 등 권리적 차원의 자산(asset)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나 통제에서의 변화, 사회구성원들의 장애인식에서의 변화와 같이 사람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또는 사업이 그러한 접근이나 통제를 증진하는 제도(법·정책·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같이 사람과 무관한 변화(제도가 무에서 유로, 또는 제도가 A에서 B로 변화한 것,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의 변화 등)를 목표로 할 때, 해당 목표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장애 민감한’ 지표의 장애 민감성은 해당 지표가 권리적 차원의 자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통제의 변화를 측정하는 타당성(validity)의 정도에 따라 커지거나 낮아진다. 가령,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목적이 ‘장애인의 직업적 스킬 향상’을 그 목적으로, 그리고 그 지표로 ‘훈련 이수율’을 내세운 경우에 이 지표는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훈련에 투여한 노력을 일부 측정하고 따라서 직업적 스킬 향상이라는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점에서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도 있다. 허나 해당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다. 당해 목적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좀 더 타당성이 높게 측정하는 지표는 관련 자격증 취득률로, 이 지표는 훈련

17) 장애인이 더 쉽게 처하는 위험을 “취약성 위험”(vulnerability ris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World Bank, Social Analysis and Disability: A Guidance Note: Incorporat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to Bank-Supported Projects, March 2007, p.37.

이수율보다 훨씬 더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 민감한 지표 중에서 비장애인과 대비해서 권리적 차원의 자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통제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는 ‘장애로 구분된 지표’(disability-differentiated indicator) 또는 장애분리 지표이고, 장애인들에서의 변화만 측정하는 지표는 ‘장애특정적 지표’(disability-specific indicator) 이다.¹⁸⁾¹⁹⁾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장애분리 지표여야 한다.

체크리스트 [3-1] 및 [3-2]는 합쳐서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장애포괄적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할 전략을 구축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특히 협력국이 장애포괄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 사업 기간 동안 협력국 정부를 대상으로 장애 정책 역량강화나 장애인식 개선 등과 같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수행했는지 점검한다.

체크리스트 [1-4] 및 [2-1]은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이들을,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을 참여시키는 조치와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 가령 평가를 하는 데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와 예산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분석 대상 장애 관련 사업

장애포괄성 분석 대상이 되는 사업은 2017. 1.~2020. 6. 기간에 종료되거나 진행 중인 KOICA의 장애 관련 사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건수는 총 40건으로, 연수생 초청 사업 6건과 소규모 무상원조 2건을 제외하면 32건으로, 그 중 프로젝트 사업 1건이고 나머지 31건이 민관협력사업이다. 32건 중 한 사업의 2차 또는 3차 사업이거나 확장인 사업과, 통상적인 사업 제안서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일부 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 등을 제외한 10개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0개 분석 대상 사업 중, 비장애인이 핵심 사업 대상이고 장애인을 부수적으로 사업 대상에

18) Kieck, Bettina et. al,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pp.113~114.

19) OECD DAC 젠더마커 핸드북은 젠더마커 1점 사업이나 2점 사업이 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사업의 성평등 목표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특정적 지표(gender-specific indicator)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젠더마커 1점 사업은 적어도 1개의 성특정적 지표를, 그리고 젠더마커 2점 사업은 여러 개의 성특정적 지표를 갖고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지표가 젠더로 분리될 것도 요구한다.

포함시킨 사업이 2개이고, 나머지 8개는 장애인만 사업 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부류의 사업이 장애포괄적으로 기획되었다면 각각 장애주류화 사업과 장애특정적 사업이, 또는 OECD DAC 장애마커의 3점 점수 체계에서 각각 1점과 2점 사업이 될 수도 있다.²⁰⁾ 장애마커 2점 사업은 장애포괄이 개발협력사업의 설계와 영향력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사업의 명시적인 목적인 경우, 해당 사업이 장애포괄 목적을 제외하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고, 장애마커 1점 사업은 장애포괄이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는 하나 해당 사업을 수행해야 할 주된 이유가 아니고, 사업의 여파가 장애포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²¹⁾

한편, 일부 사업들이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망라하나, 그 중 핵심이 되는 분야로 분류하자면 10개 분석 대상 사업 중, 재활치료 분야 사업이 4개이고, 직업재활 분야 사업이 3개, 교육 분야 사업이 2개, 그리고 기타(정보접근권) 사업이 1개로, 장애인에게 고유한 사업 분야인 재활치료 및 직업재활 분야가 많다. 장애인에게 고유한 분야의 사업 7개는 실제로 모두 장애인만 대상으로 했고, 교육 분야 사업 2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사업 대상으로 했다.

10개 사업을 분석하기 전에 유념할 사항은, 이 분석은 사업 기획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획의 장애포괄성을 점검하는 것이며, 아직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장애분석을 통해 장애포괄적인 기획을 해야 하는 것이 전혀 제도화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장애포괄성이 낮다고 결코 비판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1) 전반적인 분석 결과

10개 사업의 장애포괄성을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따라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별첨 1]과 같고, 아래 표는 그 중 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다. 아래 표는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기획 및 설계 세부 심사표’의 ‘확인 사항’과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종합하여 만든 장애포괄성 ‘세부 분석 항목’별로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 해당 세부 분석 항목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 평가한 내용과 미진하게 충족시킨 경우에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20) OECD 젠더마커 핸드북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이중트랙접근(twin-track approach) 중 성주류화 사업이 1점 사업이고, 성타겟 사업이 2점 사업이다. OECD, Handbook on the OECD-DAC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December 2016, p.6.

21) 김수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0, 15(1), 145-188, p.167.

〈표 IV-3〉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예시)

사업 개요	고급제피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사업(3단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확대 및 장애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재활서비스 인력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데이터케어센터 개소 및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부모 대상 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통합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사례관리 담당자 보수교육,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CBR 조정위원회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족 여부	총족 방안
장애 분리 통제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관련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제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장애아동의 삶의 질 개선은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활동 참여”의 개선이다. 장애로 인한 아동의 기능 손상이나 그로 인한 사회활동 또는 일상생활 참여의 제한에 대한 장애특정적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인사업 대상 지역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고령제 피해 장애아동의 비율이라는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했다. 그밖에 장애아동 일반의 통합교육 수혜률 등도 제시했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제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재활프로그램의 수혜 장애아동 비율이라는 장애특정적 통계를 기초선으로 삼았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사전 조사 방법과 내용 부분을 보면,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인 장애아동, 장애아동 가족, 기초재활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니즈를 조사한 내용이 없다. 사전 조사는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미팅과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업 대상 분석’에서 장애인 및 기타 사업 대상자의 니즈가 추상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입증할 데이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령,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니즈 또는 관심은 ‘서비스 참여도나 학습욕구가 높다’고 정리되어 있고, 재활치료 서비스 담당 인력의 보수교육에 대한 니즈는 ‘보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만 정리되어 있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사업 대상자 군별(장애아동, 서비스 인력, 장애아동 부모 등)로 양적·질적 조사 방식으로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니즈에 대해 정통한 장애인단체의 스태프(resource person)를 면접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조사이다. ‘사업 대상 분석’에서 세부사업별로 해당 사업 대상의 불충족된 니즈가 무엇이고 그러한 불충족된 니즈 때문에 해당 세부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때 니즈의 불충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제시되고, 세부사업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데이터도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장애 불평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문제분석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데이터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같은 제도적 장애물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이라는 태도적 장애물과, 데이터센터가 떨어져 있기 어려운 환경적 장애물이 있다.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와 그것들이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거에 기반해서 충분히 서술되지는 않았다.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언된 조치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 기형,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100명당 몇 명의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데이터센터가 떨어져 가기 어렵다는 것은 센터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로 설명한다.
위험 요인 분석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보조기구 지원 업무 수행 인력 부족, 재활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위험요인이 되기보다는 사업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이다. 그밖에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본 사업에서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장애아동 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 장애인식이 낮은 점 자체가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여 교육 참가율을 낮출 수 있다. 이 위 있다. 그것은 교육 참여 저조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위험 요인은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 내용에서 세심한 전략의 강구를 요한다.
지표	PDM 상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재활사업을 통한 장애아동 및 당사자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이고, 목적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아동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수혜가정의 삶의 질 개선도”이고, 목적의 지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수혜 아동수”,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수혜자 수”이다. ‘수혜자 수’는 효과가 있는 재활치료의 수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수혜 아동의 수적 증가는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수혜자 숫자와 같은 절대적 수치보다는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중 서비스 수혜자의 비율과 같은 상대적 수치가 해당 서비스의 효과를, 즉 장애포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형 수급에 따른 개인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형 재활치료 서비스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향 정도이다. 앞의 수혜자 수나 비율이 과장지표라면 일상생활 영향 정도는 결과지표로, 대개 PDM 상의 목표의 지표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다만 수혜자 수는 해당 지역에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전체 장애아동들 중 그 수혜를 받은 장애아동의 비율과 달리 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아동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적절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편, 삶의 질 개선 도'는 이 사업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들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장애특정적 사업은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CBR 조정위원회, 지방정부 장애인 정보시스템 등 현지의 장애 관련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이 있고 이미 사업(워크샵 등)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포섭했다는 점에서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협력국 DPO가 참여하는 현지 CBR 조정위원회가 사업 기획 단계에 참여하였다. 한편, 사업 기획 단계에 공여국(우리나라) 장애인 및 DPO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①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과 이용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 중 장애분리 통계 등 장애통계를 제시한 경우는 5건이고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5건이다. 통계를 제시한 5건 중 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통계를 제시한 경우는 4건이고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통계를 제시한 경우는 1건이다. 직접 연관된 통계를 제시한 사례는, 재활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²⁾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의 수혜 장애아동의 비율을 제시한 사례, ICT 기반 교육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²³⁾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사이의 중등학교 취학을 격차를 제시한 사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⁴⁾에서 재활치료 수혜자의 개략적인 비율 등을 제시한 사례, 그리고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⁵⁾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참여율을 제시한 사례다. 이중 두 번째 사례를 제외한 세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만을, 즉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했는데, 이는 해당 사업들이 재활치료를 직업재활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장애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사업들 중 한 곳에서 장애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사유로 협력국에 신뢰할 만한 해당 통계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개발도상국이 신뢰할 만한 장애통계를 생산·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²⁶⁾ 이러한 경우에는 잠재적인 사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수집, 제시해야 한다.

한편, 수집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기초선 수립에 사용한 사업은 1건으로, 재활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의 접근성 제고 및 장애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⁷⁾에서 사업 대상 지역에서의 재활프로그램의 수혜 장애아동 비율이라는

22) [별첨 1]의 (사례 2).

23) [별첨 1]의 (사례 4).

24) [별첨 1]의 (사례 5).

25) [별첨 1]의 (사례 9).

26)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CRPD를 비준하고 그 이행을 보고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각종 장애통계가 수록되는바, 국가보고서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시 필요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가보고서는 교육, 고용, 보건 등 여러 인권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에 사업 제안서 작성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7) [별첨 1]의 (사례 2).

장애특정적 통계를 기초선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획 단계에서 기초선 수립에 사용되는 통계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를 기초선 수립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이 양호하게 기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의 불충족된 니즈 조사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 중,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불충족된 니즈의 현황을 짧지만 그래도 통계치나 면접조사 결과를 가지고 짧게나마 서술한 사례는 2건이고, 니즈 조사를 했다고만 언급하거나 조사 내용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언급한 사례가 6건이며, 나머지 2건은 장애인 니즈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⁸⁾에서 장애아동의 부모와 면접조사로써 얻은 ‘물리치료의 질 제고에 대한 니즈’,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에 대한 니즈’를 포함하여 몇 가지 니즈를 열거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²⁹⁾에서는 장애인과 DPO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니즈 조사 결과를 제시했는데, 사회적 기업 등의 형태의 창업에 대한 니즈,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 기존의 IT직업훈련교육의 개선에 대한 니즈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2개의 사업에서 조사된 결과는 매우 간략하며, 사업에 대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조사에서 장애인의 니즈를 확인했다고만 서술한 사업들에서는 ‘사업 대상 분석’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사업의 목표에 관심을 보였다든 식으로 장애인들의 니즈를, 정확히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추상적으로 서술했다.

장애인에 대한 니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의 한 예는 디지털 제조 교육 등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⁰⁾으로,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니즈 조사를 실시했지만 장애인과 DPO에 대해서는 아무런 니즈 조사도 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 담당 정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ICT 기반 교육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³¹⁾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니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PO를 대상으로도 장애인의 니즈를 조사하지 않았다.

28) [별첨 1]의 (사례 5).

29) [별첨 1]의 (사례 9).

30) [별첨 1]의 (사례 3).

31) [별첨 1]의 (사례 4).

니즈 조사는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불충족된, 그의 장애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불충족된 니즈를 조사하고 그 불충족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니즈 조사를 충분히 또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장애포괄의 핵심 요소라 할, 장애인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놓친 셈이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수혜 대상인 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체크리스트의 주요 점검 사항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③ 니즈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불평등의 해소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 중 8개에서, 문제분석에서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목표분석에서 해당 니즈를 좀 더 평등하게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에서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 충족에 얼마나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장애물 제거 활동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증거를 대면서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재활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의 접근성 제고 및 장애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²⁾의 경우, 문제분석에서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 데이케어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같은 제도적 장애물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이라는 태도적 장애물과, 그리고 데이케어센터가 멀어서 가기 어려운 환경적 장애물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와 그것들이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거에 기반해서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다.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 인력 부족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 100명당 몇 명의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케어센터가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것은 센터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 상담, 마케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³³⁾의 경우도 증거에 기반한 서술이 부족한 사례다. 이 사업에서 장애인의 니즈(직업재활을

32) [별첨 1]의 (사례 2).

33) [별첨 1]의 (사례 8).

통한 정서적 회복과 직업적 역량의 강화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장애인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부재”, “장애인 당사자 인식(동기부여) 부족”, “사회적 인식 및 정부정책 부족”, “창업지원 제도 부족” 등)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을 해소할 조치들을 목표분석에 반영했다.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 및 그 부정적 효과를 데이터나 니즈 조사 결과(사회복귀에 대한 심리적 위축 등)에 기반하여 서술하지만 사용된 데이터나 증거가 불분명하고 충분하지 않다. 가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재활 훈련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전문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서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정책 부족’, ‘창업지원 제도 부족’과 같은 제도적 장애물의 경우에도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이 없고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한 장애물들의 존재와 그 부정적 효과,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조치의 효과는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한 것은 그 효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애물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한 사업이 총 3건인데, 모두 제도적 차원의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대상 10개 사업 중, 한 사업에서는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생략하여 장애분석을 사실상 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 사업에서는 문제분석에서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배제를 야기하는 한 가지 장애물을 제시하고는 목표분석에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아닌 다른 조치를 제시하여 장애분석의 기본 모형을 따르지 않았다. 후자는 ICT 기반 교육을 통해 학교 중도탈락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³⁴⁾으로, 문제분석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차별이 팽배”를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배제의 원인으로, 즉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참여의 장애물로 제시하고는 목표분석에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아닌 “교육기회가 박탈된 장애아동 대상으로 ICT기반 창의교육” 실시를 조치로 제시하고 그 효과로—효과로 보기 어려운—“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를 제시했다. 즉,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여 장애아동이 학교에 머물러 계속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를 중도탈락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시켜서 못 받은 교육을 벌충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제시했다.

34) [별첨 1]의 (사례 4).

④ 장애 민감한 위험의 분석

분석 대상 사업들이 사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탐색하면서 장애 민감한 위험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했는지 살펴보면, 장애 민감한 위험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한 사례가 2건이고, 확인한 위험들 중 장애 민감한 위험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2건, 확인된 위험들 외에 추가적으로 장애 민감한 위험이 있을 소지가 있는 사례가 5건, 그리고 특별히 장애 민감한 위험이 있을 소지가 없는 사례가 1건이다. 장애 민감한 위험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사례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⁵⁾에서 이동 장애로 인한 “출석률 및 훈련이수 저조”라는 장애 민감한 위험을 확인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도보 접근 가능한 숙소 또는 기숙사 연계”라는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⁶⁾에서는 낮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저녁 시간에 퇴원하는 ‘집중 프로그램의 참여도 저하’를 위험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보호자가 장시간 병원에서 대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위험으로, 이에 대해 보호자들에게 점심 제공을 포함하여 교육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확인된 위험들 중 장애 민감한 위험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그러할 소지가 있는 사례로는 직업훈련, 상담, 마케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⁷⁾에서 “우기로 인한 산사태 및 교통수단 부재, 도로파손 등으로 훈련생 모집과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위험으로 확인하고 그 대응책으로 ‘우기를 피해 훈련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시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의 부재 또는 부족은 이 사업 대상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아주 민감한, 장애 민감한 위험이고, 이는 우기에만 존재하는 위험이 아닌 그들에게 상존하는 위험인 만큼 우기를 피하여 사업 일정을 정하는 것 이상의 대응책을 요할 수 있다.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들 중, 확인된 위험들 외에 추가적으로 장애 민감한 위험이 있을 소지가 있는 사업이 가장 많다. 가령, 발달·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음료 조리, 미용, IT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⁸⁾에서 아무런 장애 민감한 위험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음료 조리 관련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기에 화기나 조리기구를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바, 장애를 고려한

35) [별첨 1]의 (사례 9).

36) [별첨 1]의 (사례 5).

37) [별첨 1]의 (사례 8).

38) [별첨 1]의 (사례 7).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장애 민감한 지표의 구축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들에서 사업 목표 달성에서의 진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성과지표들은 일부 사업들에서는 다수가 상당히 장애 민감하여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표로 적절하고, 어떤 사업들에서는 다수가 장애 민감하기는 하나 충분히 민감하지는 못하며, 또 어떤 사업에서는 장애 민감성이 많이 떨어진다. 먼저 지표의 다수가 상당히 장애 민감한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³⁹⁾에서, 사업 목표의 지표는 “사회성숙도 향상된 아동 수”이고, 목적의 지표는 “역량개발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지역 수혜 아동 수”와 “치료 아동의 상태 호전도”이다. 이들 지표 중 ‘치료를 받은 수혜 아동 수’는 치료가 곧 효과가 있는 치료의 수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수혜 아동의 수적 증가는 해당 아동 집단의 차원에서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표의 한계는 “치료아동의 상태 호전도”라는 재활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또 다른 장애 민감한 지표로써 보완된다. 목표의 지표인 “사회성숙도 향상된 아동 수”는 치료 효과의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수적 증가보다는 비율이, 가령 ‘사회성숙도가 일정 정도 향상된 아동의 비율’이 치료 효과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와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정도의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갖고 있는 다른 두 사례도 모두 재활치료에 관한 사업이다.

지표의 다수가 장애 민감하기는 하나 충분히 민감하지는 못한 사업의 예는 직업훈련, 상담, 마케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⁴⁰⁾으로, 이 사업의 목표의 지표는 “경제활동 인원”이고, 목적의 지표는 훈련생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참여 비율”과 “훈련 이수율”이다. 목적의 지표에서 ‘중증장애인인 훈련생의 비율’은 중증장애인 집단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기회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일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단순히 중증장애를 가진 훈련생을 충원하는 노력이나 의도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충원 그 자체가 성공적 훈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애 민감한 지표가 아니다. ‘훈련 이수율’도 장애인이 직업재활훈련을 무사히 마쳐서 일정 정도 직업기술을 갖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이나, 이수 자체가 직업기술의 습득 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애 민감한 지표는 아니다. 한편, ‘경제활동 인원’이라는

39) [별첨 1]의 (사례 5).

40) [별첨 1]의 (사례 8).

목표의 지표는 취·창업을 한 장애 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이기는 하나 절대적 숫자의 증감은 집단으로서 장애인의 취·창업 기회에서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애 민감하지는 않다. 이 사업 목적의 지표가 충분히 장애 민감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훈련 이수율이나 훈련 참여율보다는 훈련으로써 획득되는 직업적 스킬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관련 자격증 취득률이다. 유사하게, 목표의 지표도 경제활동 인원수보다는 훈련 이수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더 장애 민감하다. 이 사례와 비슷한 정도의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갖고 있는 다른 세 사례 중 두 사례가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이다.

장애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표를 갖고 있는 사업은 콘텐츠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여 모바일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⁴¹⁾으로, 사업 목적의 주요 지표는 ‘점자·녹음·데이지 자료의 이용건수’와 사업으로 구축한 모바일 웹사이트인 “포네 이용자 증가율”이다.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된 도서의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그 콘텐츠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같은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포네 이용자 증가율” 또한 포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이나 정보 접근권의 향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어서 장애 민감한 지표가 아닐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장애 민감한 지표는 모바일 웹사이트 접근성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비율이다.

⑥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들은 모두 민관협력사업이고, 소규모여서 협력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할 소지가 적을 수 있다. 그런데 장애 관련 민관협력사업들의 다수가 직업재활이나 재활치료 서비스와 같이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것들이어서 그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 종료 후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얻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을 사업에 직접 참여시키는 것이고 차선은 사업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재활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데이케어센터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고엽제 피해 장애아동의 접근성 제고 및 장애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41) [별첨 1]의 (사례 10).

사업⁴²⁾의 경우,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CBR 조정위원회, 지방정부 장애인 정보시스템 등을 워크숍 등 사업을 통해 포섭하여 활용할 계획이고, 5개의 사업에서는 협력국 정부기관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들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⁴³⁾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했고, 사업 종료 후 협력기관과 장애인고용지원센터가 소재한 대학 등으로 사업을 이관할 계획을 수립했다. 직업훈련, 상담, 마케팅 교육,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⁴⁴⁾에서는 지속가능 전략으로 직업재활센터를 장애인 생산자조합 형태로 조직,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자립시키는 한편, 이러한 전략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옹호 활동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했다.

2개의 분석 대상 사업은 협력국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사업이 자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키고 사업 종료 후 그 시스템에 사업을 이양하는 것을 지속가능 전략으로 채택했다. 한 사업에서는 재활치료, 활동보조 사업을 주민 자체 운영 시스템에 이양하는 전략을, 그리고 직업재활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전략을 지속가능 전략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사업들에서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사업 대상으로 삼되 비장애인 대상 사업 부분이 핵심이고 비장애인 대상 사업 부분은 주변인 2개의 사업에서는, ‘사업 지속가능성 전략’ 부분에서 장애인 사업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가령, 비장애 고등학생 및 졸업생에 대해서는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제조 교육을 실시하고 절단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전자의수를 제작해 보게 하는 사업⁴⁵⁾의 경우, ‘사업 지속가능성 전략’ 부분에서 절단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절단장애인 사업 부분은 사업 종료와 함께 끝나는 것으로 보인다.

⑦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 및 장애인을 대표하는 DPO를 개발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평등하게 충족된 또는 충족될 소지가 있는 장애인의 니즈를 개발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42) [별첨 1]의 (사례 2).

43) [별첨 1]의 (사례 9).

44) [별첨 1]의 (사례 8).

45) [별첨 1]의 (사례 3).

한편,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는 다 중요하지만 기획 단계는 그 이후의 다른 단계들의 전개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기획 단계에 장애인 및 DPO의 참여는, 특히 사업 수혜 대상이 될 장애인의 참여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 모니터링, 평가 등의 다른 단계에서의 장애인 및 DPO의 참여를 기획한다는 점에서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및 DPO의 참여는 중요하다.

한편, 개발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의 한 가지 방법은 장애인을 대표하는 DPO가 직접 사업 수행 기관이 되는 것이다. DPO는 비장애인 기관보다는 장애인의 니즈를 더 잘 알기에 이를 개발사업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의 제안 기관 중 6군데가 DPO인바,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셈이고, 향후 다른 단계에도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DPO가 사업 수행 기관이 될 때 사업의 효율성을 좇다가 장애를 고려하지 못할 소지가 있기도 하고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DPO 및 장애인을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현지 파트너 기관이 DPO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물론 사업 수행 기관이나 현지 파트너 기관이 DPO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필히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 제안서에 이들을 참여시킬 계획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이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역량 강화도 장애인 및 DPO의 참여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예산도 할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수혜 대상이 될 장애인이 기획 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며, 기획 단계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니즈 조사에서 사업의 기획안에 대해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일부 분석 대상 사업에서 장애인의 니즈 조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업에서 니즈 조사의 결과가 추상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건대 사업 대상 장애인의 의견 반영이, 즉 그들의 기획 단계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 장애인의 의견 수렴은 단지 사업 기획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기획안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안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업 제안서는 그러한 조정의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다.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10개의 분석 대상 사업 중 2개의 사업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이 사업들의 제안서를 보면, 장애를 범분야 이슈로 다룬다고 하는바, 이는 장애주류화 사업을 한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조건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2개 사업 중 한 사업은 디지털 제조 교육 등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및 졸업생과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절단장애인에 대해서는 16시간의 교육(워크숍)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자의수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하는 사업⁴⁶⁾으로, 절단장애인과 다른 두 집단에 대한 사업 목표가 다르고 교육 내용도 다르며, 학생 및 졸업생과 지역주민 사이에서도 교육 내용이 다소 다르다. 다른 한 사업도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데, ICT기반 창의교육을 통해 초등학생 집단의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높이고(중도탈락율을 줄이고), 중도탈락하거나 미입학한 학교 밖 여아와 학교 밖 장애아동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족한 학력 수준을 높이는 사업⁴⁷⁾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밖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르다.

이 두 사업이 장애포괄적인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항목별로 위에서 부분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니즈 조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업은 고등학생 및 졸업생들의 니즈는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했지만 절단장애인의 니즈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사업은 모든 사업 대상 집단의 니즈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문제분석에서 장애아동이 학교 밖으로 밀려난 원인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적시하고서는 목표분석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여, 즉 장애아동이 학교에 머무르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들이 계속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밀려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ICT 기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못 받은 교육을 벌충하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는 장애분석의 기본에서, 즉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니즈를 불평등하게 충족시키게 만드는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첫 번째 사업의 제안서는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생략하고 있기에 장애분석의 기본을 지켰는지 자세히는 살펴 볼 수 없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장애분석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

이 두 사업이 장애포괄적 사업이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주류화 사업이라면 먼저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일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사업 활동은 당연히 그 두 집단에 구별 없이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둘 다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46) [별첨 1]의 (사례 3).

47) [별첨 1]의 (사례 4).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특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수행되는 사업이 바로 장애주류화 사업이고, 그러한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장애분석이다.

문제의 두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애주류화의 요건을 처음부터 위반한다. 그리고 목표가 서로 다르다보니 사업 내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또 목표가 다르니 장애주류화 사업의 요건이라 할 장애분리 지표는 구축될 수 없다. 첫 번째 사업의 PDM 상의 목표는 “디지털 제조 교육 및 기술기반형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한 취·창업 기회 확대”인데, 취·창업 기회 확대가 아닌 절단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목표는 찾아볼 수 없다. 목표의 지표는 “디지털 제조 시설 이용자 수”와 “취·창업률”인데, 절단장애인과 다른 사업 대상자 모두를 망라할 수 있는 지표는 “디지털 제조 시설 이용자 수”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장애분리 지표의 구실을 할 수 없는데, 우선 절단장애인과 다른 사업 대상자의 교육 인원은 정해 놓은 것이어서 그 인원수를 장애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제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이용 내용이, 즉 사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무의미하다. 두 번째 사업의 경우, 지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는 하지만, 학교 내 아동(학생)과 학교 밖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학생 학업성취도 및 졸업률이고, 후자는 교육 수준(정확히는 학력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이라면, 주요 사업 부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해당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평등하지 않게 충족되게 만드는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사업은 고등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이들의 취·창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전문적인 디지털 제조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장애를 가진 학생 및 졸업생의 니즈가 비장애 학생 및 졸업생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가령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강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구분 없이 이들의 학업성취도와 졸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ICT 기반의 창의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장애를 가진 아동의 니즈가 비장애아동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가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이 두 사업에서 절단장애인에 대한 사업 부분이나 학교 밖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 부분은 오히려 별도로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그럴 경우, 그

사업들은 장애특정적 사업이 된다. 다만, 첫 번째 사업에서 분리하여 추진하는 절단장애인을 위한 사업 부분은 사업의 목표가 특별히 장애인의 권리의 증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애포괄적인 장애특정적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16시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절단장애인이 3D 프린팅이나 전자의수에 대한 기본 지식의 양이 증가하는 변화는 경험하겠으나 그것을 장애인의 권리적 자산의 접근에서의 긍정적 변화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분석

1) 조사 목적

이 장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는 이미 수행 중인 KOICA 비장애 관련 사업이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었는지를 회고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얼마만큼의, 어떤 분야의 사업들을 장애주류화를 할 소지가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추정해 보는 동시에, 사업의 어떤 활동들을 어떤 내용으로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는지 예시함으로써 향후 장애주류화를 하는 작업에 참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장애 관련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내용으로 또는 장애인을 위하지 않는 제도·정책·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을 말한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2020년에 착수된 비장애 관련 프로젝트 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거의 전부를 대상으로 장애주류화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조사한다. 어떤 사업이 장애주류화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근거 또는 기준은 당연히 장애주류화 개념에서 도출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의 관심사항과 경험을 모든 개발 정책 및 프로젝트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수적 차원으로 만듦으로써 장애인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고 그들이 불평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장애인의 관심사항과 경험은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과 같음에도 비장애인에 비해 불충족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불평등에 대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관심과 경험을 개발사업의 모든 단계의 ‘필수적 차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수혜에서 장애인이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반드시 고려한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한 불평등이란 장애와 부정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정적

환경(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이다. 결국 장애주류화는 개발사업이 장애인의 니즈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충족시키도록 해당 장애인의 니즈를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시키게 만든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특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의 모든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장애주류화 개념을 살펴볼 때, 장애주류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요건 또는 기준은 해당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 상태가 존재한다는 점,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인만이 직면하는 장애물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장애주류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이 세 가지 기준 외에 다른 많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협력국 정부가 장애를 고려하는 사업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 장애를 고려할 만큼 사업 수혜 장애인 숫자가 유의미하게 커야 한다는 점,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 다른 여러 기준이 충족되어야 실제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 상기 세 가지 기준을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가용한 통계가 없다면 그 기준이 충족되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상기 기준들을 최대한 모두 살펴서 특정 사업의 장애주류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 사업을 실제로 기획하면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본 조사에서처럼 총 94건의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협력국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기획서나 제안서만 갖고서 장애주류화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제약적 상황 때문에 본 조사는 특정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의 개연성 정도만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이 목적에 맞게 조사 대상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의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이 그 충족에서 상당한 불평등에 처하여 있는지, 그 원인이 되는, 장애인들이 겪는 장애물은 일반적으로 무엇인지를 관련 2차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해당 장애물을 제거하는 통상적인 장애주류화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상기의 세 기준들을, 특히 첫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불평등이 존재할 소지가 있는 사업 영역이 아니어서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자 3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판단과 그 사유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면, 즉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

3) 조사 대상 비장애 관련 사업

2020년에 착수된 비장애 관련 프로젝트 사업과 민관협력사업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총 94개의 비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별첨 2]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대상 사업 목록에서 보듯이,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이 74건이고, 민관협력사업이 20건이다.

4)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결과

(1)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4개의 조사 대상 사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6개 사업이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과 장애주류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서술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및 그 원인’은 해당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 상태와 이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원인(장애물)들을 적시한 부분이고,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관련 니즈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장애주류적 조치를 제시한 부분이다. 아래 표들은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일부 사례들에 관한 것이고,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모든 사례들은 [별첨 3]과 같다. 아래 표의 사례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지작주 미자출 지구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훈련 시설 마련에서부터 훈련 후 취·창업을 연계시켜 주는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통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장애여성은 직업훈련의 최종 목표인 고용률이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낮으며, 이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취·창업에 대한 장애여성의 니즈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불충족되고, 이 니즈와 직접 관련된 직업훈련에 대한 니즈도 그렇다고 추정된다. 일부 연구들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널리 퍼진 잘못된 인식(태도적 장애물)이 장애여성의 당해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며, 그밖에 장애여성이 직업훈련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도 장애여성의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나아가 취·창업 기회에 대한 장애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 가령, 개발도상국 장애여성의 노동 역량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고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여성을 직업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장애여성의 물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강사진 연수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여성의 니즈의 충족에서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를 야기하는 장애물들이 확인되며,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바, 이 사업은 장애주류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4〉 장애인 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1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및 그 원인	필요한 장애인 주류화 조치
민간 협력 사업	다문화	우즈베키스탄 지카주 미지출 지구 여성 취 · 창업 역량강화 사업: 지역내 여성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여성 취 · 창업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체계를 구축과 강사진 연수를 지원하여 센터를 개설하고, 센터가 지역 여성들에게 직업훈련,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여성 창업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인식증진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교육 및 훈련은 적절한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적이고 양질의 직업 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비장애 젊은이들에 비해 정규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 51개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남성과 장애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2.8%, 19.6%로, 이는 각각 64.9%인 비 장애남성과 29.9%인 비장애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 ⁴⁸⁾ 정규교육이 아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관련 장애남성 통계는 거의 없으나 직업훈련과 고용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의, 특히 장애여성의 참여율은 역시 매우 낮을 것이다. 그 낮은 참여의 요인은 정규교육에 대한 장애여성의 낮은 참여의 요인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 장애물로, 직업훈련시설에 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직업훈련시설과 훈련 기자재의 이용에서의 물리적 장애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장애인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고 직업훈련시설도 그들을 받기를 꺼릴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또는 편견일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편견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⁴⁹⁾ , 이로 인해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을 받기를 꺼리고 장애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다. 장애여성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직업적 · 교육적 편견 때문에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접근에서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한다.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나아가 취 · 창업 기회에 대한 장애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장애인 주류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장애여성의 노동 역량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고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여성을 직업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쿼터제(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발 공고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취 · 창업 지원센터로 개조할 때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과 같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선발된 장애여성의 장애를 고려하여 훈련설비 등 기자재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강사진 연수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48) WHO/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p.237.

49) 상기 책, p.240.

‘캄보디아 바탐병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은 학교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해 학내 관련 조직(지원위원회)과 교사에 대한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 학생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학생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초중등학교 졸업률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크게 낮은바, 이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의 니즈는 비장애아동에 비해 심각하게 불충족될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된다. 연구들은 이러한 불평등한 충족이 교사의 관련 훈련의 부족, 학교 시설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 장애아동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태도 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들 장애물을 제거하여 이들의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지원위원회에 장애아동 및 가족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아동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학부모 인식 증진 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시키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며, 장애아동 상담자는 장애아동의 교육 니즈를 잘 아는 자로 배치하는 등의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치들은 애초의 사업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일부 조정한 것인바,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

〈표 IV-5〉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2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및 그 원인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
민관 협력	교육	캄보디아 바탐병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소 사업(3단계): 중학교 중도 탈락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교지원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의 학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자녀 학습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초중등학교 진학률과 졸업률은 매우 낮고, 유급률은 매우 높다. 51개국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 연령을 통틀어 초등학교를 마친 장애남성과 비장애남성의 비율은 50.6%와 61.3%이고,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비율은 52.9%와 41.7%이다. 평균 교육년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낮다(남성의 경우, 각각 5.96년, 7.03년이고, 여성의 경우, 각각 4.98년, 6.26년).⁵⁰⁾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는 여러 가지다.⁵¹⁾ 장애아동의 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이나 정책의 미비, 예산 부족과⁵²⁾ 같은 국가 제도 차원의 장애물이 있다. 학교 차원의 장애물로는 장애아동에게 부적절한 학습자료나 교습법,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훈련의 부족, 장애아동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아동의 등하교 상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심지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정적 태도,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등이 있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이 중학교를 중도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개별 활동들을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 할 수 있다. - 학교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의 보호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가 학교 지원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장애아동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한다. - 자녀 학습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증진 교육 내용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장애학생가정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자는 장애학생의 교육 니즈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50) WHO/World Bank, 상기 책, p. 206.

51) 상기 책, pp. 212~216.

52) 한 명의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명의 비장애아동의 교육 비용의 1.9배이다. 상기 책 p. 214.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보건지표 향상, 성생식보건 증진 및 아동 사망률 감소 등을 목표로,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주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소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의 책무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비스 감시 및 평가를 위한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 기본적으로 같은, 그리고 추가적인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음에도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본인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그들의 당해 니즈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된다. 또한 장애여성의 당해 니즈는 장애인은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편견 등의 태도적 장애물과 장애여성이 보건시설 및 진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 불평등하게 충족된다. 이 사업에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니즈를 비장애여성과 동등하게 충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동이 어려운 장애여성들이 보건소에 오는 데 필요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진료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하며, 보건소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의 성생식보건 니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주류화 조치는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표 IV-6〉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3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및 그 원인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
프로젝트	보건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 지역주민들의 보건지표를 향상시키고, 성생식보건 및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모자보건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향상시켜 그 이용률을 높이고,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일차보건 의뢰의 책무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적용하며, 보건국의료진 인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평가 강화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 기본적으로 같은, 그리고 추가적인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성생식보건에 그 제공자는 물론 장애인 공동체에 의해 간과된다. 그 결과, 장애여성은 당해 서비스에 가장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이 된다. 그것은 주로 사회적 관심, 관련 법적 보호, 이해 및 지원 등이 부족한 탓으로, 장애여성들은 성생식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신체와 관련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경향이 있다. 집단으로서 장애여성은 HIV/AIDS 및 성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 할 높은 빈곤율, 높은 문맹률, 보건지원에 대한 접근의 결여, 좀더 안전한 서비스를 협상해낼 권한의 부족에 직면한다.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할 수 있다. 그 개별 활동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물리적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건소에 오는데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보건소 시설의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장애여성에게 맞게 개조된 진료대 등을 구비한다. - 서비스에 대한 정보(진료 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상의 정보 포함)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점자본되거나, 큰 활자로 된 인쇄물을 제공하거나,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 장애여성의 성생식보건 니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증진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보건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53) 상생식보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니즈와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불평등한 접근과 그 이유는 WHO, Promo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UNFPA Guidance Note, pp.5~7 참조.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은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를 통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관개 농지 개발, 곡물창고 및 농민조합 사무실 건립 등의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민 조직 결성 및 역량강화, 영농기술 지도, 수확한 농산물의 관리기술 향상, 판매 연결 등의 벨류체인 구축, 영농자금의 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농업에 종사함에도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농업에 충분하게 참여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보다 농업 관련 훈련, 금융 등에 잘 접근할 수 없다. 가령, 농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거나 장애는 전염된다는 편견 때문에 배제되고, 설사 훈련을 받게 되더라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정보적 장애물) 때문에 훈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빈곤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에게 영농자금의 대출을 꺼릴 수 있다. 농민이 농업에 효과적으로 종사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장애를 가진 농민이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 농민과 평등하게 관련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먼저, 농민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의사 결정에 장애인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하고, 영농기술 지도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규약에 장애인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면 이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주류화 조치들은 사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수행 가능하다.

〈표 IV-7〉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4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및 그 원인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
프로젝트	농림수산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로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개 농지 개발, 지속 가능한 경사지 관리, 곡물창고 및 농민조합 사무실 건립 등의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민 조직 결성 및 역량강화, 영농기술 지도, 정확한 농산물 관리기술 향상, 판매 연결 등의 벨류체인 구축, 영농자금의 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초청연수를 통해 사업 수행자 및 농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며, 운영위원회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고용 부문이며(전세계적으로는 35%이고, 시하라 이남아프리카에서는 거의 60%이다), ⁵⁴⁾ 농업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원이자 영양 섭취와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소스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바, 농업은 장애인들의 고용에 밝은 전망을 줄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 ⁵⁵⁾ 사실, 비장애인들의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하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농업에 충분하게 참여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보다 농업 관련 훈련, 금융 등에 잘 접근할 수 없다. 가령, 농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생각, 장애는 전염된다는 생각 등) 때문에 장애인 배제되고, 설사 훈련을 받게 되더라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훈련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빈곤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에게 영농 자금의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농민들은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때문에 또는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영농 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리하기도 하다.	장애를 가진 농민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농민조직 결성 시 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 장애인을 적극적 조직의 일환으로 참여시켜 조직의 운영과 주요 의사 결정에 장애인의 경험과 니즈가 반영되도록 한다. - 영농기술 지도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영농기술 지도 장소를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를 가진 농민이 영농기술 지도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규약에 장애인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빈곤하기 쉬운 장애여성 농민의 경우 담보 설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54) New Agriculturist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new-ag.info/en/focus/focusitem.php?a=3091>.

55) TheIndependent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173574>.

(2)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한 사업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별첨 4]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94개 사업 중 절반 가량인 48개로 나타났다. 장애주류화 가능성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그것은 해당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고, 그 불평등한 충족을 야기하는, 장애인만이 직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의 대부분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나는 사업 내용 및 목표가 장애인의 니즈 충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 영역에서 어쩌면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될 소지는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후자의 사유는 두 사례에 적용되었는데, 한 사례를 살펴보면,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사회 중심 신생아 감염관리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업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히 수인성 감염병으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비장애 영유아에 비해 수인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장애 영유아와 관련하여 사업을 장애주류화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업에서 산모 보건을 위한 활동도 하는데, 이 활동(지표를 통해 추정되는 활동은 의료시설을 이용한 분만 증진)은 본 사업의 핵심인 감염병 관리와 무관하고 비중도 아주 낮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산모와 관련하여 장애주류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시설을 이용한 분만율이 주요 목표의 하나이고 이 분만율에서 장애를 가진 산모와 비장애 산모 간의 격차가 크다면 그러한 사업은 장애주류화를 해야 한다.

전자의 사유는 많은 사업에 적용된 사유로, 그 중 하나가 ‘마다가스카르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UNESCO)’인데, 열대우림 생물의 다양성 보존은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의 니즈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업에서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유가 적용된 사업의 제목만 제시하자면 ‘라오스 남능강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몽골 국가등록업무 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에콰도르 국가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다.

한편 사업 목표나 내용이 장애인의 니즈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인 ‘사업 목표가 행정적·기술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직접 고객을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업으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다.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이 그 예인데, 이 사업 목표는 파편화된 재난관리 기관들을 통합 재난 상황실 구축을 통해 하나로 묶어서 재난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재난 관리 서비스에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사업 목표나 내용을 볼 때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볼리비아 남부지역 소농민 협동조직 구축을 통한 시장가치창출 및 식량안보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이 소농민 개인이 아니라 소농민조합이다. 장애를 가진 소농민은 소농민조합에 참여하기 어려울 소지도 있지만, 사업 내용에 소농민조합의 구성이 아닌 소농민조합의 기능 강화인바, 장애를 가진 소농민의 조합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장애주류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사업’에서도 사업 목표 및 내용이 대중교통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 이 사업의 목표는 버스노선체계 및 운영 방식 등의 개선과 첨단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아순시온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이다. 교통 이용 영역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관련 니즈를 아주 불평등하게 충족시키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사업 목표와 내용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의 니즈를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장애주류화 불가 사유 중에는 사업 내용상으로는 장애주류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매우 작고 사업 목표 상 그 부분이 사업의 주변이라는 점이 있다.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관개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용수사용자협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것인데, 영농기술 교육에 장애를 가진 농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주류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영농기술 교육이 핵심 사업 목표인 관개 시설 개선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변적이고 그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소소한 것이기에 이로써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장애주류화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이는 ‘사업 제안자가 당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의 평등한 참여를 그 사업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이 아닌 부정일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장애주류화가 가능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도 장애주류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하는 사유가 있다. 하나는 장애주류화를 한 사업이 장애주류화의 목표(장애인의 니즈의 평등한 충족)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이 장애가 아닌 다른 범분야 이슈를 명시적 목표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스리랑카 와팔라지역 관광직업전문교육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광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그 졸업생들을 관광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명히 관광산업 분야의 취업률과 관광산업 관련 직업훈련 참가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은 존재하고 그 이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도 분명하며,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직업 전문학교가 적극적 조치로써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입학을 허용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관광기업들이 부당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장애를 갖지 않을 것이 진정직업자격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애를 가진 관광직업훈련 이수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인바, 그렇다면 장애주류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상기 후자의 사유는 ‘케냐 북동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등에 적용된 것으로, 이 사업은 ‘성인지적 기후스마트농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성인지적 차원에서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도상국 농촌에서 장애여성은 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차별사유의 중복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서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더 불리할 것이어서 성주류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에서 성주류화와 함께 장애주류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업 본래의 초점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⁵⁶⁾. 이러한 사유에서 이 사업은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사유는 어떤 사업을 장애주류화 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5) 소결

향후 어떤 사업 형태와 사업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결과를 사업 형태별로, 그리고 사업 분야별로

56)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문가 3인 모두가 성을 크로스커팅 이슈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사업 1건에서 장애를 크로스커팅 이슈로 추가해서 사업을 장애주류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2인이 장애주류화가 가능하다고 본 사업은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48건 중 총 7건으로, 장애주류화할 부분이 소소하여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내세우기가 어렵다고 본 사업이 2건, 해당 사업 분야에서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충족된다고 볼 증거가 없어서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고 본 사업이 2건, 사업이 행정적·기술적 체계 등을 개선하는 것이지 그 체계의 고객 또는 이용자를 직접 타깃으로 삼지 않아서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고 본 사업이 2건, 그리고 기타 1건이다.

분류해 봤다. 먼저 사업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에서처럼 절대 빈도와 비율 모두에서 프로젝트 사업에서 장애주류화 가능성이 민관협력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보건, 농림수산, 교육 분야에서 절대 빈도와 비율 모두에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장애주류화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프로젝트에서 장애주류화 가능성이 민관협력에서보다 더 많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보건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 사업이 모두 프로젝트 사업이고, 교육 사업의 약 80%가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장애포괄적 사업을 확대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협력국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행되는 장애특정적 사업을 받기를 꺼리지만 한 사업에 장애주류화를 조치를 추가한 장애주류화 사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적을 것인바, 그러한 점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형태로 향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주류화 사업은 장애분리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별사업인 프로젝트 사업은 아무래도 협력국의 협조를 통해 관련 통계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주류화 사업이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아닌 장애인의 변화—권리적 자산에 대한 접근 및 통제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인 경우에 일정 규모의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의 평등을 명시적인 목표의 하나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가 큰 프로젝트 사업 형태로 장애주류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소지가 크다.

〈표 IV-8〉 사업 형태별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사업 형태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합계
프로젝트	39	33	72
개발컨설팅	1	1	2
민관협력	6	14	20
합계	46	48	94

〈표 IV-9〉 사업 분야별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사업 분야	장애주류화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합계
공공행정	6	13	19
교육	9	10	19
보건	12	6	18
농림수산	10	4	14
산업에너지	2	6	8
다분야	5	1	6
교통	0	5	5
환경	0	3	3
사회적연대경제	2	0	2
합계	46	48	94

한편, 교육, 보건 및 농림수산 분야에서 장애주류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SDGs의 장애포괄적인 세부목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들 분야의 장애주류화 사업은 교육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목표인 SDGs 세부목표 4.5와⁵⁷⁾, 고용 분야에서 장애포괄적 목표인 SDGs 세부목표 8.5와⁵⁸⁾ 연관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장애주류화 사업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농업에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SDGs 세부목표 8.5와 연관된다. 또한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 제시한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의 상당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제공인바, 이는 SDGs 세부목표 11.7과⁵⁹⁾ 연관된다.⁶⁰⁾ 또한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 제시한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의 상당 부분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의 제공인바, 이는 SDGs 세부목표 11.7과⁶¹⁾ 연관된다. 그리고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많은 수가 보건 분야의 성생식보건 사업인데, 관련된 SDGs 세부목표 3.7(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하여 성·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에서 명시적으로 장애 또는 장애인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CRPD 제25조 가항이⁶²⁾ 성생식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KOICA 차원에서 성생식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SDGs 세부목표 3.7과 연관시켜 장애주류화 중점 분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7) 2030년까지 교육에서 성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토착민, 취약한 상황의 아동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58)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해,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과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달성한다.

59)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접근성이 높은, 녹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한다.

60) 이와 같은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농림수산 분야 사업 자체는 SDGs 세부목표 2.4(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와 직접 관련된다.

61)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공의 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62) 제25조 가항: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세계 인구의 약 15%)의 장애인들이 있으며, 약 80퍼센트의 장애인들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 5명 중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DFID⁶³⁾, 2018). 이 숫자는 손상과 장애로 이어지는 인구 노령화와 만성적인 질환이 더욱 보편화됨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별, 장애 유형, 나이,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신념, 그리고 모든 것이 장애와 관련되어 교차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세계 지도자들의 새로운 정치적 욕구, UN CRPD와 SDG에 대한 더 큰 관심, 그리고 새로운 배우들과 연합이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장애 포용적 발전의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은 국제 장애 프레임워크가 존재하거나 장애인들이 모든 개발, 안정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여성, 소녀, 남성, 그리고 장애를 가진 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KOICA의 노력에 더하여 KOICA의 사업이 장애포괄적 원칙 또는 장애관점에 맞게 수행되도록 하고,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에서의 문제점을 발굴하며, 추후 KOICA 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포괄과 장애주류화의 개념을 구분·제시하였으며,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들을 살펴보고, KOICA가 2017년 이후 수행한 장애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그리고 2020년 이후 추진된 비장애사업의 장애포괄적 수행 가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63)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2018). 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023.

장애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된 지침이 마련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KOICA의 함의를 정리해보면, 장애포괄적 사업과 장애에 특화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트윈트랙 접근방식으로 추진, 장애포괄적 사업을 전담하거나 장애인 관련 전문가 수를 확대·배치, DPO의 역량강화 지원, KOICA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체계 구축, 사업 심사 및 의사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포괄적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기준 마련, KOICA 직원의 장애포괄적 사업 및 장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한편, 장애인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사업기획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장애인의 니즈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업 기획단계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장애포괄적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비장애인사업의 장애인주류화 가능성 분석 결과, KOICA 상당수의 사업이 장애인주류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운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제언들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증거 기반 사업 추진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기획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 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기초선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적절히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사업 기획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협력국에서 생산한 관련 통계가 없다면 소규모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이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장애 관련 사업들에서 니즈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기초하는 문제분석 및 목표분석이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의 불충족된 니즈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충족시킬지가 목표분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증거 기반의 부재는 장애 민감한 지표 구축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편,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에서 증거 기반 부재에 못지않은 문제점이 일부 사업에서 나타난다. 장애인의 니즈를 비장애인

평등하게 충족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불평등하게 충족시킨 또는 충족시킬 소지가 있는 장애물을 문제분석에서 확인하고 목표분석에서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나름 장애물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제거하는 활동을 목표분석에서 제시하지 않고, 해당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히, 문제분석에서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하고는 목표분석에서는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나아가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니즈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당 장애물 때문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제공되어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원인은 놔두고 증상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업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의 효과는 단기적이거나 제한적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영속화를 해소하자는 장애포괄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장애인의 참여

평등 또는 비차별과 함께 장애포괄 원칙의 다른 한 축인 사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는 장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상당수가 장애인단체라는 점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 수혜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특히 사업 기획 단계에서 그들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 다수의 사업 제안서의 수요조사 부분을 보면 사업 대상 장애인들은 사업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수동적이고 추상적인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 대상 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장애포괄적 개발’ 개념에서 개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하는바, 사업 제안 기관은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이 최종 기획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안서에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사업의 이행, 감시 및 평가 단계에 사업 대상 장애인 및 외부의 장애인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계획도 밝힐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 관련 사업들 중,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즉 장애인의 평등을 명시적 목표의 하나로 삼은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비장애인에 대한 사업에서 사실상 분리하여 다른 내용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 두 집단을 분리하여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장애포괄의, 그리고 장애주류화의 근본 원칙에서 벗어나며, 해당 사업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만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니즈의 충족 방식이 달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다른 내용의 사업들을 수행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들은 서로 분리해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증거기반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현 수준의 장애 관련 사업을 장애포괄적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장애 관련 사업이 증거에 기반하도록 돕기 위해서 사전 조사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과 관련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협력국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 소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 조사와 사업 기획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분석을 통하여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은 이제 막 장애분석이 논의되는 터라 당분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의 도움 외에 사업 수행 기관이 장애포괄적 사업을 기획하여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안내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안내 지침을 만드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일부를 체크리스트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별첨 5]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4) 장애주류화 사업 분야 확대

한편, 2020년에 착수된 KOICA 비장애 사업들의 장애주류화 가능성을 회고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자면 상당수의 사업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일정 정도의 사업들에서 장애주류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개략적이거나 긍정적인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조심스럽지만 향후 장애포괄적 사업의 확대에 관한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해 볼 수 있는바, 하나는 사업 분야와 관련한 확대 방향이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은 SDGs의 달성에 기여할 의무가 있는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사업도 마찬가지다.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KOICA 사업 분야가 장애포괄적인 SDGs 세부목표 4.5, 8.5, 11.7 등과⁶⁴⁾ 직접 관련이 있다. 교육과 관련한 세부목표 4.5와는 주로 교육 분야의 직업훈련 사업들이, 고용과 관련한 세부목표 8.5와는 주로 농림수산 분야의 농업 부문의 생산성

중대 및 이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 사업들이, 그리고 세부목표 11.7과는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그간 이슈가 되지 않은 환경적(물리적·정보적) 접근성 활동들이 직접 관련이 있다. 장애인의 환경적 접근성의, 특히 정보적 접근성의 문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학교가 폐쇄되어 학생은 교실에서가 아닌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사의 지도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원격학습(distant learning)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학생은 그러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보조 기술 및 기기를 포함하여 그들의 원격학습을 돕는 개별 맞춤형 설비 등을 제공하는 등 원격학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어도 향후 수년 간 KOICA도 교육 분야 사업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⁵⁾

따라서 KOICA가 장애포괄적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된 교육 및 고용 분야를 장애포괄적 사업의 장기적(2030년까지) 우선 영역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포괄적 SDGs 세부목표와 연관되지 않지만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의 많은 수가 보건 분야의 성생식보건 사업 분야는 이 사업 분야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과 CRPD 제25조가 성생식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생식보건 사업 분야도 SDGs 세부목표 3.7(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 목적을 포함한 성·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 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과 연관시켜 장애주류화 중점 분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중단기적 확대 방향으로(2025년까지) 국별협력사업은 장애주류화 사업 쪽에, 그리고 민관협력사업은 장애특정적 사업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별협력 사업이든 민관협력사업이든 모두 이중트랙접근법을 구사해야 하지만, 이중트랙접근법을 구사할 역량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할

64) SDGs 세부목표 4.a(아동인지적, 장애인지적 및 성인지적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상태를 개선하며, 또 모두에게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통합적이고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다. 그밖에 중요한 장애포괄적 SDGs 세부목표는 11.2(2030년까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욕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교통안전성을 개선하고 모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 비용에 접근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이다.

65) 이에 대한 논의는 UN, Policy Brief: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COVID-19, May 2020 참조.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장애주류화 사업에서 필히 제시해야 할 장애분리 통계는 민간 차원보다는 KOICA 차원에서 더 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를 수집하는 역량 측면에서, 그리고 협력국에서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얻는 측면에서 국별협력사업이 민관협력사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OECD DAC 장애마커 1점 점수 사업의 요건이기도 한데—장애포괄을, 장애 평등을 사업의 중요한 한 목표로 삼으려면 사업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규모가 좀 커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국별협력사업 형태가 적절하다는 점이다. 사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규모의 사업 대상자 안에 장애인구 비율대로 상당한 숫자의 장애인이 포함되기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⁶⁶⁾ 마지막으로, 협력국이 장애특정적 사업보다는 장애주류화 사업을 수용하기가 더 쉽다는 점이다. 협력국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기에 장애특정적 국별협력사업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별협력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에 비중을 두고 민관협력사업은 장애특정적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별협력사업과 민관협력사업 모두 균형 있게 이중트랙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별협력사업은 직업재활이나 재활치료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지닌 장애특정적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사업들은 협력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바, 아무래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소지가 있다. 문제는 장애특정적 사업에 대한 협력국의 수용 여부인데, 최근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CRPD를 비준하여 CRPD 당사국으로서 협약 이행 상황을 UN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협력국의 협약 이행 니즈를 잘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장애특정적 사업을 제안하여 그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6) 이 어려움은 작은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장애 인구 비율로 일정 규모의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애 인구 비율을 무시하고 일정 규모의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비장애인들과 나란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장애주류화 사업은 실험적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방식은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일정 수 선발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가령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보건 캠페인의 내용을 장애주류화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민관협력사업처럼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일정 수 선발하지 않는 유형의 사업에서 장애주류화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소지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진,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2018 DAC 장애마커 자발적 보고 현황 분석,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15(1), 2020 145–188
- 한국국제협력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2017
- 한국국제협력단. 2017년도 민관협력 보조금사업 안내서. (2016) : 236
- Kieck, Bettina et. al. &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isability in development,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2
- Austrian Partnership Programme in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for Development (APPEAR), Austrian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8). 'DFID's Strategy for 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2018–2023
- Kieck, Bettina et. al.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p.16.
- OECD, Handbook on the OECD–DAC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 December 2016, p.6.
- Kieck, Bettina et. al. & Inclusion Grows: Toolkit on Disability Mainstreaming for the German Development Cooperation, SLE Postgraduate Studi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ublication Series S 265, 2, July 2016, p.51.
- The 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ODE), Development for All: Evaluation of Progress Made in Strengthening Disability Inclusion in Australian Aid, December. 2018.
- World Bank, A Guidance Note: Incorporat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into Bank–Supported Projects, *Social Analysis and Disability*, March 2007.
- WHO/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p.237.

- WHO, Promo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UNFOA Guidance Note*, pp.5~7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 The Finnish Approach to Address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olicy
- Edge James, Poerty, food insecurity and disability, *New Agriculturist*, September, 2013, <http://www.new-ag.info/en/focus/focusItem.php?a=3091>.
- Md. Sazedul Islam, Why agricultural sector is so signific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independent* November, 2018,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173574>.

부록

[별첨 1] 장애 관련 사업의 장애포괄성 분석 결과

사업개요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관련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장애아동의 이동성 및 접근성 수준(보조기구 관련), 장애아동의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재활치료 및 활동 보조 관련) 등을 보여주는 장애특정적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특정적 통계는 재활치료, 보조기구,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장애아동의 비율이다. 또한 장애아동가정의 비장애아동가정 대비 생계비에 대한 통계도 필요한 통계인데, 이를 수집하지 않았다.	장애아동의 이동성, 접근성, 일상생활 영위 수준에 대한, 또는 재활치료, 보조기구,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장애아동의 비율에 대한 기존 통계가 없다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특정적 통계와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사업의 목적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낮은 장애아동의 이동성, 접근성,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및 추가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가정의 생계비 부담(비장애아동 가정에게는 없는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특히 추가 생계비 부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 기초선 수립이 어렵다면 실행 단계 초기에 이를 수립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들의 이동성·접근성·독립적 일상생활영위의 수준과 장애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생계비 확보율이 사업 전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 실행 초기에 해당 수준 및 추가 발생 생계비 확보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선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기 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비장애아동처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건축물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아동의 니즈가 불충족된 현상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및 추가 비용으로 인한 생계비 부담 없이 장애아동을	잠재적인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 방식으로 그들의 니즈의 불충족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니즈에 대해 정통한 장애인단체의 스태프(resource person)를 면접조사하여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조사일 뿐이다. 참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측 여부	총측 방안
	양육하고자 하는 장애아동가정의 니즈의 불충족 현황도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사업 수요' 부분에 '장애인 중심의 사업욕구 확인'과 같은 막연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다. 그 결과, '사업 대상 분석'에 장애아동 및 가정의 니즈의 불충족 현황과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 등이 추상적으로 정리되었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아동 및 가정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고로, 본 사업의 경우, 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 보조기구에 대한 니즈는 장애유형마다 다른바,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면 장애유형별 니즈를 조사해야 한다. 한편, '사업 대상 분석'에서는 세부사업별로 해당 사업 대상의 니즈의 불충족 현상이 어떠한지 그러한 불충족된 니즈 때문에 해당 세부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때 니즈의 불충족과 사업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불평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장애인 니즈의 불충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언급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 가령 "경제활동 집중도 불가"라는 장애물은 장애아동의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장애물의 존재와 장애인가족에 대한 그 부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활동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문제의 기회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가능한 증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한 것은 그 효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문제분석에서 적시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목표로 석과 PDM의 개별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치안, 현장 인력 확보, 환율 변동, 교육 참여율 저조,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 등과 같은 외부적, 사업 프로그램 상의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하나 그러한 위험 요인의 장애 민감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사업의 위험 요인들 일부는 장애 민감할 소지가 있다. 가령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참여를 저조는 장애 민감한 위험일 수 있다. 사업 대상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은 매우 낮고(이는 문제분석에서 적시되었다), 이는 해당 교육 참여율 저조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갈등 문제도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동 가정이나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아동 가정보다 사업 수혜자로 덜 선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민감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사업 대상자들을 장애 유형별로 적절히 안내하는 것이다.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장애아동 인권 및 장애가정 자립역량 강화”이고, 목적은 “장애아동 자립성 강화”, “커뮤니티 장애인식 개선”, “장애가정 경제적 역량강화”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이고, 목적의 지표는 “수혜 장애아동 수”, “장애이해도”, “공동작업장 생산량증대”이다. 이 지표들은 ‘장애이해도’를 제외하면 그리 장애 민감하지는 않다. 가령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복리후생 개연성이 있는 장애아동의 숫자(수혜자 수)의 증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그 참여로써 얻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수준의 향상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기에 충분히 장애 민감하다고 보기 어렵다.	PDM 상의 목적에 대한 장애 민감한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장애아동 자립성 강화”의 장애 민감한 지표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의 기능성 정도’,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활동 시간량’ 등이다. “장애가정 경제적 역량강화”의 장애 민감한 지표는 ‘장애아동가정의 장애로 인한 기회비용 및 추가 비용을 충당할 생계비 확보율’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 것은 실현 가능한가?	사업 지속가능 전략의 핵심은 사업을 “주인 자체운영 시스템”에 이양하는 것이다. 허나 재활치료, 보조기구, 활동보조인 사업 등은 성격상 주민공동체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 부분이 지속가능하려면 사업 종료 후 협력국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개입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계획 은 없다.	본 사업의 재활치료, 보조기구, 활동보조인 제공에 협 력국 정부 담당자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가령 대정부 사업홍보활동, 정부 담당자에 대한 관련 정책역량강화 교육 제공 등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 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 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 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사업 제안 기관이 장애인 관련 단계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은 이 사업 제안 기관의 해외 지부인바, 그 기관도 장애인 관련 단계로 볼 수 있 다. 다만, 그 기관이 사업 제안 기관의 지부라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입장이 사업 제안 기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협력국 장애인 및 DPO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 목표 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이고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이 그 지부의 경우에는 그 파트너 기관 외에 다른 협력국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인 경우, 공여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 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 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 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 하였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 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사업 제안 기 관이 DPO인 경우에 적어도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 는 다른 DPO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 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 합시켰는가?		

사업개요	(사례 2) 고령제피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소외 감소 및 삶의 질 개선사업(3단계):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확대 및 장애아동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재활서비스 인력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데이터케어센터 개소 및 운영, 방문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부모 대상 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개선교육, 통합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사례관리 담당자 보수교육,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OBR 조정위원회 회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점 여부	중점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이 추구하는 장애아동의 삶의 질 개선은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아동의 “사회활동 참여”의 개선이다. 장애로 인한 아동의 기능 손상이나 그로 인한 사회활동 또는 일상생활 참여의 제한에 대한 장애특정적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고령제 피해 장애아동의 비율이 라는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했다. 그밖에 장애아동 일 반의 통합교육 수혜율 등도 제시했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재활프로그램의 수혜 장애아동 비율이라는 장애특정적 통계를 기초선으로 삼았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사전 조사 방법과 내용 부분을 보면,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인 장애아동, 장애아동 가족, 기초재활서비스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니즈를 조사한 내용이 없다. 사전 조사는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미팅과 워크숍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업 대상 분석’에서 장애인 및 기타 사업 대상자의 니즈가 추상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종합 데이터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령,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아동의 니즈 또는 관심은 ‘서비스 참여도나 학습욕구가 높다’라고 정리되어 있고, 재활치료 서비스 담당 인력의 보수교육에 대한 니즈는 ‘보수교육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만 정리되어 있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사업 대상자 군별(장애아동, 서비스 인력, 장애아동 부모 등)로 양적·질적 조사 방식으로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니즈에 대해 정통한 장애인단체의 스태프(resource person)를 면접조사하여 사업에 대한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조사이다. ‘사업 대상 분석’에서 세부사업별로 해당 사업 대상의 불충족된 니즈가 무엇이고 그러한 불충족된 니즈 때문에 해당 세부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때 니즈의 불충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제시되고, 세부사업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데이터도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총괄되게 만든 또는 만 들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 적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환경 적·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나 기 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 별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총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 는가?	문제분석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장애이동의 재활서비 스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서 비스 제공 인력 부족, 데이터센터 운영의 어려움과 같은 제도적 장애물과,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대한 공무원 및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이라는 태도적 장애물 과, 데이터센터가 멀어서 가기 어려운 환경적 장애물 이 있다.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와 그것들이 장애이동의 재활서비스 접근성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가 증거나 기 반해서 충분히 서술되지는 않았다.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한 총괄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 화하는지를 증거나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 기령, 서 비스 제공 인력 부족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 100 명당 몇 명의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데이터센터가 멀어서 가기 어렵다는 것은 센터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 로 설명한다.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 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 략을 마련할 때, 장애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 련했는가?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부족, 보 조기구 지원 업무 수행 인력 부족, 재활치료 서비스 등 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부족 등을 문제점(위험 요인)으 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위험요인이라기보다는 사업으로써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이다. 그밖에 장 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본 사업에서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으 나, 장애이동 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 장애인식이 낮은 점 자체가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여 교육 참가율을 낮출 소지가 있다. 그것은 교육 참여 저조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위험 요인 은 교육의 방식이나 교육 내용에서 세심한 전략의 강구 를 요한다.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 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재활사업을 통한 장애 이동 및 당사자가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이고, 목적은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이동의 사 회활동 참여 확대"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수혜가정의 삶의 질 개선도"이고, 목적의 지표는 "장애아동 재활치 료 서비스 수혜 아동 수",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 수혜 자 수"이다. '수혜자 수'는 큰 효과가 있는 재활치료의 수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수 혜 아동의 수적 증가는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수혜자 수는 해당 지역에서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니 즈가 있는 전체 장애아동들 중 그 수혜를 받은 장애아동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수혜자 숫자와 같은 절대적 수 치보다는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중 서비스 수혜자의 비율과 같은 상대적 수치가 해당 서비스의 효과를, 즉 장애포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더 장애 민감한 지표 일 수 있다. 더 장애 민감한 지표는 서비스의 수급에 따 른 개인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령 재활치료 서 비스로 인한 일상생활의 영위 정도이다. 앞의 수혜자 수나 비율이 과정치표라면 일상생활 영위 정도는 결과 지표로, 대개 PDM 상의 목표의 지표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지속 가능		의비율과 달리 사업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아동에 미친 영향의 크기를 적절히 보여주지는 못한다. 한편, '삶의 질 개선도'는 이 사업의 재활동료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들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이 장애특정적 사업은 지역에 조직되어 있는 CBR 조정 위원회, 지방정부 장애인 정보시스템 등 현지의 장애 관련 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이 있고 이미 사업(워크샵 등)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포섭했다는 점에서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협력국 DPO가 참여하는 현지 CBR 조정위원회가 사업 기획 단계에 참여하였다. 한편, 사업 기획 단계에 공여국(우리나라) 장애인 및 DPO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그러한 조치를 제인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사업개요	(사례 3) FabLab Bishkek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질적 향상 사업: 디지털 제조 교육 및 기술 기반형 메이커 문화 확산을 통해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시설의 구축, 장비 및 기자재 설치,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자 양성 교육, 디지털 제조 교육, 디지털 제조 장비 활용 단과교육, 절단장예인 대상 워크숍, 메이커톤(워크숍), 기업가정신 교육, 취·창업 박람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종속 여부	종속 방안
장예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연관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예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은 장예인과 비장예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아무런 장예분리 통계도, 장예특정적 통계도 수집되지 않았다.	장예인이 비장예인에 비해 취·창업 훈련을 받거나 취·창업을 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장예인에 대한 세부 사업을 둔 것이라면, 즉 장예주류화 사업을 의도한 것이라면 훈련이나 취·창업에서 장예인이 비장예인에 비해 얼마나 불리한지 입증해야 한다. 상기 비율과 같은 장예분리 통계를 구할 수 없다면, 차선으로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최소한 협력국 DPO 스태프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장예인이 취·창업에서 비장예인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질적 데이터라도 수집하여 제시해야 한다.
	수집된 장예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집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예분리 통계나 장예특정적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에서 핵심지표를 취·창업률로 하고 그 기초선을 63%로, 목표치를 68%로 정하면서 '목표치 산출 근거'를 "기존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 대비 디지털제조교육 수료 후 취·창업률 10% 증가"로 잡은 것으로 볼 때, 고등교육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63%인 것으로 보인다. 허나 장예를 가진 고등교육 졸업자 취업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로, 63%라는 수치의 출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장예주류화 사업이라면 핵심적 사업 대상인 고등교육 졸업자의 취업률을 장예인과 비장예인으로 분리하고 장예인과 비장예인의 취업률을 각각의 기초선으로 삼으며 그 두 집단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되 양 집단의 취업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예를 고려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고등교육 졸업자를 핵심적 사업 대상으로 삼지만 장예를 가진 고등교육 졸업자의 낮은 취업률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서 고려하는 장예인은 장예를 가진 지역 주민이며, 그밖에 일반 지역 주민도 사업 대상이다. 결국 이 사업은 3개 집단의 고등교육 졸업자, 장예를 가진 지역 주민, 일반 지역 주민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각각의 집단에 대해 각각 다른 사업 내용(교육 내용)과 다소 다른 목표를 적용했다. 고등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창업을 목표로 시제품을 만드는 교육이라면 장예를 가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측 여부	총측 방안
			교육은 절단장애헤를 가진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자의수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자신의 전자의수를 만들어보는 것이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의 니즈의 불충족 현황은 사실상 조사되지 않았다. 장애인이나 DPO에 대한 면담이나 조사가 없었고 적십자회 측이 절단장애인이 직접 보조기구 제작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였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과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본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니즈의 불충족 현상은 조사해야 한다. 과연 자신들의 의견을 손수 제작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러한 제자에 절단장애인들이 관심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 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불평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들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의 장애물(태도적·환경적·제도적 장애물)을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은 없고, PDM에서 절단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언급했다.	본 사업이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관련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해소책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를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예산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서 아무런 장애 민감한 위험요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거된 위험요인들 중 "프로그램 참여 저조", "취업연계 미흡" 등의 위험요인은 어느 정도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디지털 격차나 교육 격차 때문에 이 사업의 디지털 제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서 더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고, 취업 연계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서 더 낮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이라면, 위험요인 중 특별히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위험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지표	PDM 상의 목표는 "디지털 제조 교육 및 기술기형해 이커 문화 확산을 통한 취·창업 기회 확대"이고, 목적은 "창의 기반의 디지털 제조 교육의 확산 및 전문성 제고"와 "디지털 제조 교육 수료 후 취·창업 수요 발굴"이다. 목표의 지표는 두 가지로, "디지털 제조 시설 이용자 수"와 "취·창업률"이다. 목적의 지표는 "Lab 매니저 자격 취득자" 수, "현직강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 횟수", "메이커 동아리 등록 수", "시제품 제작 건수" 등이다. 목표 및 목적의 지표들 중 장애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표는 "디지털 제조 시설 이용자 수"뿐이다. 절단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취·창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취·창업률"은 절단장애인과 무관한 지표이다. "디지털 제조 시설 이용자 수"는 장애로 분리될 수는 있겠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다르므로, 그리고 교육 대상자 숫자를 각각 정해 놓고 하는 것에 참여한 장애인은 신기술과 자신에게 필요할 수 있는 전자의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어가기는 하나 그것은 권리적 차원의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워크샵에 참여한 장애인의 수는 장애 민감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	이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그리고 관련 지표를 장애 민감한 지표로 발전시키려면, 비장애 학생과 장애학생에게, 또는 비장애 지역주민과 장애 지역주민에게 취·창업 용도의 같은 디지털 제작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학생이나 장애 지역주민에게 교육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분리되는 "취·창업률"과 같은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지속 가능	'사업 지속 가능성 전략'에서 절단장애인에 대한 사업의 지속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참고로, 현지 파트너기관이 국립기술대학으로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갖추고 있기에 사업 지속을 위해서는 시설 관리비와 재료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 예산을 대학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노력을 하기로 계획했다.	장애주류화 사업의 경우, 장애 관련 사업 부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애 관련 사업 부분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DPO 및 사업 대상 장애인을 수요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와 사업 대상 장애인들을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업개요	(사례 4) 기초교육 및 여성·장애인 문제 개선을 위한 ICT기반 창의교육: 낮은 교육 수준, 초등학교 중도탈락 및 장애인·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ICT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강사 양성 교육, 교사 교육 및 소외아동 교육을 위한 ICT 창의교육센터의 구축, ICT 창의교육 강사 양성 및 학교 교원 연수, 초중등학교 ICT 창의교실의 구축 및 운영, 장애아동 및 여아 대상 ICT 창의교육, 지역교육, 지역학교 대상의 코딩 캠프 개최, ICT 창의교육용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을 수행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관련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협력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중등교육 참여율(취학률) 격차가 15%라는 장애분리 통계가 수집, 제시되었다. 한편, 이 사업의 주요 관심사인 중도 탈락을 예대한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장애분리 통계도 없고 전체 학생에 대한 통계도 제시되지 않았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위에서 언급된 취학률의 장애분리 통계에 근거한 기초선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ICT 창의교실이 설치된 초등학교 졸업률 20% 개선이라는 중기적 성과 지표의 목표를 보건해 초등학교 졸업률의 기초선은 설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⁶⁷⁾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 내 장애아동이 아니라 학교 밖 장애아동이 사업 대상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목표는 이들의 졸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력(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들의 학력 수준에 대한 통계도, 기초선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이라면 핵심 사업 대상인 초등학교의 졸업률을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으로 분리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졸업률을 각각의 기초선으로 삼으며 그 두 집단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되 양 집단의 졸업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를 고려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취약 중인 초등학교를 핵심 사업 대상으로 삼지만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의 낮은 졸업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사업에서 고려하는 장애아동은 학교 밖 장애아동이며, 그밖에 학교 밖 여아도 사업 대상이다. 결국 이 사업은 취약 중인 초등학교 집단과 학교 밖 소외계층이라 할 장애아동과 여아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해 다른 사업 내용(교육 내용)과 다소 다른 목표를 적용한다.

67)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가 아닌 사업실행계획을 조사했는데, PDM과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지표 및 기초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총괄 방안
	장�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 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 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 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 가?	이 사업 대상인 학교 밖 장애아동의 니즈의 불충족 현 황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학교 내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학교 밖 장애아동과 대비하여 조사되지 않 았다.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의 관심 은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의견은 조사 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대상 ICT 교육은 ICT 창의교실 및 코딩캠프 등의 운영을 통하여 질 높고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을 통해 중도 탈락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고, 학교 밖 장애 아동과 여아 대상 ICT 교육은 ICT 창의교육센터의 운영 을 통해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사업은 취학 중인 아동에 대한 사업에서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장애주류화 사업도 아니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사업에 서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장애주류화 사업도 아니다.
니즈 조사			본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 더라도, 그래서 비장애아동과 대비하여 장애아동의 니 즈의 불충족 현황을 조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아동 을 사업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니즈의 불충족 현 황은 조사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의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양적·질적 증거 자료에 입각해서 정리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 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 들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 방적 수준의 장애물(태도적·환 경적·제도적 장애물)을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 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 는가?	장애아동의 니즈를 비장애아동의 니즈와 비교하여 조 사하지 않았기에 문제분석에서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 애아동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장애물 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장애아동이 "학교 교육에 서 배제"되게 만드는 장애물(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 식과 차별이 팽배)"을 상식적 수준에서 제시한다. 그런 데 문제분석에서는 장애아동이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 게 만드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을 사업 내용에 포함시 키지 않고 대신, 그렇게 배제됨으로써 낮아진 학력 수준 (또는 교육 기회)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것("교육기회 가 박탈된 장애아동 대상으로 ICT 기반 창의교육을 한 다")을 사업 내용으로 제시한다.	본 사업이 장애인을 사업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관련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해소 책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이를 문제분석과 목표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로, 학교 밖 장애아동에 대해 교 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장애아동이 취학을 하지 못하거나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찾아내어 해 소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그럴 경우 사업은 장애주류화 사업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족 여부	총족 방안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서 아무런 장애 민감한 위험요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열거된 위험요인들 중 '지역주민들의 낮은 협조'와 같은 위험요인은 어느 정도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디지털 격차나 교육 격차 때문에 ICT 기반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은 장애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저조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장애주류화 사업이라면, 위험요인 중 특별히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위험한 것이 있는지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과 '사업 이행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부분이 제시되지 않아 지표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지만, '종기적 성과'의 '정량적 성과' 부분에 '학생 학업성취도', '졸업률'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밖 장애아동 대상 사업의 정량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다만 '정성적 성과' 부분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것으로 '지역 내 장애아동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 수준은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비장애아동이 대부분의 학교나 학생과, 학교 밖 장애아동과 학교 밖 여아라는 3개 집단에 대해서 학교 내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및 졸업률 향상을, 학교 밖 장애아동과 여아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다른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는바, '교육 수준'은 이 사업의 비장애학생과 학교 밖 장애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아니다. 이 지표는 학교 밖 여아와 장애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장애아동의 교육 수준(학력 수준)에서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장애특정적 지표라 할 수는 있겠으나 장애분리 지표는 아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 부분은 이 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수행해도 되는 사업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문제분석에서 언급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둘 다를 사업 대상으로 삼으려면 사업은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기령, 이 사업의 주요 목표인 초등학교 중도탈락률 감소를 목표로 ICT기반의 창의교육을 장애 구분 없이 실시하되 교육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을 비장애아동에 비해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환경적·정보적·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장애로 분리되는 졸업률 또는 중도탈락률이라는 장애분리 지표는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비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의 격차의 변화를 측정하는 장애 민감한 지표다.
지표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 것은 실현 가능한가?	'사업 지속 가능성 전략'에서 학교 밖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의 지속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다른 사업 부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 다.	장애주류화 사업의 경우, 장애 관련 사업 부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장애 관련 사업 부분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 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 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 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 지 않았다. DPO와 사업 대상 장애인들을 수요조사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 지 않았다.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와 조사 대상 장애인들을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 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 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시키 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업개요	(사례 5) 소아재활센터 역량강화 사업: 지역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개선을 통해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재활의료 장비의 제공, 집중 재활 프로그램(병동 체계)의 개발 및 운영, 새 소아재활센터 개설, 재활치료사 양성, 장애아동 부모 및 형제 대상 인식개선 및 돌봄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본 사업이 지원하고자 하는 소아재활센터가 협력국의 거의 유일한 소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장애아동 인구 대비 센터에 등록된 장애아동의 비율인 1%를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장애아동의 비율로 제시했다. 또한 센터에 등록된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대통계도 제시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장애 통계라 할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통계는 수집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인력의 부족, 임원실, 치료장비, 약품, 처치 등의 부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략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서술했다.	사업 수행 전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의 수 또는 비율을 기초선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의 핵심 지표인 “역량개발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지역 수혜 아동 수”에서 “역량개발된 재활 치료사”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단순 서비스 이용 자 숫자 또는 비율을 기초선으로 삼는 것이 아주 정확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상기 장애 통계에 근거하여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의 수 또는 그 비율의 기초선을 수립하지는 않았다. 한편, 또 다른 중요 지표인 “치료아동의 상태 호전도”는 기초선에 해당하는 “치료받기 전의 상태”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기획 단계에서 따로 기초선을 수립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수행 전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아동의 수 또는 비율을 기초선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의 핵심 지표인 “역량개발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지역 수혜 아동 수”에서 “역량개발된 재활 치료사”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단순 서비스 이용 자 숫자 또는 비율을 기초선으로 삼는 것이 아주 정확 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비장애아동과 달리 장애로 인해 사회에 완전히 통합할 수 없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2차 자료(정부의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했다. 의료재활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율(52.7%)을 제시했다. 한편, 다른 사업 대상인 장애아동 부모 및 재활치료 인력의 니즈 조사는 주로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니즈 조사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조사 내용이 세밀하지 않은바, 질적 면접조사의 경우, 정해진 수의 조사 대상에 대해 좀 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니즈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 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든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 · 환경적 · 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반하 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화 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 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 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장애아동의 니즈(적절한 재활치료에 대한 원활한 접근 성)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비장애인과 평 등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전문적인 재활의료 서비스의 부재, 재활치료 환경의 낙후 및 부족, 가족의 장애 관련 지식의 부족 등)을 적시 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들을 목표분석 및 PDM에 반 영했다. 하나 그러한 장애물들의 존재와 그 부정적 효 과, 제안된 조치들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목표에 기 여하는 효과 등을 증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 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니즈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장애물의 존재 와 그것이 장애아동의 니즈의 충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 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 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 련했는가?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에서 열거한 것들(장비 현지 조달의 어려움, 집중 프로그램 참여도 저하, 현지 치료 사에 대한 전달 연수의 한계) 중 집중 프로그램 참여도 저하는 어느 정도 장애 민감한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 다. 집중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이 낮 시간 동안 임원해 서 재활치료를 받은 후 저녁 시간에 퇴원하는 장애특정 적인 프로그램으로, 보호자가 장시간 병원에서 대기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꺼릴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 점심 제공을 포함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응책'은 적절할 수 있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에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이고, 목적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이다. 목표의 지표는 "사회성숙도 향상된 아동 수"이고, 목적의 지표는 "역량개발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은 지역 수혜 아동 수"와 "치료 아동의 상태 호전도"이다. '치료를 받은 수혜 아동 수'는 치료가 곧 바람직한 효과가 있는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치료가 효과가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이 사업에서는 훈련으로 역량이 증가한 재활치료사에 의한 치료이기에 그 개연성이 더 크다), 이 지표로써 측정되는 수혜 아동의 수적 증가는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지표의 한계는 "치료아동의 상태 호전도"라는 재활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또 다른 장애 민감한 지표로써 보완된다. 목표의 지표인 "사회성숙도 향상된 아동 수"는 치료 효과의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수적 증가보다는 비율이, 가령 '사회성숙도가 일정 정도 향상된 아동의 비율'이 치료 효과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더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의료계와의 워크숍은 가능한 한 사업의 개별활동에 포함시키고, 워크숍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것도 개별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TOT 교육을 통해서 재활치료사 양성 교육을 위한 현지 강사 인력을 구축하는바, 재활치료사 양성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양성된 재활치료사가 소아재활 센터 등에 더 많이 지속적으로 고용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계의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는 특별히 없다.	의료계와의 워크숍은 가능한 한 사업의 개별활동에 포함시키고, 워크숍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는 것도 개별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다. DPO를 주요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여국 및 협력국의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업개요	(사례 6) 장애인동 및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장애인동 및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보장구 이용을 증진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동 재활치료 기술자와 보장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각각 해당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기술교육의 실행 대상으로 장애인동을 참여시켜 재활치료와 보장구의 혜택을 주며, 보장구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장구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장애인동의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인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재활치료 및 보장구와 관련된 장애인동의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및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 등을 보여주는 장애인통계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애인통계 통계는 재활치료, 보조기구, 활동보조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장애인동의 비율인데, 이 또한 수집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 일상생활 영위 수준에 대한, 또는 재활치료, 보조기구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못한 장애인동의 비율 등에 대한 기존 통계가 없다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이들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장애인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인의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및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 등에 대한 장애인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고,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립은 없다. 또한 재활치료 기술자와 보장구 기술자의 전문기술 수준에 대한 통계와 이에 근거한 관련 기초선도 없다.	기획 단계에서 기초선 수립이 어렵다면 실행 단계 초기에 이를 수립해야 한다.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이동성·물리적 접근성·독립적 일상생활영위의 수준 등이 사업 전과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업 실행 초기에 해당 수준들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선으로 삼아야 한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사업수요 조사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고 하나 그 어떤 조사 결과도 제시하지 않았다. 비장애인동처럼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건축물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동의 니즈가 불충족된 현황이 구체적인 것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의 보유라는 재활치료 기술자와 보장구 기술자의 니즈의 불충족 현황도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장애인과 기술자들의 사업 관련 니즈가 사업 대상 분석의 '관심, 동기 및 태도'와 '특성' 란에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재활치료 및 보장구 혜택을 받게 될 장애인은 "낮은 기술 및 낮은 질의 보조기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겪기에 "보장	잠재적인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 방식으로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니즈에 대해 정통한 장애인 단체의 스태프를 면접조사하여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보충적인 조사이다. '사업 대상 분석'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낮은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및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 등)과 이를 개선하는 데 대한 장애인의 관심을 증거나 기반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다. 재활치료 기술자와 보장구 기술자의 니즈의 불충족 증거나 기반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 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들 수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 · 환경적 · 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반하 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화 물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 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 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장애아동의 니즈가 불충족되게 만드는 장애물들(재 활치료 및 보장구 전문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의 부족, 보장구의 낮은 보급률 등)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을 해소할 조치들(재활치료 및 보장구 전 문 기술자에 대한 기술 교육, 기술 교육 실습 대상 장애 인에게 재활치료 및 보장구 제공 등)을 목표분석 및 PDM에 반영했다. 허나, 장애물들의 존재와 그 부정 적 효과, 제안된 조치들이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효과 등을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에 니즈의 불평등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치들이 얼 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 하는지를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한다. 가령 재활치료 및 보장구 전문 기술자들의 기술이 얼마 나 낮아서 그들의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들의 니즈가 얼 마나 충족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본 사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들에 대한 기술 교육이 얼마나 그들의 전문 기술 부족을 해소해서 장애인에 이득성, 물리적 접근성 및 두 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을 증진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 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 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 련했는가?	한국어로 강의하는 데 따르는 강의 내용 전달의 문제, 교육 대상 기술자들 간의 기술 격차에 따른 강의 수준 및 진도 상의 어려움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강 제인을 실습의 대상으로 참여시키는데, 실습이라는 것 이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는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면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실습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실습 장소가 나뉘는 안전이 제도화된 본래의 재활치료실 및 보 장구 피팅 장소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안전사고 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한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 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자의 위험과 관련해서는 강사 진만이 시연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나 보장구 피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이다. 후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및 보장구 피팅 관련 안전 규격에 맞게 실습 장소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 요할 것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및 '평가계획'을 종합해보면 사업의 목표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과 보장구 전문기술 향상을 통한 장애보장구 활용 증진 및 아동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고, 목적은 "장애아동 재활교육을 통하여 장애아동치료와 보조기에 대한 기술을 익히고, 수준이 향상된다", "기술자보수교육을 통해 기존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 "보장구 수혜를 받은 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된다"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직접 수혜자(장애인, 장애아동의 만족도"이고, 목적의 지표는 "전문가 기술평가 통과율", "이론 필기시험 통과율", "직접 수혜자(장애인, 장애아동의 만족도"이다. 이 지표들은 모두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전문가 기술평가 통과율과 '이론 필기시험 통과율'은 장애인의 이동성, 물리적 접근성 및 독립적 일상생활 영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치료 및 보장구 기술자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직접 수혜자의 만족도'도 상기 수준에서의 향상을 간접적이나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에서의 향상을 직접적으로 포착하지는 못하기에 충분히 장애 민감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충분히 장애 민감한 지표를 채택해야 한다. 기령 "보장구 수혜를 받은 장애인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라는 목표의 충분히 장애 민감한 지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기능성 정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시간량' 등이다. 이 지표들은 '직접 수혜자의 만족도'보다 훨씬 더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핵심적인 사업 지속가능 전략은 교육 센터 건물을 협력 기관에 양도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가 협력 기관과 사업 제안 기관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양도된 센터에서 기술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본 사업 교육의 수료생 중에서 충원할 계획이다. 추측컨대, 개발된 커리큘럼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장애특정적 사업은 지속가능할 것이다. 다만,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속가능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같은 장애포괄의	본 사업에서 장애포괄의 핵심 원칙의 지속가능이 취약할 소지가 있는 것은 본 사업이 기술자들의 기술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장애인들이 사업 수혜자의 일부이기도 하나 이들의 사업상의 지위는 도구적인 성격이 강한 실습 대상자이다). 기술자들이 자활처로 곧 보장구 제공을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본 사업의 커리큘럼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해보니 협력 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센터 건물과 잠재적인 강사 후보자들뿐이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속 가능성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참여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핵심 원칙의 지속가능성도 의미하는 것인바, 본 사업은 그 핵심 원칙의 강화를 위한 활동이 없고, 기령 재할치로 및 보장구 기술자들이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서비스에 임하게 하는 활동 등이 없고 기술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기에 그런 원칙의 지속 가능성에서 취약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원칙은 사업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 둘 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램과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다. 평등과 같은 장애포괄 원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본 사업 기술 교육의 커리큘럼에 필히 관련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포괄 원칙의 지속가능성의 주체는 협력기관인바, 해당 장애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협력기관을 적극 참여시키고 그 스텝들도 그 교육에 교육자 및 피교육자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이 사업 제안기관이 장애인 관련 단계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협력국의 DPO 한 곳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안"을 한바, 협력국 DPO도 기획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DPO의 참여 내역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필요는 있다. 또한 사업 제안기관 외에 공여국의 다른 DPO가 추가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기획 외에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사업 제안기관이 DPO인 경우에 적어도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는 다른 DPO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업개요	(사례 7)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음료 조리, 미용, IT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설비, 강사, 교재 등을 마련하고, 훈련 대상을 선발하여 훈련을 시키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종족 여부	종족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분리 통계는 장애로 분리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참여율도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특정적 통계이다. 사전 조사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 지역의 "장애인취업실태" 관련 통계는 전무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데이터는 부족하고 그 신뢰도도 낮다. 이를 이유로 관련 장애분리 통계는 전혀 수집되지 않았다.	협력국이 생산한 관련 장애분리 통계가 없다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장애인의 취업률을 조사한 다음, 대상 지역 인구의 취업률을 구하여 취업률에 대한 장애분리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전체인구의 취업률은 대개 모든 국가가 수집, 관리한다.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참여자는, 그 지역에 서 그러한 훈련이 손꼽을 정도라고 하므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와 직업재활교육 기능 연령층의 장애인 숫자를 이용하여 직업재활훈련 참여율을, 가능하다면, 장애유형별 참여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점은 기존의 기용한 관련 통계가 없다면 소규모 조사로 얻은 통계와 기용 통계를 활용하여 장애분리 통계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집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장애 통계를 수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이에 근거해서 기초선을 수립해야 한다.	본 사업의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인바, 기존의 장애인 취업률이 핵심 기초선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규모 조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선 은 본 사업의 직업재활교육이 그 교육 대상 장애인에게 끼친 취업효과를 포착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요약될 수 있는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동 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은 "지역 장애인 대상 높은 시업육구 및 교육 참여 의지 확인", "직업재활교육 참여 통한 교육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육구"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정리된 내용이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둘 다에서 동일하다. 사업목	잠재적인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방식으로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상은 본 사업의 대상인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인바, 장애유형별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동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의 관심과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그들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측 여부	총측 방안
	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되는 또는 만 들 수지기 있는 국기적, 지역적, 지방 적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환경 적·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 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 별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 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 는가?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부재", "장애인식 부족", "정부 관심 부족" 등)를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 을 해소할 조치들("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제공", "장애 인 고용 기피", "장애인식 개선", "정부 관심 확대")를 목표분석에 반영했다. 참고로 '정부 관심 확대'는 PDM 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물들의 존재와 그 부정적 효과, 제안된 조치들이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효과 등을 증거에 기반하여 서술 하지는 않았다.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부족'에 관해서 는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술전문학교가 한 곳이 있으나 청각장애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 다'는 설명만 있고, '장애인 고용 기피'와 관련해서는 '관 련 법상 정부는 장애인 재활의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만 있다. 한편, "정부 관심 부족" ("정부 장애인법 강제성 결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부재",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부족")이라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는 사업에 포함 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장애물 들과 그 불평등한 충족이라는 결과물의 존재에 대해 양 적·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충분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한 충 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치 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 등을 완화하는지도 가능한 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논의가 어렵 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령,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어떻게 장애인의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직업재활교육을 마쳐서 일정한 스킬을 갖춘 장애인이 취업하는 기회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설 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한 것은 그 효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인데, 그럼에도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 지 않았다.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적시해야 한다.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 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 략을 마련할 때, 장애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 련했는가?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부분에서 위험 요인으로 "교 육생 중도 이탈", "자연재해",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등을 적시했다.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은 적시하지 않 았다.	장애인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사업의 대상 인 발달장애인의 교육에서 안전사고 등의 위험 요인이 존재할 소지가 상당하다. 발달장애인에겐는 식음료 조 리 관련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는바, 화기나 조리기구 를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또한 교육장소로 오가는 도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길을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측 여부	총측 방안
	장예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에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장예인 자립 역량 강화”이고, 목적은 “발달장예인 대상 직업재활교육 제공”,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교육 제공”, “지역 주민 장애인식 개선 대상 직업재활교육 제공”, “지역 주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제공”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없고, 목적의 지표는 “직업재활교육 참여 발달장예인 수”, “직업재활교육 참여 청각장애인 수”, “장예인식 개선 교육 참여 주민 수”다. 이 지표들은 모두 그리 장에 민감하지 않다. 가령 ‘직업재활교육 참여자 수’는 그 참여가 장예인의 직업적 스킬의 획득과 그에 따른 취업의 개연성을,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을 지닌 장예인의 수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에 민감한 지표라 할 수도 있으나 장예인의 직업 능력의 획득이나 취업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에 민감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있을 위험도 있다. 이것들은 장에 민감한 위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책(가령, 화기 안전교육 실시) 마련이 필요하다.
지표			“청각장애인 대상 직업재활교육 제공”이라는 목적의 장에 민감한 지표의 예는 청각장애인의 직업 능력의 실질적 변화를 포착하는 ‘관련 기술 자격증을 획득한 직업재활교육생의 비율’이다. ‘발달장애인 자립 역량 강화’라는 목표의 지표는 PDM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이 목표의 장에 민감한 지표의 예는 ‘취업에 성공한 직업재활교육 수료생의 비율’이다.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예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자체 펀드레이징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지속 운영”이다. 자체 장애인 보호작업장들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러한 전략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협력국 정부는 법적으로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사업 대상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 사업을 협력국 정부 및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기관에 이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본 사업 종료 후 이를 협력국 정부 및 직업재활교육 기관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관 담당자들을 본 사업에 참여시키는 개별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인서에서 밝혔듯이 본 사업이 “장애인 직업재활 모델 구현 및 타 지역 확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정부 및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하는 간접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업 실행계획 수립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전략을 사업의 개별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전략은 그 담당자들의 직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이 사업 제안 기관이 장애인 관련 단체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은 이 사업 제안 기관의 해외지부인바, 그 기관도 장애인 관련 단체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기관이 사업 제안 기관의 지부라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입장이 사업 제안 기관의 입장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 협력국 장애인 및 DPO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 외에 공여국의 다른 DPO가 추가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이고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이 그 지부인 경우에는 그 파트너 기관 외에 다른 협력국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인 경우에, 공여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인 경우에 적어도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 다른 DPO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참여

사업개요	(사례 8)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 마케팅 교육, 성공패키지 지원, 사후관리, 사회적 기업의 조직 및 운영 등을 수행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무런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고, 협력국 정부 차원의 직업재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만 언급되었다. ⁶⁸⁾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분리 통계는 장애분리된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 취업률 등일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이 필요함에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과 같은 장애특정적 통계도 중요한 통계일 수 있다.	협력국이 관련 장애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서 이를 구할 수 없다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 서로도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기령,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장애인들의 취업통계를 조사한 다음, 대상 지역 전체 장애인들의 취업통계를 구하여 취업률에 대한 장애분리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직업재활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도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장애 통계를 수집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기초선을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사업의 목표가 '장애인 고용 창출'이고 그 지표가 '경제 활동 인원'이다. 이 지표를 단순한 경제활동인원 수가 아니라 훈련 이수자의 경제활동참가율로 바꾼다면 기존의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이 핵심 기초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조사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초선은 본 사업의 직업재활교육이 그 교육 대상 장애인에게 끼칠 경제활동참가 효과를 포착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이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사업 수요' 및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 중도장애인의 특수장애인이 직업재활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심리적 차원의 관심이 조사·정리되었다. 다만 너무 간략하게 정리되었다. 경제적으로 직업재활에 관심이 높지만 갑작스러운 중도장애로 인해 사회복귀와 관련해 심리적 위축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간략히 그리고 특정한 증거 자료의 언급없이 정리되었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사업 수요' 부분이나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사업 대상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양적·질적 증거 자료에 입각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68) 사업 제안 기관은 이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임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듦 소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환경적·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들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장애인의 니즈(기령, 직업재활을 통한 정서적 회복과 직업 역량의 강화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장애인의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부재", "장애인 당사자 인식(동기부여 부족)", "사회적 인식 및 정부정책 부족", "창업지원 제도 부족" 등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을 해소할 조치들을 목표분석에 반영했다. 이러한 장애물의 존재 및 부정적 효과를 데이터(직업재활이 취업으로 연계된 비율)나 니즈 조사 결과(사회복귀에 대한 심리적 위축 등)에 기반하여 서술하나 사용된 데이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가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직업재활 훈련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 진문장을 신화할 수 없다고 서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데이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정책 부족, 창업지원 제도 부족과 같은 제도적 장애물의 경우에도 그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조치들의 효과는 전혀 증거에 기반하여 서술하지 않았으며,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는 사실상 없다.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장애물들의 존재와 그것의 부정적 효과, 그리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조치의 효과들을 증거에 기반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도적 장애물을 언급한 것은 그 효과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일 텐데, 그럼에도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차원의 조치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적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부분에서 위험 요인으로 "우기로 인한 산사태 및 교통수단 부재, 도로파손 등으로 훈련생 모집과 모니터링의 어려움", "네팔의 축제 기간(더싸인, 티할)동안 교통수단 부재, 모든 기관과 가게가 문을 닫아 훈련 진행 불가능", "사업성과 달성(직업)으로의 연계) 지포 미달" 등을 적시한다. 상기 위험 요인 중 '교통수단 부재'는 이 사업 대상인 중증장애인에게는 특별히 장애 민감한 위험일 수 있다. '직업으로의 연계' 지표 미달도 상당히 장애 민감한 지표이다. 사업 제안기관은 그 미달의 원인으로 '직업재활에 대한 장애인의 의지 부족'을 들었는데, 그밖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기령, 사회적 차별로 인한 취·창업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장애 민감한 것일 때, 그러한 점을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장애를 고려하는 방안일 필요가 있다. '교통수단의 부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 수 있다. 우기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존하는 문제일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단순한 우기나 축제 기간을 피하여 사업 일정을 정하는 것 이상의 장애 민감한 대응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지표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방안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장애인의 고용 창출”이고,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경제활동 인원”이고, 목적의 지표는 “훈련생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참여 비율’과 ‘훈련 이수율’이다. 목적의 지표에서 ‘중증장애인의 훈련생의 비율은 중증장애인 집단이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기회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견 장애 민감한 지표일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단순히 중증장애를 가진 훈련생을 총 원하는 노력이나 의도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고 총원 그 자체가 성공적 훈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총원히 장애 민감한 지표가 아닐 소지가 있다. ‘훈련 이수율’도 장애인이 직업재활훈련을 무사히 마쳐서 일정 직업기술을 갖게 되는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이나, 이수 자체가 직업기술의 충분한 습득을 보여주는 것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애 민감한 지표는 아니다. 한편, ‘경제활동 인원’이라는 목표의 지표는 그 인원수에서의 변화가 이 사업의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효과(취·창업)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이기는 하나 기존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의 정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못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장애 민감하지는 않다.	이 사업 목적의 지표가 충분히 장애 민감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훈련 이수율이나 훈련 참여율보다는 훈련으로써 취득되는(훈련의 직접적 효과인) 직업적 스킬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의 하나는 관련 자격증 취득률이다. 유사하게, 목표의 지표도 경제활동 인원수보다는 훈련 이수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더 장애 민감한 지표다. 이 비율을 지역 평균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대비할 경우(그 참가율을 기초선으로 삼을 경우) 장애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총보 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직업재활센터를 장애인 생산자조합 형태로 조직,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자립시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략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기에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옹호 활동을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이 사업 제안 기관이 장애인 관련 단계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은 이 사업 제안 기관의 해외 지부인바, 그 기관도 장애인 관련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그 기관이 사업 제안 기관의 지부라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입장이 사업 제안 기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 협력국 장애인 및 DPO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 외에 공여국의 다른 DPO가 추가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이고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이 그 지부인 경우에는 그 파트너 기관 외에 다른 협력국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인 경우에, 공여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여국 및 협력국 DPO가 사업 기획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기획에서 한 역할을 제안서에서 간략히 서술해야 한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사례 9) 장애인년 경제자립지원사업: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고용지원센터 건립과 장비 및 기자재 공급, IT교육 및 사회기술교육 등 직업훈련, 취업훈련(아웃소싱) 및 창업형(사회적 기업) 일자리 제공, 소액대출, 재택근무 체계 구축 및 지원, 장애인식 개선 미디어 홍보 등을 실시한다.

사업개요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관련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분리 통계는 장애로 분리 된 취업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소득 수준 등이 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참여율이나 직업재활 이 필요함에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특정적 통계라 할 수 있다. 관련 장애분리 통계는 수집하지는 않았고, 일 부 장애 통계(직업훈련 참여 장애인 수 등)를 수집, 제시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분리 통계는 장애로 분리 된 취업률,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소득 수준 등이 다. 또한 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 참여율이나 직업재활 이 필요함에도 직업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장애특정적 통계라 할 수 있다. 관련 장애분리 통계는 수집하지는 않았고, 일 부 장애 통계(직업훈련 참여 장애인 수 등)를 수집, 제시 했다.	협력국에서 생산한 장애 통계가 없다면, 사업 대상 지 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장애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기령, 먼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장애인의 취업률 을 조사한 다음, 대상 지역 인구의 취업률을 구하여 취업률에 대한 장애분리 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참 고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IT 직업훈련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IT 산업에서(좀 더 넓 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취업률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는 장애 분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장애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한 기초선 수립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장애 통계를 수집하고 기능하 한 이에 근거해서 기초선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 조 사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에서 장애인 취업률을 파악 할 수 있다면, 이를 이 사업의 주요 지표의 개략적인 기초선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를 기초 선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는 이 사업 직업재활훈련 이 수자의 IT 산업 취업률이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상 과,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 대 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IT 산업의 일자리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사업 수요' 및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 정리된 IT교육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의 관심의 내용은 다소 간략하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 애인들의 의견은 조사하지 않았다.	IT 산업의 일자리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상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사업 수요' 및 '사업 대상 분석' 부분에 정리된 IT교육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의 관심의 내용은 다소 간략하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장 애인들의 의견은 조사하지 않았다.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상과 본 사업에 대 한 그들의 관심을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 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평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 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들 수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의 장애물들(태도적·환경적· 제도적 장애물들)을 증거에 기반하 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화 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 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 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접근 가능한 직업교육 시설 부족", "장애인의 구직 기술 및 자존감 부족", "구직 자본 등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을 해 소할 조치들을 목표분석에 반영했다. 다만 장애물의 존 재 및 부정적 효과를 증거에 기반하여 서술하지 않았 다. 문제분석 및 목표분석 차트에 대한 서술 자체가 없 다.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 장애물 들과 그 불평등한 충족이라는 결과물의 존재에 대해 양적·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충분히 서술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등 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언된 조치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도 가능한 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 의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 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 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 련했는가?	'예상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부분에서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것들 중 "훈련생 모집 저조", "출석을 및 훈련이 수 저조", "고용률 저조" 등은 장애 민감한 위험 요인을 소지가 있다. "출석을 및 훈련이수 저조"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그 원인의 하나로 파악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도보 접근 가능한 숙소 또는 기숙사 연계"라는 대응책 을 제시했다. "고용률 저조"는 모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 갖는 위험요인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발생 하기 쉬운 위험요인이다. "상공회의소 협조 요청 및 유 관 기업간담회 실시", "추가 교육 지원" 등 유효한 대응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서 진전을 측정할, 장 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표는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소득 창출"이고, 목적은 "장애인의 구직 접근성 확대", "맞춤 형 직업훈련 제공", "고용서비스 지원"이다. 이 목표의 지표는 "고용 장애인의 소득 향상도"이고, 목적의 지표 는 "장애인 고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훈련생 역량 강화 정도", "소득 획득 훈련생 수"이다. 이들 지표 대부 분은 기간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장애인의 소득 수준, 직업적 역량, 경제활동참가에서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소득 획득 훈련생 수"는 이 사업의 장애포괄적 효과를 좀 더 잘 보여주는, 즉 더 장애 민감한 IT 산업에 취업한 훈련 이수자의 비율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지역 내 장애인의 취업률과 대비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훈련생 역량 강화 정도"는 "훈련생의 평균 학업 성취도(성적)"로 측 정한다고 하는데,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고정된 척도 가 아닌, 자의적인 척도인바, 좀 더 고정된, 그래서 사 업의 효과를 좀 더 비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고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는 그간 장애인에게 불리했던 사안에서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장애 민감한 지표는 아닐 수 있다.	좀 더 장애 민감할 수 있는 '훈련 이수자의 관련 자격증 취득 비율'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것은 실현 가능한가?	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전략은 아웃소싱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협력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사업 종료 후 협력기관과 장애인고용지원센터가 소재한 대학 등으로 사업을 이관할 것인바,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사업 제안 기관이 장애인 관련 단체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국의 파트너 기관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바 장애인 관련 단체로 볼 수 있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협력국 장애인 및 DPO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본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 외에 공여국의 다른 DPO가 추가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하였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사업 제안 기관 및 파트너 기관이 DPO인 경우에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서는 다른 DPO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켰는가?		

사업개요	(사례 10)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 사업: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보 이용을 위한 모바일 앱 포네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 점자·녹음·데이지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포네 업로드, 포네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담당자 교육, 텍스트 입력 및 녹음 단독 자원봉사자 교육, 포네 정보 활용 교육,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옹호를 위한 사업 홍보, 시각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위한 소통 자조모임 등 여러 지원을 수행한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충족 여부	충족 방안
장애분리 통계 등의 수집 및 이용	사업 목표와 유관한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수준의 장애분리 통계 등을 수집했는가?	이 사업과 관련한 핵심적 장애분리 통계는 활성화된 책 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는 비율 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협력국에서 수많은 책들 중 그 내용 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인 점자·녹음·데 이지로 제공되는 것은 극히 일부인바, 당해 장애분리 통 계는 수치화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모바일 인터넷에 있는 정보에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각장애인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도서물의 콘 텐츠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점자/녹음/데 이지)의 파일로 올리면 시각장애인들이 이에 접근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수많은 책들 중 그 내용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 능한 포맷인 점자·녹음·데이지로 제공되는 것은 극 히 일부라 할지라도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 로 제공되고 있는 도서의 개략적인 숫자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도 서가 얼마나 적은지(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도서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보 여줄 수 있는바, 이를 수집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장애분리 통계 등을 기초선 수립과 사업의 근거로 사용했는가?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의 수집과 그에 근거 한 기초선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되는 도서의 숫자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선으로 삼을 수 있다.
니즈 조사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 황과, 이를 충족시키기 고자 하는 사업 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의 관 심과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 업 대상 분석 부분에서 정리했는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책을 읽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구체적으 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관심도 구 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사업 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은 조사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과 본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 로 조사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최종 기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불평 등 요인과 그 해소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든 또는 만 들 수지가 있는 국가적, 지역적, 지방 적 수준의 장애물(태도적·환경 적·제도적 장애물)을 증거에 기	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시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정보 부족”, “시각장애인 정보 활 용 역량 부족”), 이를 초래하는 장애물들(정보 제공 전달 체계 미흡, “서비스 제공 기관의 기술 및 자원 부족”, “시 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 부족”, “보조공학기	시각장애인의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들과 그 불평등한 충족이라는 결과물의 존재에 대해 양적·질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충분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의 장애물들이 장애인의 니즈의 불평 등한 충족을 얼마나, 어떻게 야기하는지, 그리고 제안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중측 여부	중측 방안
	반하여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 개별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니즈의 충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의 문제분석, 목표분석 등에 반영했는가?	기 부족" 등을 문제분석에서 적시하고, 이 장애물들을 해소할 조치들을 목표분석에 반영했다. 다만 장애물의 존재 및 그 부정적 효과를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서술하지는 않았다.	된 조치들이 얼마나,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그 불평등을 완화하는지도 가능한 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논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위험요인 분석	사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사업 프로그램 상의, 또는 사업 조직상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회피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는가?	‘예산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부분에서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것들은 “포네 접속 장애 발생”, “포네 자료 유실”, “매끄럽지 못한 음질로 듣기의 어려움”,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입 자조”, “봉사자 모집 어려움”으로, 앞의 2가지 위험은 장애 민감하지 않다. “매끄럽지 못한 음질로 듣기의 어려움”이라는 위험은 사실 위험이라기보다는 사업이 당연히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시각장애인 이용자 가 입 자조”는 사업 목표 달성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지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아니다. “봉사자 모집 어려움”은 장애 민감한 위험은 아니다.	
지표	장애인에 대한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의 달성에 진전을 측정할, 장애 민감한 지표들을 구축했는가?	PDM 상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 조성”과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이며 전자 목적의 주요 지표는 ‘점자 · 녹음 · 데이터 자료의 이용건수’이고, 후자 목적의 주요 지표는 “포네 이용자 증가율”이다.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된 문서의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것은 그 콘텐츠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같은 장애포괄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포네 이용자 증가율” 또한 포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이나 정보접근권의 향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지표들은 장애 민감한 지표가 아니다.	장애포괄적 사업의 지표는 장애 민감한 지표이어야 한다. 이 사업의 실질적 목표는 활자로 된 서적들에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서적들의 콘텐츠를 최대한 많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서 진척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그 콘텐츠가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된 서적의 숫자이다. 이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을 포맷 변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PDM에 제시된 ‘점자 · 녹음 · 데이터 자료의 이용건수’는 그 지표가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임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

세부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총괄 여부	총괄 방안
지속 가능	사업 종료 후에도 장애포괄적 사업 부분을 유지하는 계획이 있으며, 그 것은 실현 가능한가?	이 사업의 핵심 자원 중의 하나인 서버는 협력국의 파트 너 기관에 넘기는 것으로 지속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서적의 콘텐츠를 변환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사업 제안 기관은 사업 종료 후 협력국 정부의 자원이 이 사업에 투입되도록 유도하 기 위해 협력국 정부 실무자와 교류하고 설득하는 것을 지속 가능 전략으로 제시하고 그러한 설득과 교류를 사 업 내용에 포함시켰다.	
	협력국 또는 협력기관이 사업 기간 내내 사업과 그리고 관련 장애인 권 리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예산 및 인적 자원이 투입된 개별활동(대 정부 사업홍보활동 및 장애인식 개 선, 협력국 장애정책 역량강화 활동 등)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 사업 제안 기관이 DPO이므로 공여국의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협력 국의 파트너 기관도 DPO이다. 사업 목표와 내용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기획에 반 영하지 않았다.	협력국 장애인 및 DPO의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본 사 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다른 DPO를 사업 기획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 제안 기관 외에 공여국의 다른 DPO가 추가로 사업의 기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표와 내용 에 대한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참여	사업의 기획 단계에 공여국과 협력 국의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DPO) 가, 특히 사업 대상 장애인들이 참여 하였는가?	공여국 및 협력국 장애인 및 DPO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토록 하는 조치가 제안서에 없다. 사업 제안 기관 및 파트너 기관이 DPO인 경우에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 에서는 다른 DPO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제안서('범분야 이슈' 부분)에 포함해야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그들이 사업의 모든 단계(실행, 모니 터링,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수반하는 조치를 사업에 포 함시켰는가?		

[별첨 2] 장애주류화 가능성 조사 대상 사업

사업유형	분야	사업명
프로젝트	공공행정	동티모르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UN)
프로젝트	공공행정	라오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젠더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몽골 국가등록업무 시스템 운영지원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방글라데시 IOM 인신매매 통합대응 프로그램
프로젝트	공공행정	방글라데시 사이버안전을 위한 디지털 수사 역량 확산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베트남 팜남성 따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스리랑카 콜롬보시 ICT 기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필리핀 마라위 평화 정착을 위한 이주민 생계지원 사업 (IOM)
프로젝트	공공행정	필리핀 경쟁위원회 사건처리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나이지리아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카메룬 2개주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도미니카공화국 동부 6개주 여성중심 사회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콜롬비아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튀니지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개방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공공행정	키르기스공화국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육	동티모르 아동청소년 스포츠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육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 (UNESCO)
프로젝트	교육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사업
프로젝트	교육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 급식 사업 (WFP)
프로젝트	교육	가나 여성청소년 수학·과학 교육지원 사업
프로젝트	교육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품질관리 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교육	모잠비크 남풀라 및 잠베지아 주 초등교육 형평성 및 질적 개선 사업 (UNICEF)
프로젝트	교육	수단 카르툼 및 게지라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육	에티오피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자 및 교사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육	에티오피아 기술창업 기반조성을 통한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교육	우간다 직무능력기반 직업교육(CBT) 시스템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교육	모로코 직업훈련교사 기술 향상 훈련 허브 센터 설립 사업
프로젝트	교육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제도역량 공고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	교육	요르단 발카대학교 산하 카락 및 이르비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통	미얀마 교량유지보수 역량강화 사업

사업유형	분야	사업명
프로젝트	교통	방글라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
개발건설링	교통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
프로젝트	교통	모잠비크 도로안전 시범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교통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네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라오스 남부 3개주 농촌개발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개발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필리핀 농기계현대화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프로젝트	농림수산	케냐 북동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UN WOMEN)
프로젝트	농림수산	탄자니아 싱기다/신양가 주 여성 및 소녀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 사업 (UNFPA, UNWOMEN)
프로젝트	농림수산	볼리비아 남부지역 소농민 협동조직구축을 통한 시장가치창출 및 식량안보 강화 사업 (WFP)
프로젝트	농림수산	쿠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부지역 식량공급시스템 강화 사업 (WFP)
프로젝트	농림수산	콜롬비아 뿌뿌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 사업 (UNODC)
프로젝트	다분야	라오스 앳따쁘주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프로젝트	보건	캄보디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프로젝트	보건	파키스탄 아동 및 지역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센터 설립 사업
프로젝트	보건	필리핀 지역사회 기반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사업 (WHO)
프로젝트	보건	마다가스카르 남부지역 만성영양실조 개선 사업 (WFP)
프로젝트	보건	말라위 여성 청소년 성적 권리 강화 및 사회적 자립 통합지원 사업 (UNFPA)
프로젝트	보건	수단 주혈흡충(NTD) 유병률 감소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프로젝트	보건	에티오피아 베니상굴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기반 통합 신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 사업 (UNICEF)
프로젝트	보건	우간다 동부 부소가 지역 모자청소년보건시스템 강화사업 (WHO)
프로젝트	보건	DR공고 분쟁취약지역의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통합지원을 통한 평화정착 사업 (UNDP, UNFPA)
프로젝트	보건	DR공고 Kwango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증진 사업
프로젝트	보건	코트디부아르 여성누공 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3차 사업 (UNFPA)
프로젝트	보건	이라크 한-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라오스 남부강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베트남 탕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ILO)

사업유형	분야	사업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에콰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에콰도르 국가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코스타리카 국가표준기관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
프로젝트	산업에너지	요르단 카락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
프로젝트	환경	인도네시아 짜따룽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프로젝트	환경	마다가스카르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UNESCO)
개발건설팅	환경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 사업
민관협력	교육	스리랑카 외팔라지역 광광직업전문교육 사업(2단계)
민관협력	교육	잠비아 총계 동부지역 여아 친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후기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민관협력	교육	캄보디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및 CSO 실무자 역량강화(3단계)
민관협력	교육	캄보디아 바탐병 지역 중학교 학생 중도탈락 감소 사업(3단계)
민관협력	교육	코트디부아르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사업
민관협력	농림수산	라오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종합 양계 프로그램
민관협력	농림수산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극빈층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을 통한 회복력 지원사업
민관협력	다분야	네팔 Dhading District 취약가족 식수위생개선 및 역량강화사업(2단계)
민관협력	다분야	네팔 바주라지역 여아청소년 생리위생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 및 권리증진 사업
민관협력	다분야	몽골 지역문제 자체해결을 위한 자원봉사단 조직화 및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민관협력	다분야	베트남 빈롱성 빈곤가구 소득증대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사업(4단계)
민관협력	다분야	우즈베키스탄 미자출 지구 여성 창취업 역량강화 사업
민관협력	보건	라오스 응오이/비엡캄 지역 기초보건개선사업(3단계)
민관협력	보건	몽골 울란바타르시 결핵접촉자 검진사업
민관협력	보건	방글라데시 바달간즈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성생식보건 사업
민관협력	보건	우간다 굴루주 파티코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민관협력	보건	캄보디아 캄퐁스프 지역 현지 작물 영양보충식을 이용한 통합적 모자보건영양증진 사업(2단계)
민관협력	보건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사회 중심 신생아 감염관리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
민관협력	사회연대 경제	미얀마 뻘따노 지역 돛자리 생산자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시스템 구축 사업
민관협력	사회연대 경제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커피산업의 새로운 주체 발굴을 통한 커피 가치사슬 개선 사업

[별첨 3] 장애주류화가 가능한 사업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공공 행정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젠더기반폭력 희생자 및 생존자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로,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역량과, 젠더기반폭력(GBV)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GBV에 대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인식 및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의 성평등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교육 커리큘럼의 성평등 메시지의 점검, 교육부 및 지자체의 지역사회 동원 역량 개발 등을 실시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남아 및 남성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과 GBV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미디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GBV에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에게 문해교육, 기술훈련 및 직업알선을 실시하고, GBV 피해자를 위한 의료 인력의 조직적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서비스 연계체계에 대한 의료 인력 참여의 강화, 의료 인력에 대한 관련 국가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는 글로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여성은 성과 장애로 인해 이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그 폭력은 가족·이방인·보조인·시설종사자·보건서비스 제공자 등에 의한 가정폭력, 성폭력, 부부강간, 스토킹,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객관적 현황 조사가 없어, 선진국인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지난 일 년 동안 폭력을 당한 장애여성의 비율은 51%로 비장애여성의 해당 비율인 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⁹⁾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여성은 선진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숨겨져서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많고, 유기되어서 시설이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여성이 시설이나 고아원에 갇혀서 세상에서 잊혀질 경우에 인신매매, 강제노동, 성폭력 및 신체적 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다.	장애소녀 등 장애여성이 본 사업의 GBV 예방 프로그램에 비장애성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 할 필요가 있다. - GBV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의 내용에 GBV에 대한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그 이유,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를 도와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GBV 관련 장애여성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감각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GBV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화된 정보, 큰 활자로 된 정보, 지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쓴 정보 등이 감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된 정보이다. - GBV를 보도하는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GBV 피해자 기사를 보도할 때 장애인의 존엄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지침 등을 포함시킨다.

69) 이것은 DAWN_RAFTH Canada의 다음의 웹사이트의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www.dawncanada.net/issues/issues/fact-sheets-2/violence/>

사업 형태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사업 분야	GBV 생존자에 대한 사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기관 및 CSO 등 사법 인력 대상의 사례관리 교육, 성인지적 대안적 분쟁 해결 교육 등을 실시하고, GBV 피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을 위한 사법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GBV 전담 검찰 인력을 구축하고, 법원 내 안전 대기실 및 화장실 등 시설을 설치하며, GBV 생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자조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생존자들의 동료지원, 자조그룹 참여를 위한 기술 지원, 생존자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한 민간단체들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이처럼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폭력 등에 더 노출될 소지가 있음에도,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비장애여성보다 더 적을 소지가 있다. 그 주요 이유는 비로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보다 성폭력 등에 더 취약한 이유인, 사회적 배제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으로 덜 드러나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서, 가령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식 제고 내용은 누락될 소지가 있고, 이는 다시 장애여성의 성폭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또한 그러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이 참여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더라도 인식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저하는 물리적 · 정보적 장애물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다. 정보적 장애물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감각장애(시각 · 청각 장애 등)를 가진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포맷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여성이 이처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비장애여성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한편, 성폭력 대응 프로그램으로는 폭력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관 등에 대한 관련 전문적 훈련, 폭력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거나 피해자의 안전 및 존엄성을 보장하기	GBV 대응 프로그램인 사법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는 GBV 전담 검찰 인력에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고 이들에게 장애여성에 대한 GBV의 특징 및 장애여성의 인권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한다. -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한다. - GBV 의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할 때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한 지침을 신설한다. - GBV 생존자에 대한 사법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장애를 가진 생존자,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자의 법적 능력 행사와 사법에 대한 효과적 접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사례관리 역량 교육 내용에 사례 데이터가 장애는 물론 장애유형으로 분리되어 수집 · 관리될 수 있게 조치한다. 이러한 장애분리 통계는 향후 장애여성에 대한 GBV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프로젝트	극동 행정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공 공 부 문	공 공 부 문		위한 법적 과정 관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이를 돌보고, 지원하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 옹호, 지원 및 카운슬링을 제공하는 무료 전화 핫라인 서비스 프로그램, 무로법을 지원 프로그램, 단기 주거 제공 프로그램,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직업적·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가령, 장애여성 성폭력 예상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성폭력 대응 및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다. 가령, 검찰은 장애를 가진 여성 폭력 피해자의 오랜 사회적 배제 때문에 이들이 당하는 성폭력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건을 부적절하게 조사할 소지가 있으며, 장애여성이 조사 장소 및 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공공 행정	DR공고 분쟁취약지역의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통합지원을 통한 평화정착 사업: 콩고 분쟁취약 지역의 젠더기반폭력(GBV)을 예방하고 피해 여성들에게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평화 정착에 기여할 목표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적 관련 규범의 변화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커뮤니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 및 학부모 등에 GBV 교육을 시킬 교사와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GBV 훈련을 실시하고, GBV 피해자 및 진소년병을 동료교육가로 키우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기반의 GBV 예방, 조기감지, 피해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GBV 피해자 및 여성소년병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원스톱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심리 치료, 법률 지원, 사회복귀 지원을 실시하고, GBV에 대응하는 사법기관과 GBV방지 및 사회복귀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여성 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숨겨져서 학대를 받 는 사례가 많고, 유기되어서 시설이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 는 사례가 많아 성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처럼 장애여성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성폭력 등에 더 노출될 소지가 있음에 도,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폭력 등 폭 력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비장애여성보다 더 적을 소지가 있다.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과 평등하게 본 GBV 에 방 및 통합지원 사업에 접근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사업을 장애주류화 할 필요가 있다. - GBV 예방을 위한 성평등 증진 캠페인 내용에 장애여성의 인권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다. 또한 캠페인에 장애여성이 참여하고 물리 적·정보적으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구축한다. - 교사, 여성단체, GBV 피해자 및 진소년병을 GBV 교육가로 키우는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 여성의 해당 권리에 대한 코스를 포함시킨다. - 장애여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GBV 피해 를 당했을 때 조기감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 여 지역기반의 GBV 조기감지체계 구축에 장애 여성과의 연락망 구축 등을 포함시킨다. - 원스톱센터에 장애여성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해소한다. 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치료 및 법률지원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의사소통을 보조할 인력 및 기구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 -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이루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는 지적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조 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여성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 관에 원활하게 물리적·정보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 고 관련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공공 행정	라오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젠더 역량강화 사업: 여성들의 젠더거버넌스 참여역량,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지도자, 공무원, 여성후보 교육 훈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젠더거버넌스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연구조사팀 및 정책포럼을 운영한다. 여성연수센터(LWTC)와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젠더 통합적 교과과정 개발, 강사 교육, 취·창업 상담인력 교육, 직업 훈련, 취·창업 상담, 창업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며, 여성·아동상담 및 보호 센터(CAPAWAC)와 관련하여, GBV 상담일지의 전산화, 상담·지원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담 교육 및 사례관리 감독, 핫라인 네트워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핫라인 운영, 쉼터거주자 지원, 피해자 지원 차량 운영, GBV 캠페인, 미디어 모니터링,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을 수행한다. 농촌여성 커뮤니티센터 신축, 서틀버스 제공, 센터 교사 및 상담원 훈련, 지방 여성 리더 훈련 등을 수행하며, 여성 농민들의 마을공판장 및 마을카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수행한다.	젠더거버넌스는 새로운 정책, 절차 및 가치를 주입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젠더레짐을 변화시키는 시도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시도는 젠더 관계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중요시하며, 그 시도의에서의 진척은 종종 입법부 및 정당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으로 측정된다. 이 지표로 보면, 여성의 당해 대표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으며, 장애 여성의 대표성은 아주 미미하다. 인천전라 중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테지역의 17개국의 입법부 구성원의 20%가 여성이며, 장애여성은 단 0.1%로(70), 젠더거버넌스에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성이라는 차별사유의 중복으로 인해 비장애여성은 물론 장애인성에 비해 젠더거버넌스를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다. '우즈베키스탄 저작주 미작출 지구 여성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패한 것처럼,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의 요인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	장애여성 훈련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젠더거버넌스 강사진 연수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시킨다. 젠더거버넌스를 통해 장애여성에 대한 복합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 결정 기관에서 장애여성의 대표성은 향상되어야 한다. 본 사업의 젠더거버넌스 교육 대상에, 그리고 정책포럼에 장애여성을 대표하는 장애여성을 포함시킨다. 장애여성이 직업훈련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주류화로서, 먼저 여성연수센터 시설의 개보수 시 그간 미흡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장애를 가진 훈련생을 훈련시킬 때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강사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포함시킨다. 감각장애시각, 청각 장애 등을 가진 훈련생이 강의 내용, 상담 내용 등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또는 점자화된 인쇄물 등)를 제공한다. 장애여성이 GBV 예방·대응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에서 비장애성과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한다.

70) UNESCAP, 장애포괄적 아·태지역사회 건설: 인천전략 상반기 이행 평가, 2018, p.42.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훈련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학습자료, 교습 및 훈련 기자재 등이 있다.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장애여성은 성과 장애로 인해 이중적 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서 장애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숨겨져 서 학대를 받는 사례가 많고, 유기되어서 시설이 나 고아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임신때매 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성폭력 등 폭력의 피해자가 될 소지가 크다. 이처럼 장애여성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성폭력 등에 더 노출될 소지가 있을에도,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 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논의한 것처럼, 성폭 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수혜자가 될 가 능성이 비장애여성보다 더 적을 소지가 있다.	- GBV 예방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강사 양성 교 육 내용에, 그리고 상담 인력 교육 내용에 GBV 에 대한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그 이유,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를 도와 사법기관에 피해 사 실을 신고하는 것, GBV 관련 장애여성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GBV 캠페인을 실시할 때, 캠페인으로 제공되 는 정보를 감각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화된 정보, 큰 활자로 된 정 보, 지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쓰 으로 된 정보이다. - GBV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 할 때 장애를 가진 GBV 피해자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지 모니터 링을 한다. - GBV 피해자 서비스를 만들 때 장애인 편의시설 을 충분히 설치하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쉽 터에서 비장애성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상담 ·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데이터가 장 애로 분리될 수 있게 조치한다. 이러한 장애분 리 통계는 향후 장애여성에 대한 GBV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공공 행정	방글라데시 통합적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제도 강화 프로젝트: 인신매매에 대해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한 통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원칙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등록, 수사, 기소 등을 위한 센터 중심의 표준운영절차(SOP)를 개발하고, 판검사, 경찰 등 수사관 대상의 인신매매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에 인신매매 정책 및 법에 관한 교과정을 개설하고, 인신매매 사건의 효과적 기소를 위한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지원하고, 인신매매 사건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및 NGO 운영의 쉼터와 서비스센터 직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쉼터를 신설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해 직업훈련, 직업 소개 서비스, 소득창출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줄이는 안전한 이주 준비 방안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실시하며, 잠재적 이주자의 인신매매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고용관리사무소(DEMO)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은, 특히 장애여성은 타인들보다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하고 이주하는 장애여성은 더욱 더 취약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필수적인 지원, 보호 및 사회복귀 서비스가 장애여성에게는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여성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장애여성들이 서비스에 물리적 으로, 정보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이 인신매매 위험성에 비장애여성보다 더 취약한 이유로는⁷¹⁾, 먼저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성)교육이 없고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서 인신매매의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 피해자가 인신매매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모르는 것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주요 요인이다. 장애여성들이 수용 시설에 고립되어 있는 것도 학대와 인신매매의 위험을 높인다. 가령, 시설 내 자원의 결여, 시설에서 벗어나고픈 욕구 등은 장애여성을 인신매매의 표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차별에서 비롯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고립과 양호한 대인관계의 부족은 장애여성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뜨린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인신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됨에도 여러 장애물로 인해 관련 서비스와 사법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바, 그러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 -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센터 중심의 표준운영절차에 장애여성의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절차를 포함시킨다. 특히 인신매매의 주요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의 경우에 피해자 식별 및 조사 등이 장애를 고려하여 비장애 피해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 - 판검사 대상의 인신매매 관련 교육 커리큘럼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법적 능력, 장애 여성과 인신매매의 관련성, 장애여성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조치(정당한 편의 제공 등)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 사건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데이터가 장애로 분리될 수 있게 조치한다. 이러한 장애분리 통계는 향후 장애여성의 인신매매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를 만들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쉼터에서 비장애여성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쉼터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에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존엄

71) Women Enabled International, Submission by Women Enabled International and Disability Rights International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its elaboration of a General Recommendation on Trafficking in Women and Girls in the Context of Global Migration, Feb. 14, 2019,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인신매매범은 장애여성의 친구나 파트너로 행세하면서 장애여성을 착취한다. 장애여성은 도움을 구하고 사법기관에 접근하는 데 법적, 태도적, 경제적, 물리적, 정보적 장애물에 직면함으로써 인신매매 위험에 더 많이 처한다. 법적 장애물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사리 분별력이 없다고 여기는 법적 견해 등을 포함한다. 가족 구성원 및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비롯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는 장애물도 장애여성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는다. 경제적 장애물은 장애여성이 변호사 비용, 교통비, 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도움 및 사법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 특히 경제적 장애물은 이주하는 장애여성에게는 더욱 힘든 장애물이다.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해 물리적으로 또는 정보적으로 관련 서비스와 사법체계에 접근하기 어렵다. 장애여성은 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 때문에 교육과 고용에 접근할 기회에서 심각한 제약이 있고, 그 결과 빈곤에 놓이는데, 고용에 대한 니즈, 노동시장 참여 경험의 부족 등은 장애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할 소지를 높인다. 장애여성의 인신매매는 종종 고용의 기회로 포장된다. 한편, 이주 기간 동안 장애여성은 환경의 변화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심각한 장애물을 경험하고, 이는 그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을 높인다. 장애여성은 이주 관련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성을 존중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장애여성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킨다.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에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직업훈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필요시 직업재활 차원의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 이주 기간 동안 가중되는 장애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이주 방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의 내용에 장애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관련성에 관한 것을 포함시킨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민간 협력 사업	사업 분야	우즈베키스탄 자카주 미자출 지구 여성 취 · 창업 역량강화 사업: 지역 내 여성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여성 취 · 창업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체계 구축과 강사진 연수를 지원하여 센터를 개설하고, 센터가 지역 여성들에게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고, 여성 창업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인식증진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교육 및 훈련은 적절한 소득을 얻기 위한 생산적이고 양질의 직업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허나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비장애 젊은이들에 비해 정규 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다. 51개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52.8%, 19.6%로, 이는 각각 64.9%인 비장애남성과 29.9%인 비장애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 ⁷²⁾ 정규 교육이 아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관련 장애분리 통계는 거의 없으나 직업훈련과 고용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의, 특히 장애여성의 참여율은 역시 매우 낮을 것이다. 그 낮은 참여의 요인은 정규 교육에 대한 장애여성의 낮은 참여의 요인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 장애물로, 직업훈련시설에 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직업훈련시설과 훈련 기자재의 이용에서의 물리적 장애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장애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고 직업훈련시설도 그들을 받기를 꺼릴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또는 편견일 것이다.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나아가 취 · 창업 기회에 대한 장애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 장애여성의 노동 역량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고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여성을 직업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쿼터제(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 상자 선발 공고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시설을 취 · 창업 지원센터로 개조할 때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과 같이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신발된 장애여성의 장애를 고려하여 훈련설비 등 기자재를 개조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강사진 연수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72) WHO/World Bank, World Report on Disability, 2011, p.237.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민간 협력 사업	다문화		가장 부정적인 편견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⁷³⁾ , 이로 인해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을 받기를 꺼리고 장애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다. 장애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직업적·교육적 편견 때문에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접근에서 추가적인 장애물에 직면한다.	
프로젝트	교육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제도역량 강화 공고화 지원사업: 양질의 일자리에 필요한 직업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SDGs 4.5) 것을 목표로, 직업훈련센터의 건물, 훈련장비 등을 제공하여 센터를 설립하고, 자격 제도·규정·매뉴얼을 개발을 지원하며, 교사 훈련센터의 시설 및 장비, 훈련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제공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교사 훈련을 실시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우즈베키스탄 지각주 미지출 지구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사업'에서 실패본 것처럼,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비장애 젊은이들에 비해 정규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엔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중등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장애아동의 비율은 비장애아동보다 46%나 적다. ⁷⁴⁾ 또한 특수학교 졸업자는 일반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그들과 달리 직업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의 입학이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는 더욱 제한된다. ⁷⁵⁾	SDGs 세부목표 4.5는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훈련에 상당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과 같은 직업훈련의 물적·인적 인프라 및 제도를 구축하는 사업에서 가능한 한 장애주류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직업훈련원 훈련 대상으로 우선선발하는 쿼터제(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원 지원 요건 중 학력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기령 우즈베키스탄에서처럼 같은 중등교육 수료자임에도 특수학교 수료자라는 이유로 해당 장애인이 직업훈련원에 지원하지 못할 경우, 직업훈련원의 규정을 보완하도록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다.

73) 상기 책, p.240.

74) United Nation(Uzbekistan), Situation Analysis on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n Uzbekistan: Brief Report, 2019, p.46.
http://www.un.uz/files/UN%20Brief%20Report%20Disabilities/Brief_report_UN_en_UNColor.pdf 참조.

75) 위글, p.49.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오르단 발카전문대학교 카락 및 이르비드 캠퍼스 시정기반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 사업: 노동 시장 수요에 부합한 양질의 테크니션 양성을 통해 오르단 청소년 취업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개 전문대학에 실습실 등을 포함한 건물을 신·개축하고, 교육훈련 기자재를 지원하고, 9개 과정 커리큘럼 및 실습교재 개발을 지원하며, 초청연수 등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관리자 및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지각주 미지출 지구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패본 것처럼,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비장애 젊은이들에 비해 정규교육이나 기술 습득의 기회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은 직업기술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한다. 그 장애물로 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 훈련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강의 및 학습자료의 내용에 대해 감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정보적 장애물 등이 있다.	그밖에 직업훈련원 시설에 장애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를 가진 훈련생이 장애로 인해 훈련장비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훈련장비를 개조하는 것을 직원훈련원 규정에 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애주류화에 해당한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 대학 내 직업기술훈련 시설에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신·개축하는 실습실 등 건물에 장애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장애학생이 실습 기자재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할 경우 기자재를 개조한다. - 감각장애를 가진 학생이 훈련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사업 대상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그들에 대한 입학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을 적극적 조치에 입각하여 입학을 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프로젝트	교육	아프가니스탄 UNESCO 아프간 TVET 선도모델 구축사업: 선도적인 국가직업훈련센터(NCE)의 구축을 통해 양질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NCE의 관리 역량과 NCE 관련 정부 부처인 노동사회개발부의 직업훈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NCE의	'우즈베키스탄 지각주 미지출 지구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실패본 것처럼,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비장애 젊은이들에 비해 정규교육이나 직업기술 습득의 기회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은 직업기술 습득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 사업은 선도적인 NCE를 구축하는 것인바, 직업훈련 및 고용에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장애인을 고려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모범적으로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먼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NCE 훈련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훈련생이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훈련과정, 기자재 및 조직을 혁신하고 훈련과정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직업훈련 교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기업과 훈련생 간의 매칭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취업률 및 창업률을 제고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자 할 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즉, 직업기술훈련기관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소지가 있고,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로 인해 접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할 소지가 있다.	훈련 기자재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할 경우 기자재를 개조하는 조치를 취한다. 또한 각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이 훈련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동사회개발부 담당자의 초청연수 내용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향후 장애인 고용 촉진에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산업 에너지 지	에라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 키토 창업지원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목표로, 창업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센터의 시제품 제작용 기자재를 지원하고, 창업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운영을 지원하며, 센터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률이 상당히 낮으며,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된다. 그러나 장애인은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를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할 소지가 있다. 즉, 지원기관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소지가 있고, 창업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장애로 인해 접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할 소지가 있다.	장애인이 혁신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혁신센터를 건립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기능하다면 시제품 제작용 기자재 등을 개조한다. - 감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혁신센터의 교육과 상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정보를 제공한다. - 장애인이 혁신센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센터 담당자가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 센터 역량강화 사업: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기술기반 창업 접근성을 확대하여 우즈베크 내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에라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고용률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중요	장애인이 창업촉진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촉진센터를 설립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며, 창업 지원 포털을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며, 창업 관련 정책 및 법률 연구하고, 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연수 등을 통해 센터 인력과 창업멘토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창업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개별 활동을 수행한다.	한 소독 창출의 기회가 된다. 하나 장애인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소지가 있다.	- 창업촉진센터를 건립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장애인이 센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가능한다면 창업 기자재를 개조한다. - 감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창업촉진센터의 교육과 상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에 관한 사항들을 센터 운영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센터 인력 및 창업멘토 대상 교육 내용에도 포함시킨다. - 창업 지원 포털을 구축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때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보장한다. - 장애인이 창업촉진센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센터 담당자가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프로젝트	교육	에티오피아 기술창업 기반조성을 통한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 ICT에 기반한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기술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워크숍을 통해 창업지원 생태계의 제도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ICT 혁신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기자재 지원, 센터 운영 계획 수립, 센터 역량강화 등을 실시하고, 혁신센터 ICT 기반 임주기업 선발, 창업 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ICT 기반 중소기업 선발 및 성장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창업지원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	‘에피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사업에 필요한 금융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장애인들은 담보가 없어 대출받기가 어렵고,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을 때문에 이들에게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 장애인이 혁신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다 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 혁신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가능다면 시제품 제작용 기자재 등을 개조한다. - 감각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혁신센터의 교육과 상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고, 기술기반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창업 지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IT 플랫폼을 구축하며, 창업자금을 운영하고 대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포맷의 정보를 제공한다. - 장애인이 혁신센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때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이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창업자금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민관 협력	다문화	베트남 빈롱성 빈곤가구 소득증대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사업: 지역의 빈곤가구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정부의 관련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금 지원, 대출자 대상 기초 경제교육, 사업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지역정부 담당자 대상 전산시스템 활용 교육, 자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기관관리 역량강화 교육, 시장 인프라 리모델링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장애는 빈곤 감소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데이터는 장애와 빈곤, 특히 장애와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간에 연관성을 보여준다. 장애는 낮은 교육 수준, 낮은 고용률, 높은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매우 다차원적인 빈곤과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 데이터는 장애와 경제적 빈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체계적인 제도적·물리적·태도적 장애물들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기 때문에 장애는 빈곤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는 그로 인한 추가적 비용 때문에 장애인을 빈곤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⁷⁶⁾ 한편, 장애인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인해 고용되기 어려우나, 소규모 창업은 소득을 얻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다. 장애인들의 이와 같은 니즈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로 인해 사업 자금 대출 시	장애인이 소상공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될 수 있다. - 장애를 가진 상인이 장애를 이유로 소액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기관관리 규약에 규정하고 기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에 장애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기관 관리 및 운영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기관관리위원회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 대출자 대상 기초 경제교육에 장애인들이 물리적·태도적·정보적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곳을 교육 장소로 선정하고, 장애인 인허가·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76) Governance · Social Development · Humanitarian · Conflict(GSDRC), Disability Inclusion, Topic Guide, November 2015, pp. 12~13, GSDRC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gsdrc.org/wp-content/uploads/2015/11/DisabilityInclusion.pdf>.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비스를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소상공)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가장 큰 태도적 장애물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장애인에게 대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프로젝트	산업 에너지	ILIO를 통한 인도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특히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창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청연수를 통해 공무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국제네트워킹 포럼을 개최하며, 한-인 중소기업 협력 강화를 연구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에라도르 키토시 혁신센터 건립을 통한 창업 및 기업혁신 지원체계 강화사업'에서 실패한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때문에 고용률이 낮은 장애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소득 창출의 기회가 된다. 하나 장애인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소지가 있다.	본 사업의 개별활동 중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훈련 실시에서 장애인이 창업 훈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창업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훈련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장애인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가능할 경우 기자재를 개조한다. 감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이 훈련과 상담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및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보조나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이 창업 훈련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를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동 사업은 "인도 청년층, 특히 취약계층의 취업역량 향상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 협력	교육	캄보디아 바탐방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3단계): 중학교 중도탈락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교지원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의 학급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며, 자녀 학업 지원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진학률과 졸업률은 매우 낮고, 유급률은 매우 높다. 51개국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 연령을 통틀어 초등학교를 마친 장애남성과 비장애남성의 비율은 50.6%와 61.3%이고,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비율은 52.9%와 41.7%이다. 평균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이 중학교를 중퇴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 사업의 개별활동을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할 수 있다. - 학교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의 보호자를 참여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개별화활동을 수행한다.	교육 년수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낮다(남성의 경우, 각각 5.98년, 7.03년이고, 여성의 경우, 각각 4.98년, 6.26년). ⁷⁷⁾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 장애 물은 여러 가지다 ⁷⁸⁾ . 장애아동의 교육을 증진하 기 위한 입법이나 정책의 미비, 예산 부족과 ⁷⁹⁾ 같은 국가 제도 차원의 장애물이 있다. 학교 차원 의 장애물로는 장애아동에게 부적절한 학습자 료나 교수법,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 사 훈련의 부족, 장애아동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아동의 등하교 상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신 지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정적 태도, 장애아동 에 대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등이 있다.	시킴으로써 위원회가 학교 자원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장애아동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한다. - 자녀 학업 자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증진 교 육 내용에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 시킨다. -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할 때 장애학생가정의 장애로 인한 추 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가정을 우선 지 원한다. -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상담자는 장애 학생의 교육 니즈에 관해 지식이 있는 사람으 로 정한다.
민간 협력	교육	코트디부아르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사 업: 학교 밖 청소년의 취·창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훈련생을 선발하여 사전직무훈련 (work readiness)과 직업기술 및 창업 교육을 실 시하고, 취·창업 관련 코칭 및 멘토링을 지원하 며,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활동 과 여성 및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을 지원하는 개별화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캄보디아 바탐방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 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 ⁸⁰⁾ 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중등학교 진학을 및 졸업률이 낮으며, 이는 장애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보다 학교 밖 청소년인 비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관련 장애물과 통계는 거의 없으나 교육과 직업훈련의 유사성, 그리고 직업훈련과 고용의	장애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학교 중도 탈락률이 더 높고 또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청소년을 직업훈련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적극적 우 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식제고 활동에 장애인식 개선 활동을 포함시킨다. 장애를 가진 훈련생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훈련 기자재나 설비 등

77) WHO/World Bank, 상기 책, p. 206.
 78) 상기 책, pp. 212~216.
 79) 한 명의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명의 비장애아동의 교육 비용의 1.9배이다. 상기 책 p. 214.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청소년의 참여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의 요인으로는 상기 다른 사업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훈련시설 및 설비의 물리적 장애물, 강의와 학습자료의 내용에 대해 감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정보적 장애물 등이 있다.	을 개조 또는 조정하고, 감각장애를 가진 훈련생이 훈련과 취·창업 관련 코칭 및 멘토링에서 소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조치를 취한다.
프로젝트	교육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사업: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해 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검정고시를 위한 기본교과 교육, 기본생활 교육, 정서적 지원 등을 실시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기업 탐방, 직업기술 취득을 위한 심화과정, 실습과 취업의 연계 등을 위한 단기 작업장 학교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및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고, 청소년 정책 분야 공무원 및 지도자, 교과지도 교사 및 직업훈련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며, 사회교육센터 등 시설을 신·개축하고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캄보디아 버팀병 학교 역량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학교 밖 청소년인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청소년의 참여율은 비장애청소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다. 장애청소년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학교 차원의 요인으로는 장애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학습자료나 교습법, 장애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훈련의 부족, 장애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심지어는 장애청소년 부모의 부정적 태도, 장애청소년에 대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등이 있다. 한편, 장애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은 요인으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훈련시설의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청소년이 본 사업의 기본교과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에 비장애청소년과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교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센터 등 건물에 장애청소년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감각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교육 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또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 대상의 역량강화 훈련에 장애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한편,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년과 동등하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태도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물리적 장애물,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학습자료, 교습 및 훈련 기자재 등이 있다.	장애주류화 조치는 상기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와 거의 동 일하다.
민관 협력		우간다 굴루주 파티코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 지역 식수위생 환경 개선으로 수인성질병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장 난 식수시설을 수리하고 새 식수시설을 설치하며, 마을보건 인력, 교사 등의 보건위생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위생시설을 설치하며, 학생 주도 보건위생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1억천만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양호한 WASH(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⁸⁰⁾ 장애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WASH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일관된 현상이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WASH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은 그들의 보건, 교육, 노동, 생계 및 기타 지역사회 참여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⁸¹⁾ 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UNICEF는 학교의 WASH 프로그램이 효과적 이려면 장애아동들의 넓은 범위의 관련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 설계에 따라 화장실, 세면대 등 WASH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⁸²⁾	학교 WASH 시설에 대한 장애아동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WASH 시설을 장애아동들의 넓은 범위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위 보편적 설계에 입각하여 설치하고, 그 설계에 장애아동들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 할 수 있다.

80) UNICEF, WASH Factsheets, FS/01/2018,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files/UNICEF_Advocating_for_investment_in_accessible_and_inclusive_WASH_Factsheet\(1\).pdf](https://www.unicef.org/disabilities/files/UNICEF_Advocating_for_investment_in_accessible_and_inclusive_WASH_Factsheet(1).pdf) 참조.

81) 상기 문건 참조.

82)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index_65839.html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네팔 Dhading District 취약가족 식수위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깨끗한 식수 공급 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 여성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식수시설 6개소 설치, 기정 내 식수대 설치, 식수관리위원회 및 위생교육클럽 운영과 역량강화, 위생교육 및 캠페인, 여성청결 교육 등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우간다 글루주 파티코지역 식수위생개선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WASH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며, 이는 장애인의 다른 여러 권리들을 실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 식수의 조달을 책임지는 여성들은 식수시설이 부족하거나 멀리 있거나 또는 위생적이지 못하여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애 여성은 장애로 인해 비장애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처한다. 지체장애 등을 가진 여성이 식수를 나르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먼 거리에 있는 식수 시설과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게 설치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식수시설은 그러한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다. 한편, 여성청결관리는 즉 생리위생관리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장애 여성에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장애 여성은 성과 관련된 생리위생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 여성은 스스로 성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몸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으로, 이는 장애 여성은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생리위생관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게 만들고, 그 결과 장애 여성은 장애 여성에게 특정한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장애 여성이 감각장애나 지적장애로 인해 생리위생관리 교육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장애 여성이 비장애 여성과 동등하게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를 할 필요가 있다. - 먼 거리의 식수원에서 식수를 나르기 어려운 지체장애 등을 가진 여성들에게 우선적으로 기정 내 식수대를 설치한다. - 모든 식수시설은 장애로 인한 물리적인 이용상의 어려움이 없게 장애 여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장애 여성이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식수시설을 설계한다. - 식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장애 여성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식수관리위원회에 장애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시킨다. - 장애 여성들이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생리위생교육 내용에 장애와 생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 내용에 장애 여성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그리고 지적 장애 여성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사업 협력 기관	사업 분야	다 분야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그리고 WASH 시설이 장애여성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장애여성은 자신의 생리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⁸³⁾	
민관 협력	다문화	네팔 바주라지역 여아청소년 생리위생관리 개선을 통한 건강 및 권리증진 사업: 여아청소년의 생리위생관리 개선을 통해 그들의 건강 및 권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및 보건소 화장실의 생리위생관리 친화적인 신·개축, 생리위생품 제공, 교내 여성 휴게 공간 마련 등을 실시하고, 생리위생관리 인식개선 교육 자료 개발, 보건인력 및 교사 대상 교육, 여아청소년 대상 생리위생관리 교육 및 물품 제공 등을 실시하며, 전통 치료사 및 지역주민 대상 생리위생관리 인식 변화 간담회 및 캠페인 실시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네팔 Dhading District 취약가족 식수생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생리위생관리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장애여성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여성은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장애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장애여성은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적 편견은 생리위생관리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게 만들고, 그 결과 장애여성은 장애 특정한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어렵다. 또한 장애여성이 감각장애나 지적장애로 인해 생리위생관리 교육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리고 WASH 시설이 장애여성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설치되어 장애여성은 시설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리위생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애 여아청소년이 비장애 여아청소년과 동등하게 생리위생을 관리하고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 여아청소년들이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생리위생관리 교육 자료에 장애와 생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 내용에 장애 여아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여아청소년을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또한 생리위생관리에 친화적인 화장실 등 WASH 시설을 신·개축할 때 장애 여아청소년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보편적 설계를 적용한다.

83) Menstrual Hygiene Day의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s://menstrualhygieneday.org/managing-menstruation-for-women-and-girls-with-disabilities/>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민관 협력	교육	잠비아 총재 동부지역 여아 친화적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후기 중등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 후기 중등학교 환경 개선 및 여아의 여성 및 아동 권리 옹호 등을 통하여 졸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 학교시설의 건축, 교육 기자재책상, 결상 등) 제공, 식수시설 설치, 여학생 대상 위생시설 설치, 여학생 기숙시설 건립 등을 수행하며, 아동권리 및 성 인지 교육, 교사 대상의 아동권리 및 상담역량 강화 교육, 학생 대상 상담, 교육권 및 조혼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캄보디아 비티명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청소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중등학교 진학을 및 졸업률이 낮다. 특히 장애소녀의 진학을 및 졸업률은 차별사유인 장애와 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낮다. 장애소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여러 가지이다. 학교 차원의 장애물로는 장애소녀에게 부적절한 학습자료나 교습법, 장애소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훈련의 부족, 장애소녀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심지어는 장애소녀 부모의 부정적 태도, 장애소녀에 대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등이 있다. 장애소녀이 장애로 인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학교시설에는 WASH 설비 등도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소녀는 WASH 및 생리위생관리에 대한 니즈가 비장애 소녀의 니즈와 기본적으로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리적 장애물이나 태도적 장애물로 인해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에 직면한다.	장애소녀가 비장애소녀와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 기숙사를 포함한 학교시설에 장애소녀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책상, 결상 등도 장애소녀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한 것을 제공하거나 장애소녀에게 맞게 만든 개작된 것을 제공한다. - WASH 시설은 장애소녀가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보편적 설계에 입각하여 그리고 장애소녀의 생리위생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권리 및 성인지 교육 내용에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도 포함시킨다. - 학생 대상 상담을 하는 교사는 장애소녀의 권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로 정한다.
프로젝트	보건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 지역주민들의 보건지표를 향상시키고, 생생보건 및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모자보건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향상시켜 그 이용률을 높이고,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일차보건	장애여성들은 비장애여성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그리고 추가적인 생생보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생생보건은 그 제공자는 물론 장애인 공동체에 의해 간과된다. 그 결과, 장애여성들은 당해 서비스에 가장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이 된다. 그것은 주로 사회적 관심, 관련 법적 보호, 이해 및 지원 등이 부족함 탓	생생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할 수 있다. 그 개별활동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물리적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건소에 오는 데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보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의료의 책무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적용하며, 보건의료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으로, 장애여성들은 성생식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신체와 관련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경향이 있다. 집단으로서 장애여성은 HIV/AIDS 및 성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라 할 높은 빈곤율, 높은 문맹률, 보건 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여, 좀 더 안전한 섹스를 협상해낼 권한의 부족에 직면한다. 장애여성은 성생식보건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많은 장애물에 직면한다. 그 중 하나는 장애인은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따라서 성생식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보건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 장애 관련 진료 서비스의 결여, 차별과 편견도 주요 장애물이다.⁸⁴⁾	건소 시설의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장애여성에게 맞게 개조된 진료대 등을 구비한다. - 서비스에 대한 정보(진료 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의 정보 포함)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점자로 되거나, 큰 활자로 된 인쇄물을 제공하거나,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 장애여성의 성생식보건 니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관련 지식 및 기술을 증진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보건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84)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니즈와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불평등한 접근과 그 이유는 WHO, Promo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UNFPA Guidance Note, pp.5~7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보건	우간다 동부 부수가 지역 모자청소년 보건시스템 강화 사업: 사업 대상 지역에서 양질의 성생식 · 모자 · 청소년 보건(RMNCAH)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보건공무원 대상 보건행정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보건시설에 물, 전력, 냉장 시스템, 혈액계, 구급차 등을 조달하고, 보건센터 시설을 보수하며,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RMNCAH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시설의 보건정보 관리 시스템 운용의 효율화를 실시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성생식 보건 및 권리와 청소년 피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화동을 수행한다.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포함하여 성 관련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장애여성은 성생식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신체와 관련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경향이 있고, 안전한 체스를 협상해낼 권한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장애여성은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 · 물리적 · 정보적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먼저, 장애여성은 장애인으로서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따라서 성생식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기질 경우 서비스에 대한 장애여성의 접근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설(보건 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애여성은 서비스를 이용에서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하며, 장애여성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진료 및 의료 기기도 물리적 장애물이 된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은 진료 및 치료 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래서 진료 및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정보적 장애물에 직면하기도 한다. 한편 장애여성은 모자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때도 그러한 물리적 · 정보적 장애물에 직면한다.	장애여성이 성생식 · 모자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인력 대상의 RMNCAH 관련 교육의 내용에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장애여성의 성생식 보건권 등 관련 권리에 대한 내용과 장애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시킨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시킨다. - 보건센터 시설을 개보수할 때 기능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 교사 대상의 성생식보건과 청소년 피임에 관한 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성생식보건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민관 협력	사업 분야	방글라데시 발달장애 지역사회사회기반 청소년 성 생식보건 사업: 지역 청소년의 성생식 건강을 증 진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청소년, 성인 남성 및 남성 청소년,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성생식보 건, 성인지 감수성 교육, 조혼 방지 교육 등을 실 시하고, 여성 청소년(장애소녀) 성생식보건 자 조집단 등 유관 집단 활동을 지원하며, 보건인력 을 대상으로 성생식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하고, 청소년 성생식보건센터를 구축하며, 취약 계층 기혼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관리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소녀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은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성생식보건은 그 제 공자는 물론 장애인 공동체에 의해서도 간과되 고, 그 결과, 장애여성은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사업이 집중하는 성생식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 경우, 장애여성 들은 성생식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자신들의 신체와 관련 권리에 관한 기 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이 기 본적인 관련 정보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를 중 하나는 장애인은 성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며 따라서 성생식보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또한 물리적 장애물, 장애 관 련 진료 서비스의 결여, 차별과 편견도 주요 장애 물이다. 한편, 성생식보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보건시설에서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받는 과정 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핵심인 성생식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장애소녀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것들을 해소하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킴 으로써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할 수 있다. 가령, 장애소녀에 대한 성생식보건 교육 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각장애를 소녀들이 교육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정보적 장벽을 제거하 기 위해 점자로 되거나, 큰 활자로 된 인쇄물을 제공하거나,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교육 장 소가 장애소녀의 물리적 접근을 저해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성생식보건 교육강사들에 대해 사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활동이 장애인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 치한다. 보건인력 대상의 성생식보건 역량강화 교육의 경우에,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여성을 치 료하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보건시설과 새로 구축하는 성생식보건센 터는 장애여성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물 리적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진료 및 치료 기기도 장애여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마지막 으로, 장애소녀가 성생식보건 자조집단에 자유 롭게 참여하여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 장애주류화 조치다.
프로 젝트	보건	말라위 여성 청소년 성적 권리 강화 및 사회적 자립 통합지원사업: 여성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 화하고, 성생식보건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캄보디아 비티병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청소 년은 비장애청소년보다 중등학교 진학을 및 졸 업률이 낮으며, 이는 장애청소년이 비장애청소 년보다 학교 밖 청소년인 비율이 더 높음을 의미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소지가 그 어느 집단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멘토링 및 재입학 지원 시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 년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하는 장애주류 화 조치를 실시한다. 단, 이들 부모들이 자신의 장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멘토링, 10대 엄마 대상 임신·양육 교육, 학교 밖 여성의 문해·산술 교육 및 재입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업학교 교육, 마을 종자돈 지원, 경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아의 교육권 옹호, 조혼 예방, 여아 차별금지, 성평등 및 성생식보건권 옹호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며, 청소년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젠더기반(성)폭력 원스톱 센터 지원, 누공 환자 치료, 생리대 제작 및 판매, 청소년 이용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한다. 나이가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 비장애여성 청소년보다 그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교육과 직업훈련의 유사성, 그리고 직업훈련과 고용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청소년의,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의 참여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의 요인은 상기 다른 사업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훈련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학습자료, 교습 및 훈련 기자재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상기 부정적 태도와 중첩 작용하는 여성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의 직업훈련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펠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소녀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더 많은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을 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성생식보건은 그제 공자는 물론 장애인 공동체에 의해서도 간과되고, 그 결과, 장애여성은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심지어는 성생식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의 접근에서조차 어려움이 있다.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해 청소년들을 돕기는 경향이 있는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의 교육권 및 성생식보건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여아의 교육권과 성생식보건권을 옹호하는 지역사회 캠페인 및 교육의 내용에 장애여성의 교육권 및 성생식보건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직업훈련 및 고용의 기회에 대한 장애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을 농업학교 및 고교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고 그들이 농업학교의 시설 및 교육 내용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보다(성)폭력에 노출될 수지가 훨씬 더 크되 폭력 예방 및 대응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스톱 센터의 상담인력을 교육시킬 때 그 내용에 성폭력에 대한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그 이유,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 사법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 성폭력 관련 장애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대면상담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모잠비크 UNICEF 남폴라 및 잠베지아 주 초등 교육 형평성 및 질적 개선 사업: 공평한 교육 기회를 통해 초등학생, 특히 여학생의 기본 문해력·수리력과 졸업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의 역량강화, 학습교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젠더 포컬 포인트 지정 및 훈련, 학내 젠더 주류화 모임의 조직화, 여학생 대상 지역 의례 근절, 지역사회 체더 의식 제고, 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학교위원회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보고 체계 마련 등을 실행하고, 학업 성취도 평가 및 기술 지원, 학교장 연수, 장학사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며, 식수·위생시설 디자인 및 설치, 위생에 대한 교사 연수, 학교 내 월경위생관리 체더 및 보건 포컬 포인트 지정 및 훈련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비장애여성보다 더 적을 소지가 있다.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졸업을 저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 -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내용에 장애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포함시킨다. - 정보 전달용 학습교구인 경우, 감각장애(시각, 청각 장애 등)를 가진 아동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로 사용하는 학습교구의 경우, 장애아동이 물리적으로 접근·이용할 수 있게 개조하는 등, 학습교구 사용 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 학대, 폭력 등은 장애아동의 등교를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인바, 학교폭력 예방 및 보고 체계에 있어 장애아동의 관련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시키고, 교사들이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여 폭력 피해 징후를 감지하여 대응하게 하고, 장애아동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등의 내용을 학교폭력 보고 체계에 포함시킨다. - 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학교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사 등을 포함시켜 장애아동의 이탈 방지책 수립 및 이행 시 장애를 고려하게 한다.
프로젝트	교육		‘캄보디아 바티람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초·중등학교 진학률과 졸업률은 매우 낮고, 유급률은 매우 높다. 초·중등학교 졸업률의 경우, 특히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 장애남성, 비장애남성 중 가장 낮다. 평균 교육 연수도 마찬가지로 낮다. 장애아동, 특히 장애여아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많은데, 학교차원의 장애물로는 장애아동에게 부적절한 학습자료나 교습법,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훈련의 부족, 장애아동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아동의 등교 상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심지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정적 태도,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등이 있다. 특히 장애여아에게는 여성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총합하여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우간다 골루주 파티코지역 식수위생개선사업’에서 봤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WASH에 접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WASH 시설이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WASH 시설에 대한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WASH 시설을 장애인들의 넓은 범위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위 보편적 설계에 입각하여 설치한다.
프로젝트	보건	에티오피아 베니상갈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 기반 통합 산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 사업(UNICEF): 해당 지역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관리요원(HEW) 대상의 통합커뮤니티사례 관리(ICCM) 기술 교육, 의료진 대상의 영유아 질병 통합관리(MNC) 기술 및 기초 응급 산모 및 신생아 관리(BEmONC) 교육, 산모 및 영유아 관리 교육, 질환이 있는 영유아 및 산후관리를 위한 전문시스템 강화 등을 통하여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대하고, 유목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역민들에 대한 HEW의 지원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일차의료 수준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며, 모자보건 정책에 대한 정부 의사결정자 대상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정부의 모자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기반의 거버넌스를 증진시키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산모를 포함하여 장애여성들은 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성생식보건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의 어려움 등 때문에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한편, 장애를 가진 산모가 높은 영유아의 사망률이 비장애 산모보다 높다는 통계는 없지만 ⁸⁵⁾ , 활체어를 사용하는 산모의 경우에 혈전이 생기거나 호흡기 손상이 있는 산모에게는 폐렴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자연유산, 조산 및 저체중 신생아의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⁸⁶⁾ 따라서 의료진이 장애를 가진 산모 관련 위험에 대해 잘 알고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산모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장애를 가진 산모가 모자보건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장애주류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 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산모가 임신 및 출산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교육 내용을 BEmONC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85)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Nam Gu Lim, 1 Jin Yong Lee, 2 Ju Ok Park, Jung-A Lee, and Juhwan Oh, Pregnancy, Prenatal Care, and Delivery of Mother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015, Vol. 30, pp. 127-132, p. 131쪽 참조.

86) Marcia P. Harrigan and Suzanne M. Baldwin, "Conception, Pregnancy, and Childbirth" in Elizabeth D. Hutchison, ed. Dimensions of Human Behavior: The Changing Life Course, SAGE Publishing, 2018, p. 67.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보건	DR콩고 Kwango 지역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증진 사업: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여 모자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주 보건 의료체계의 행정적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국의 시설 개선, 장비 보급 및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구역보건팀의 시설 개선, 인력의 역량강화, 현장 감시, 차량 운영 등을 지원하고, 모자보건 서비스 질과 양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소 시설 개선, 장비 보급, 인력 훈련, 모자보건 필수 의약품의 보급, 보건소 이용자의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모성사망 감시를 포함하여 주민 건강 증진 활동 및 인식을 증진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산모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의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 성생식보건(모자보건)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 등 때문에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에티오피아 베니상굴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기반 통합 신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 사업'에서 살펴봤듯이,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산모는 장애로 인해 임신 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 자연유산, 조산 및 저체중 신생아의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 의료진이 장애를 가진 산모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 잘 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신생아의 건강은 위협 받는다.	장애를 가진 산모가 보건시설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가령 보건소 등 보건 서비스 시설을 개보수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물리적 장애물을 해소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산모가 상담이나 진료 시 직면하는 의사소통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소통 보조 인력이나 기구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 보건시설의 진료 장비를 장애를 가진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다. 지역사회기반 모성사망 감시 인력을 포함하여 보건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에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산모의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지역사회기반 건강 증진 인식 증진 활동에 장애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가령, 장애여성의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보건	마다가스카르 WFP 남부지역 만성 영양실조 개선 사업: 5세 미만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질기반 영양보충제를 제공하고, 임산부 및 수유 여성을 대상으로 미량영양소 강화 국물가루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영양 오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대상 아동에게 적시에 식사를 제공하며, 영양원으로서 학교 농장 및 마을농장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영양 결핍 문제는 종종 장애 예방의 틀에 잡힌다. 영양 공급 사업들은 대개 태아 및 아동의 장애 예방을 위해 산모 및 아동의 영양 섭취를 개선하는데 주목하는 반면 장애아동 등 장애인의 영양 섭취에 대한 니즈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허나 영양 섭취는 이미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 게도 중요하다. 장애아동들에게 제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피할 수 있는 2차 손상이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기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장애인의 영양 섭취에 대한 니즈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인은 보건·사회서비스에 비	장애아동,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수유 여성이 가장 애인에 비해 영양 결핍의 위험에 빠지기 쉬우나, 그러한 위험의 원인을 해소하는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장애를 가진 산모 및 수유 여성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 장애학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때 영양 결핍으로 인한 2차 손상의 우려를 고려하여 공급한다. -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장애인을 영양 공급에서 배제시키려는 행태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포함시킨다. - 인식개선 캠페인 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점, 보건 문제들은 종종 그러한 장애인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애인들과 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점, 일반 보건 캠페인(가령 에이즈나 말라리아에 대한 캠페인)이 장애인들의 유관한 특별한 니즈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⁸⁷⁾ 심지어는 영양분이 희소자원인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장애아동의 건강 및 복지(심지어는 생명)의 유지는 비장애아동에 비해서 그 우선성이 낮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장애아동을 영양 공급에서 배제시키기도 한다.⁸⁸⁾ 그리고 일부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은 장애영유아의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 가령, 청각장애를 가진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일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영아실행의 한 모습이다. 여러 지역사회에서 낙인과 차별은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다른 식구들보다 적은 음식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⁸⁹⁾ 특히 장애아동(가정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때문에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장애아동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될 소지가 더욱 크다.	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캠페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활자로 된 인쇄물, 점자 인쇄물, 수화통역 등을 제공한다.

87) LANCET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13\)70056-1/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glo/article/PIIS2214-109X(13)70056-1/fulltext).

88) UNICEF의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nicef.org/disabilities/index_65943.html.

89) 상기 LANCET의 웹사이트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보건		파키스탄 아동 및 지역 영양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센터 설립사업: 영양 결핍 유아들의 영양 개선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고급여성인력의 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영양교육센터의 건립과 조직 구성,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영양교육 모형을 개발, 활용하여 영양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성분분석실험실의 환경 조성 및 기기 설치를 통하여 정밀영양성분분석의 역량 확보 및 보충식 개발을 지원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마다가스카르 WFP 남부지역 민생 영양실조 개선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 영양 니즈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신념과 관행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상기 우즈베크 키스탄 지자체 미지출 지구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보듯이, 51개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19.6%로, 이는 29.9%인 비장애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 장애여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은 여러 유형의 접근성에서 취약하다는 점이다. 우선 장애인은 직업 스킬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은 고용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 장애물도 경험한다. 일터까지 가는 데 필요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 장애물, 채용시험이나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작업장 내의 각종 간접적 장애물, 작업도구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 채용시험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의 장애물 등을 경험한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구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직장에서 퇴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적 장애물은 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이나 믿음에서 비롯된다. 일부 장애인들은 고용될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영양 결핍과 그로 인한 2차 손상의 위험에 빠지기 쉬우나, 영양 관리자, 영양 연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에 장애와 영양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영양 보충식을 개발할 때 장애아동을 고려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고급여성인력의 사회진출 차원에서 영양교육센터의 인력 총원 시 여성을 고려할 때, 장애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시에 장애를 고려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조치는 장애여성을 우선 고용하는 적극적 조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고용되는 직무가 저임금의 단순 직무를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 저임금의 단순 직무를 장애인의 무 고용제에 관한 참고로 파키스탄은 장애인의 무 고용제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영양교육센터를 건축할 때 장애를 가진 직원과 고객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여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멈추기도 한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 접근하기 어렵다. 가장 직접적인 장애물은 고용주가 장애인을 채용에서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상기의 편견들을 비롯하여 장애인에 대한 여러 편견에서 비롯된다. ⁹⁰⁾	
민관 협력	보건	라오스 웅오이/비엳캄 지역 기초보건개선행사 3단계: 대상 지역의 모자 영양 상태 개선과 모자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모자보건 및 영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시설 개보수, 필수 의료기기 등의 제공을 통해 보건시설 인프라를 개선하고, 보건소장, 정부의 보건 관리자, 지역다자영양지원팀, 마을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자 맡은 임무 수행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모자보건 및 영양에 대한 인식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산모를 포함하여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 모자보건시설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의 어려움 등 때문에 비장애 여성에 비해 모자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 또한 상기 '에티오피아 베니상굴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기반 통합 신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 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를 가진 산모는 장애로 인한 위험 때문에 의료진 이외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연유산, 조산 및 저체중 신생아의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마다가스카르 WFP 남부지역 만성 영양실조 개선사업'에서 보듯이, 장애인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의 영양 니즈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산모가 모자보건시설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기 '필리핀 WHO 지역사회기반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사업'과 '굴구무즈 및 아파르 주 지역기반 통합 신생아 및 아동 보건 강화 사업'에서와 같은 장애주류화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를 가진 여성이 모자보건시설의 서비스나 관련 캠페인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장애를 가진 산모가 임신 및 출산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교육 내용을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킴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영양과 관련해서는, 보건 및 영양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내용에 영양과 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보건과 영양에 부정적인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을 타파하는 것을 보건 및 영양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90)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WHO/World Bank, 상기 책, pp. 239~240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캄보디아 캄프스프 스룩프놈스루언 쿨캉샤 지역 현지 작물 영양 보충식을 이용한 통합적 모자 보건영양 증진 사업: 모자보건영양관리를 통하여 모성 및 5세 미만 영유아의 영양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 작물을 이용한 영양보충식을 생산하고, 영양불량척약자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 및 식품 공급과 영양·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보건영양생활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영양원화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보건소 내에 보건영양교육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미디가스카르 WFP 남부지역 만성 영양실조 개선사업에서 보듯이, 장애인들은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의 영양 니즈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러한 잘못된 사고 및 장애차별적인 태도는 장애인이 보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동하며, 그밖에 물리적·정보적 장애물도 장애인이 보건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한다. 가령 보건 교육을 하는 시설에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보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감각장애인은 보건 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따른 장애 영유아의 니즈를 고려하여 영양불량척약자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 및 식품을 공급할 때 해당 장애 영유아 및 장애를 가진 임신·수유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임신·수유부를 대상으로 보건영양생활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는 시설은 장애를 가진 임신·수유부가 물리적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로 정하고, 감각장애 들을 가진 임신·수유부가 교육 및 실습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한다. 보건영양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보건영양위원회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여성을 포함시킨다.
민관 협력	보건		상기 '미디가스카르 WFP 남부지역 만성 영양실조 개선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은 영양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의 위험이 있다. 하나 장애인의 영양 니즈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간다 쿨루주 파타코지역 식수위생개선프로젝트'에서 논의했듯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WASH에 접근할 수 없다. 특히 WASH 시설이 장애를 고려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장애주류화될 수 있다. - 장애학생들에게 영양을 공급할 때 영양 결핍으로 인한 2차 손상이나 발달 지연의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해당 장애 특성에 맞게 공급한다. - 학교 및 지역사회 우물의 신·개축과 교내 화장실의 신개축 시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 및 지역민들이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소위 보편적 설계에 입각하여 설치한다. 또한 그 설계에 장애인들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WASH 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민관 협력	보건	탄자니아 코메 섬, 지역사회 보건환경 개선을 통한 초등학생 건강증진 사업: 지역사회의 보건환경을 통한 초등학생의 발육 증진을 목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및 빈혈 검사를 실시해 가면서 학교급식 및 복합미량영양소를 공급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감염성질환 검사, 구충약 투약, 학교 및 지역사회 우물의 신개축, 교내 화장실의 신개축, WASH 위원회 조직 및 활동 지원, 보건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실시, 학교 보건 코디네이터 등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지 않고 설치·건축되어 장애인들이 시설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WASH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은 그들의 보건, 교육, 노동, 생계 및 기타 지역사회의 참여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조치한다. - 학교 보건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 교육에 장애와 영양 간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인식개선 캠페인 시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감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캠페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활자로 된 인쇄물, 점자 인쇄물, 수화통역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농림수산	르윈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로 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관개 농지 개발, 지속 가능한 경사지 관리, 국물창고 및 농민조합 사무실 건립 등의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민 조직 결성 및 역량강화, 영농기술 지도, 정확한 농산물의 관리기술 향상, 판매연결 등의 벨류체인 구축, 영농자금의 접근성 향상 등과 같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초청연수를 통해 사업 수행자 및 농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운영위원회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고용 부문이며(전세계적으로는 35%이고, 사하라 이남아프리카에서는 거의 60%이다),⁹¹⁾ 농업은 개발도상국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원이자 영양 섭취와 식량안보(food security)의 소스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바, 농업은 장애인들의 고용에 밝은 전망을 줄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다.⁹²⁾ 사실, 비장애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들이 농업에 종사한다. 허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보다 농업 관련 훈련, 금융 등에 잘 접근할 수 없다. 가령, 농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장애	장애를 가진 농민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에 배제되는 것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농민조직 결성 시 조직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 장애인을 적극적 조직의 일환으로 참여시켜 조직의 운영과 주요 의사 결정에 장애인의 경험과 니즈가 반영되도록 한다. - 영농기술 지도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영농기술 지도 장소를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영농기술 지도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91) New Agriculturist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new-ag.info/en/focus/focusitem.php?a=3091>.

92) TheIndependent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independentbd.com/printversion/details/173574>.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인은 장애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생각, 장애는 전염된다는 생각 등) 때문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설사 훈련을 받게 되더라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훈련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빈곤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에게 영농 자금의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농민들은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때문에 또는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영농 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	- 영농자금 대출에 관한 규약에 장애인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차별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빈곤하기 쉬운 장애여성 농민의 경우 담보 설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프로젝트	농림수산	탄자니아 UNFPA, UN WOMEN 싱기다신양가 주 여성 및 소녀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 사업: 지역 여성 및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해바라기 등 작물 재배 여성 농업인 대상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 자문, 관개농업 스타터 팩 제공 등을 실시하고, 여성 작물 생산자조합의 조직, 작물 보관 창고 및 수집센터의 신축, 창업 기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여성 농업인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및 옹호활동을 실시하며, 젠더기반폭력(GBV)의 예방·대응을 위한 경찰 센터 및 아동 데스크의 설치, 원스톱센터 설치, GBV 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안전한 공간 마련 지원, 핫라인 설치, 폭력보호 위원회 기능의 지원 등을 실시하며, 마을 지식 센터 및 안전한 공간을 설치하여 창업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인은 장애로 인해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생각, 장애는 전염된다는 생각 등) 때문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설사 훈련을 받게 되더라도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서 물리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훈련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빈곤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에게 영농 자금의 대출을 꺼릴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농민들은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에 대한 제한 때문에 또는 사회적 배제 때문에 영농 지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다.	장애여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비장애여성과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장애여성의 니즈가 동 사업에 반영되도록 여성 작물 생산자 조합을 조직할 때 조합의 결정기구에 장애여성을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 여성 농업인 대상 관련 기술 교육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에 장애여성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그러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 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장애여성이 GBV 예방 및 대응 서비스에 접근하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나아가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은 농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동티모르 One UN 젠더기반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 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여성에 대한 GBV가 비장애여성에 비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장애여성은 성과 장애로 인해 이중적으로 GBV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애여성은 법적·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 때문에 GBV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에 비장애여성에 비해 접근하기가 어렵다. 법적 장애물은 가령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인이 사리 분별력이 없다고 여기는 경찰 등 사법 관계자의 법적 견해 등을 포함한다. 가족 구성원 및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비롯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라는 장애물도 장애여성이 GBV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는다. 물리적 장애물은 GBV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 등의 장소에 장애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적 장애물은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이 GBV 예방 및 대응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는 것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들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GBV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데스크, 원스톱센터, 안전한 공간 등에 장애여성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이들 시설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에게는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특히 의사소통 보조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조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 경찰 센터 및 아동 데스크에는 장애여성과의 GBV의 관련성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담당자를 둔다. - 장애여성의 GBV 대응에 대한 니즈가 관련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게 폭력보호위원회에 장애여성을 대변하는 인사를 포함시킨다.
프로젝트	농림수산	세네갈 미곡가치사슬 강화 2차 사업: 지역 내 쌀 가치사슬의 내부 효율성 향상을 통해 농민 소득	상기 3원인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사업에서 언급하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장애를 가진 농민이 본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농기계 구입을 보조하는 등 농민조직 소유의 농기계 서비스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농가 대상 영농기술(수확 후 처리, 농기계, 금융) 교육과 농민조직 대상(수확 후 처리시설 운영)을 실시하고, 건조 및 저장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며, 소농, 소규모 창고업자 및 도정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농업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금융활용을 위한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사 기술을 습득하는 농업 훈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 훈련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또는 빈곤하여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농민에게 영농 자금 대출을 꺼린다.	- 장애를 가진 농민이 영농기술 교육에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교육 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를 가진 농민이 영농기술 교육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 농기계는 장애를 가진 농민이 비장애 농민처럼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농민이 농기계 교육을 받을 때 장애로 인해 농기계를 다룰 수 없다고 배제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농기계의 핸들 등을 일부 개조하여 그가 농기계 조작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조치한다. - 영농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에서 장애인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차별할 소지가 있는 기준이 있는지 점검한다.
프로젝트	농민 수인	라오스 남부 3개 주 농촌종합개발사업: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내 기초 인프라 구축, 농업 및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강의실, 시험포장, 농기계 등을 갖춘 농업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봉촌지도인력과 주민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농산물 가공, 가정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농외소득을 위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경관농업 기업을 구축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사 기술을 습득하는 농업 훈련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 훈련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 영농기술 교육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영농기술 교육 장소인 농업훈련센터 등에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과 의자 및 책상 등을 구비하며,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를 가진 농민이 교육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래로 약 3만명이 사망했고, 2만명 이상이⁹³⁾ 다쳐서 장애인이 되었다. 이들 장애인 중 상당수는 고립된 농촌지역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라오스와 같이 과거 전쟁이나 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 발생이 많은 협력국에서 지역공동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장애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애를 가진 농민은 자신의 장애의 중한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적합 농업 분야가 있다. 그 중 일부는 “경”(light) 영농 활동 분야로, 어류양식 양계, 곡류가공, 원예 등이다. 그리고 경관농업과 관련하여 농촌의 주요 수공업인 바구니 및 카펫 짜기, 도예 등도 적합 농업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들은 소위 공급사슬경영(supply chain management)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⁹⁴⁾ 이러한 장애인 적합 농업 분야가 사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를 가진 농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기령, 참여 지원자 모집에서 장애 농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적극적 조치)은 장애주류화에 해당한다.

93) Landmind & Cluster Munition Monitor의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the-monitor.org/en-gb/reports/2016/lao-pdr/casualties-and-victim-assistance.aspx>.

94) 상기 TheIndependent 웹사이트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라오스 비엔티엔 지역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종합 양계사업: 종합 양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 생산자 조합 조직 활성화 교육 및 조합 대상 자문, 조합 자체 브랜드 론칭 지원, 가정양계 초·중·고급 및 생산비 지원, 자체 사료 및 품종 개발, 양계 기술 교육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원단다 농업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주요 요인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장애 농민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이다. 장애인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편견은 주요한 태도적 장애물로, 이로 인해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장애인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에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각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한편, 장애인은 상환 능력이 없다는 편견 때문에 장애인은 금융 서비스에서 빈번하게 차별을 겪는다.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될 수 있다. - 양계는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경영 활동 분야이며,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지원한다. - 생산자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하여 조합의 운영에 자신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장애인이 초기자금 및 생산비 지원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조치한다. - 양계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에 지체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또한 그러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각각 장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민관 협력	농림수산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극빈층 식량안보 및 영양 개선을 통한 회복력 지원사업: 지역의 극빈층의 식량안보와 영양개선을 목표로, 종자 제공, 농업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가축 및 사료 제공, 가축 질병 예방 접종, 가축사육 기술 교육, 시장기술 교육, 기후스마트 농업 교육을 실시하며, 저축신탁을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소득증대 활동을 위한 창업교육 및 회계교육, 저축신탁을 위한 더 및 현지직업 역량강화 교육들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원단다 농업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언급했듯이, 농업은 농촌 거주 장애인처럼 빈곤에 처한 집단에게 소득원이자 식량안보의 소스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주요 요인은 농업 지원 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이다. 주요한 태도적 장애물은 장애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편견으로, 이로 인해 장애인이 농업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차별	가축 사육은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영 활동 분야이며,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지원한다. - 영농기술 교육, 시장기술 교육, 창업 및 회계 교육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지체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인에 서비스 제공되는 시설에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못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농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편견 때문에 장애인에 자금 대출 서비스에서 빈번하게 차별을 겪는다.	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또한 그러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 장애인이 신용조합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용조합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킨다.
사업 관련 협력	사회적 기업	미안마 뽀따노 지역 dot리 생산자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사업: dot리 생산자 협동조합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협동조합 리더십 훈련, 품질관리 시스템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 미안마 청년 고용 및 훈련, 지역 특산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어려움의 주요 요인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장애 농민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들이다. 가령 장애인은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편견은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막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장애인에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물리적·정책적 장애물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책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로 해소될 수 있다. - dot리 생산은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영농 활동 분야이고 농산품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빈곤 계층인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야인바, 장애인이 dot리 생산과 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고 지원한다. - 생산자 조합의 의사결정기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하여 조합의 운영에 자신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리더십 훈련, 청년 직업 훈련 등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훈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훈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커피산업의 새로운 주체 발굴을 통한 커피 가치사슬 개선 사업: 커피 비즈니스 센터를 개척할 비즈니스 인력 양성을 통해 커피 산업의 가치사슬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현대식 커피 가공법 도입을 위한 설비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청년농부 자조그룹 결성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내수시장 커피센터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모델 스토어 운영을 통한 커피비즈니스 인큐베이싱을 수행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 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어려움의 주요 요인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장애 농민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물들이다. 가령 장애인은 농사에 부적합하다는 편견은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막는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장애인은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물리적·정 보적 장애물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한편, 장애를 가진 농민은 단순한 육체노동을 이 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경 영농 활동 분야라 할, 가치사슬상의 농산물 가공판매가 더 적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러한 기회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	장애를 가진 농민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 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 치로 해소될 수 있다. - 여성/청년 자조그룹을 조직할 때 장애를 가진 여성/청년이 차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하 는 조항을 자조그룹의 규약에 포함시키고, 가 능하다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그룹에 가입시 키는 적극적 조치를 실시한다. - 자조그룹에 대한 교육과 커피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장애인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훈 련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 고, 훈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 장애 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 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농림수산	콜롬비아 뿌꾸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사업: 사치인 치의 생산과 상업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 고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목표로, 사치인지 재배 대상 농가의 선정, 초기 농장의 조성, 생산 기술 이전 및 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생산자 조합 의 조직 및 운영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생산 자-조합-유통기업 간의 협의체 구성, 수집·운 송·가공·판매 기술의 지원을 실시하며, 시장 접근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 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 서 언급했듯이, 농업은 농촌지역 장애인에게 고 용 전망이 밝은 부분임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 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 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농 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 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 애물들이 그 요인일 수 있다. 장애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편견은 대표적인 태도적 장애물 로, 이로 인해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인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 등 장소에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하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개별화 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 - 사치인지 재배 대상 농가 선정 시 장애를 이유 로 장애를 가진 농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 하고, 가능하다면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장애 를 가진 농민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생산 기술 훈련, 조합 운영 역량 강화 훈련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지체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또한 그러한 훈 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 장애인이 접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지 못하여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농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경영활동 분야일 수 있는 농산물의 가공 등에 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별 생산자 조합의 의사결정기구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여하여 조합의 운영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프로젝트	농림수산	쿠바 WFP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부지역 식량공급시스템 강화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공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농기계 등의 기지재 지원, 영양 강화 작물 도입 및 시범농장 운영, 농민 대상의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의 지원, 영양 관련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며, 취약계층에 대해 영양강화식품 및 지역사회 생산 농식품을 제공하며, 영양보건 프로그램, 학교급식 프로그램 관계자 대상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는 등의 개별화 활동을 수행한다.	'르윈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언급했듯이, 농업은 장애인처럼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원이자 식량안보의 소스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주요 요인은 농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일 수 있다. 태도적 장애물 의 예는 장애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편견으로, 이로 인해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한 장애인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 등 장소에 장애 때문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여 해당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나아가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도 농업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	장애인이 농업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들은 본 사업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개별화 동으로 해소될 수 있다. -농기계 등 기지재를 지원할 때 기능하다면 장애를 가진 농민이 다룰 수 있게 기지재를 개조한다. -기술 교육, 영양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장소에 지체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또한 그러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감각장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한다. 장애인들의 영양 니즈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관심 부족 및 잘못된 태도나 신념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보건 프로그램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 관계자 대상 교육의 내용에 영양 섭취에 대한 장애인의 특별한 니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또한 영양강화식품의 배포 대상인 취약계층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실조 개선사업'에서 봤듯이,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2차 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 허나 장애인의 영양 니즈에 대한 보건 전문가들의 관심 부족, 장애인 보다는 비장애인의 건강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사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문화적 신념과 관행 등으로 인해 장애인은 영양 섭취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에 장애인을 포함시킨다.
프로젝트	농림수산업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 농촌 보건의료와 소득증대를 통합한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아웃리치센터(ORC)를 신축하고 기지재를 공급하고, ORC 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보건 자원을 조직화(시범 건강학교, 보건 의 집)하여 운영하며, 주민 주도 보건 사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보건 증진을 위한 개별 활동을 수행하고, 시범포, 생산직물 산별 및 저장 시설과 유통센터 건립과 운영, 농자재 지원 등의 농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작목반을 결성하여 운영하여 주민의 농업 역량을 강화하며, 소득 작물 생산 및 복합영농 등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장애인은 장애와 연관된 건강 상태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차별을 포함한 여러 장애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개발도상국에서 장애남성이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비율은 6.6%, 비장애남성의 비율은 4.6%). ⁹⁵⁾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각종 이차건강문제(secondary conditions), 이차장애, 조기노령화 등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비스 비용, 서비스 장소까지 갈 교통수단의 부재, 지역사회와 보건의료 서비스 부재, 보건의료 시설과 의료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장애를 고려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이다. ⁹⁶⁾	장애를 가진 지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는 다음과 같다. - 자체장애인의 등에게 보건의료시설(ORC, 보건 의 집 등)에 오는 데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시설에 물리적인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정이나 개조가 가능한 보건의료 기지재를 제공한다. -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본 사업에서 장애를 가진 농민이 비장애 농민과 동등하게 농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95) WHO/World Bank, 상기 책, p.62.

96) 상기 책, p.63.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상기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 사업에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사 기술을 습득하는 농업 훈련이나 작목반 참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 훈련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 시범포나 작목반에 장애인들이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즉, 시범포 및 작목반에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접근로, 설비 등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축·개조하고,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를 가진 농민이 실습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 상기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자신의 장애의 중한 정도나 장애 유형에 따라 질할 수 있는 적합한 농업 분야가 있는바, 장애인 적합한 농업 분야가 사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장애를 가진 농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가령, 참여 지원자 모집에서 장애인의 우선 모집)은 장애주류화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다분야	라오스 아타포주 통합 재건복구 사업: 라오스 아타포주 홍수피해 지역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 조기 재건을 도모할 목표로, 다음 분야들에서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보건 분야에서, 보건소 및 병원을 간축하고, 의약품·의료기자를 지원하고, 의료 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하며, 주민 대상 기초보건교육을 하고 모기 방역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 분야에서, 중등학교를 간축하고 기자재를 지원하고, 임시학교 천장·바닥을 보수하고, 운동장·놀이시설을 지원하며, 재난위험관리	'네팔 보건 및 소득증대를 통한 통합적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에 장애와 연관된 건강 상태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보건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차별을 포함한 여러 장애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그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비스 비용, 서비스 장소까지 갈 교통수단의 부재, 보건 의료 시설과 의뢰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장애를 고려하지 못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내용, 장애인에 대	장애인들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는 다음과 같다. - 자체 장애인 등에게 보건 의료 시설에 오는 데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시설에 물리적인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조정이나 개조가 가능한 보건 의료 기자재를 제공한다. - 보건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장애를 고려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DRM)에 대해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농업소득 증대 분야에서, 양계장 및 양어장 건축 기자재를 제공하고, 병아리 및 치어를 공급하고, 양계 및 양어를 위한 ToT 및 농민 훈련을 실시하고, 작물재배 종자 및 농기자재를 제공하고, 농업 훈련센터를 건축하고, 농업기술 ToT 및 농민 훈련을 실시하며, 시장연계성 강화를 지원한다. 직업훈련 분야에서, 직업기술센터의 훈련을 지원하고 기자재를 제공하며, 직업훈련원을 건축하고 4개 공과를 개설하고 기자재 및 장비를 제공하고, 이동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보호 분야에서, 대안양육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인력 대상 역량강화 훈련을 하고 지역기반 아동보호서비스(아동친화공간, 심리 상담 등)를 제공하며, 아동보호 관련 지역사회 인식개선활동을 지원한다.	한 부당한 대우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등이 있다. 상기 캄보디아 비탐병 학교 역량 강화를 통한 중 학교 중도 탈락 감소 사업'에서 언급했듯이, 장애 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초중등학교 진학을 과 졸업률은 매우 낮고, 유급률은 매우 높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 학교 차원의 장애물로는 장애아동에게 부적절한 학습자료나 교습법,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사 훈련의 부족, 장애아동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학교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아동의 등하교 상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에 대한 교사, 학생, 심지어는 장애아동 부모의 부정적 태도 등이 있다. 상기 '우즈베키스탄 지적주 미지출 지구 여성 취 · 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직업훈련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의 요인으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같은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에 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 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막는 직업훈련시설의 물리적 장애물,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접근 및 이용을 어렵게 하는 학습 자료, 교습 및 훈련 기자재 등이 있다. 장애아동은 보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장애아동에게 낙인을 찍고 그 가족들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사회에서 많은 장애아동들은 심지어 출생증명서도 갖지 못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비장애아	육을 포함시킨다. - 장애를 가진 주민이 기초보건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편의시설, 의사소통 보조 등)를 제공한다. 장애아동들이 교육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장애주류화는 다음과 같다. - 신설하는 학교에 장애아동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장애아동이 교육 기자재에 접근 ·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할 경우 기자재를 개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장애인은 재난에 취약한바, DRM에 대한 교원 연수 내용에 재난 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장애를 가진 농민들이 농업 관련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하게 하는 장애주류화는 다음과 같다. - 장애를 가진 농민의 일부에게 경영 활동 본 아인 어류양식, 양계 등이 적합하며, 이를 고려하여 어류양식 및 양계 훈련에 장애를 가진 농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한다(필요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직업훈련에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장애주류화를 한다. -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직업훈련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적극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동에 비해 훨씬 더 폭력, 방치, 학대 등에 처하게 한다. 장애소녀는 비장애소녀보다 훨씬 더 성적 학대 및 강간의 희생자가 된다. 많은 나라에서 장애아동들이 계속 시설에 보내지는데, 시설들은 아동들이 충분히 발달하는데 필요한 개별화된 관심을 받지 못한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 의료 및 재활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입양가정이 대안양육의 주요 형태인데, 입양가정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추가 부담 때문에 이들을 양육하길 꺼린다. 당국이 시설양육(institutional care)의 폐해 때문에 아동들을 가족 품이나 지역사회로 복귀시킬 때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늦게 복귀되는 경향이 있다.⁹⁷⁾	적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신축하는 직업훈련원은 장애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필요시 훈련 기자재 및 장비를 개조한다. -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교사 대상 교육 내용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시킨다. - 비장애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은 지역사회에서 잘 보호를 받지 못하는바, 그 원인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다음의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다. - 대안양육의 주요 방식인 입양가정의 경우, 장애아동을 양육하기를 기피하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아동 양육시 추가 지원을 해주는 규범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 인식개선활동 내용에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을 포함시킨다. - 장애아동이 아동친화공간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춘다.

97)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2013, WORLD'S CHILDREN 2013, pp. 41~43.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프로젝트	농림수산	미얀마 ICT를 활용한 개발소외지역 참여적 농촌 개발사업: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참여적 농촌개발사업 모델을 적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마을 개발 프로그램(SCDP)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마을개발위원회 구성 등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마을개발계획(VDP)을 수립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독대사업 등을 시행하고,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고, 마을기금관리시스템(InGeMS) 및 마을정보교류시스템(VOIS)을 구축하는 등 ICT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 및 인력훈련 등 ICT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미얀마농촌 진흥연수원 시설을 증축하고 기자재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작목반 교육, 마을지도자 교육 등 현지연수를 실시하며, 초청연수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르완다 농업 생산성 및 시장 접근성 강화사업'에서 보듯이, 장애를 가진 농민은 비장애 농민에 비해 농업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사 기술을 습득하는 농업 훈련이나 작목반 참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 훈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의 어려움, 훈련에 필요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농업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에서 장애를 가진 농민이 비장애 농민과 동등하게 농촌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주류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마을주민 대상 작목반, 교육 등 현지연수에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원활히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가령, 작목반 교육장에 장애인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각장애(시각·청각) 장애 등을 가진 농민이 교육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수화통역, 큰 활자로 된 자료, 점자화된 자료 등)를 제공한다. - 마을개발위원회 구성원에 장애인을 참여시켜 마을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장애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참고로, 농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VOIS에 접속한다면 장애를 가진 농민이 장애로 인해 VOIS 접속 과정에서 겪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주류화가 필요하겠지만 본 사업에서 VOIS는 주민들과의 네트워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그러한 필요성은 없다.
프로젝트	공공행정	도미니카공) 동부 6개 주 여성 중심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사업: 여성들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저축 그룹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그룹을 활성화하며, 여성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여성들에게 직·창업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가족농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상기 '우즈베키스탄 자작주 미지출 지구 여성취·창업 역량강화 사업'에서 보듯이, 51개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19.6%로, 이는 29.9%인 비장애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낮다. 이처럼 장애여성은 고용률이 낮고 더 넓게는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기술을 쌓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허나 이들이 직업훈련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빈곤율이 높고 장애 여성은 특히 더 높다. 그 결과, 장애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본 사업의 주요 부분인 저축그룹에 가입하기 어렵고 가입하더라도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사업은 저축그룹 우수 지역에 가족농 조성의 우선권을 부여하는바, 결국 장애 여성은 가족농 혜택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다. 장애 여성이 이처럼 배제되지 않으려면, 장애여성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련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그 참여를 못한 저조한다. 그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 장애물로, 직업훈련시설에 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 직업훈련시설과 훈련 기자재의 이용에서의 물리적 장애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장애인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한 지역사회, 노동시장,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정적 태도 또는 편견일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편견은 장애인에 비해 비생산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이로 인해 직업훈련시설은 장애인을 받기를 꺼리고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를 꺼릴 것이다. 한편,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움은 개인사업을 하려는 장애인들에게 주요 장애물이다. 특히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흔한 장애여성들이 더욱 그러한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장애인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들에게 대출을 꺼릴 것이다.	은 저축할 여윌돈이 적더라도 저축그룹에 가입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드는 장애주류화 조치가 필요하고, 그들의 저축액이 적더라도 그들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하여 기축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장애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가 필요하다. 먼저, 건립하는 직업훈련센터에 충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여성 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직업훈련센터 를 건립하는 것이 공여국의 일이고 훈련생을 뽑 고 훈련을 시키는 것은 협력국 소관이지만 장애인 이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그간 오랫동안 배제 되었음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장애여성을 직 업훈련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쿼터제(전국적 우대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협력국에 권고할 필 요가 있다.
프로젝트	금융 행정	필리핀 IOM 마라위 평화 정착을 위한 이주민 생 계지원사업: 마라위 내전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 심리지원 및 마을 통합 사업을 통해 그들의 평화적인 귀환 및 재정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기초 조사, 마을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을 수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위원회 주도의 사회 통합 활동, 마을평화활동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 고, 마을 사회 기반 시설을 간축 · 재건하고, 물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강제이주(displacement) 나 재정착(resettlement)과 관련하여 비장애 이 주민과 동일한 니즈와 장애특정적인 니즈를 가 지고 있을에도 관련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통해 비장애인에 비해 자신들의 관련 니즈를 충 족시키지 못한다. 장애를 가진 이주민은 강제이 주 시비장애 이주민과 똑같이 소득의 결핍, 부적 절한 거주, 기초 보건서비스, 음식 등에 대한 접 근의 어려움 등을 겪지만 장애로 인해 특정한 니	장애를 가진 재정착민이 비장애 재정착민과 동 등하게 재정착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본 사업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을 저해하는 장애 물들을 해소하는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장애를 가진 재정착민에 대한 재정착 프로그램 을 증거에 기반하여 수립할 수 있게 마을 기초 조사 데이터가 장애로 분리될 수 있게 한다. - 재정착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되도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품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 및 마을 기반 비즈니스 조직 대상 경제활동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물품 및 창업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며, 여성 및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개별활동을 수행한다.	즈를 가진 장애 이주민들이 겪는 그러한 어려움은 이주민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의 어려움에 더해져서 비장애 이주민에 비해 건강 및 생활여건 등에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그 위험은 중대된 질병 및 기타의 위험은 물론이고 장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중대된 (성)폭력 위험과 같은 위험도 포함한다. 특히 장애아동은 착취, 방치, 유기 등의 위험과 함께 심각한 심리사회적(psychosocial) 불안에 처할 수 있다. 보조 기구의 부족은 장애 이주민의 이동성이나 감각 손상 등을 악화시켜 이들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그 결과, 이들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둔 가족은 장애인을 돌보는 데 심각한 압박을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가족의 짐으로 여기기도 한다.⁹⁸⁾⁹⁹⁾ 한편, 강제이주로 겪은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착에 필요한 교육, 고용, 보건, 적절한 생활수준 영위 등의 니즈에 대응하는 이주민 재정착 서비스는 태도적·물리적·정보적 장애물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렵다.	록 마을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 심리사회서비스 담당자 훈련 내용에 장애 특정인 심리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다. - 본 사업의 재정착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할 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모집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다. - 본 사업의 재정착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은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한다. - 본 사업의 재정착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게 의사소통 보조를 제공하고 제공되는 정보는 이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한다. - 장애인이 창업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 빈번한 장애를 이유로 한 대출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업자금 담당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98) IOM's Global Migration Data Analysis Center, Disability and unsafe migration: Data and policy, understanding the evidence, Data Briefing Series, Issue No. 7, December 2016.

99)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Resettlement Assessment Tool: Refugees with Disabilities, April 2013, <https://www.unhcr.org/51de6e7a9.pdf> 참조.

사업 형태	사업 분야	사업 개요	장애인의 불평등한 관련 상황	사업의 장애주류화 가능성
			먼저, 서비스 제공자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배제 탓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invisible) 점을 이해하여 장애인은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잘못 생각하거나 보건의 서비스 등에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서비스에서 배제할 소지가 있다. 또한 감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재정착 서비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서비스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체장애인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그리고 장소 내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별첨 4]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업과 불가능 사유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관개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용수사용자협회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것인데, 영농기술 교육에 장애를 가진 농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주류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영농기술 교육이 핵심 사업 목표인 관개 시설 개선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변적이고 그러한 적당한 편의가 소소한 것이기에 이로써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가나 여성청소년 수학, 과학 교육지원 사업	여성청소년들이 남성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수학 및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졸업율 및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성인지적 교수법을 개발하여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여성청소년 친화적이지 않은 학교 환경(특히 십대 임신 및 이에 따른 학교이탈을 막지 못하는 환경)을 바꾸는 사업으로, 이처럼 성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에 장애주류화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자칫 사업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한편, 임신 및 출산 문제는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생식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주류화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본 사업은 이를 보건이 아닌 교육의 분야로 접근하므로 해당 장애주류화는 적절하지 않다.
나이지리아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할 때 장애를 가진 교육생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외에 딱히 장애주류화할 것이 없다. 또한 그 전문가 중 장애인이 거의 없을 것인바, 그 보장 조치도 사소하다.
동티모르 아동청소년 스포츠 역량강화 사업	사업 영역인 스포츠 특성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려워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
라오스 남능강 유역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수자원관리시스템의 기본계획 수립, 시스템의 구축, 비상대처계획 수립, 관련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를 통해 수자원 관리 및 재해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는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행정 및 기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수자원 이용자 측면에 관한 사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주류화를 할 사항이 없다.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품질관리 역량 강화사업	이 사업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커리큘럼개발제도과 교육훈련평가제도를 전수하는 것으로, 협력국이 그러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TVET 커리큘럼개발제도 및 교육훈련평가제도는 교과과정 개발과 훈련평가 시스템에 관한 것이고 훈련생을 모집하고 훈련시키는 방법과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기에 장애주류화를 할 지점을 찾을 수 없다.
마다가스카르 세계문화유산 아치나나나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 (UNESCO)	열대우림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애인의 삶과 거의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바, 장애주류화를 할 것도, 할 필요도 없다.
모로코 직업훈련교사 기술 향상 훈련 허브 센터 설립 사업	이 사업은 국가의 기술직업훈련 교사의 기술적 역량을 제고시키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훈련생이 아닌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것도 기술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바, 장애를 고려해야 할 지점이 거의 없다. 교사가 장애인일 경우에 여러 가지 장애를 주류화해야 할 사안들이 있겠으나, 교사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은 아니므로 그러한 장애주류화를 하는 것은 사업의 본류에서 벗어난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모잠비크 도로안전 시범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도로안전, 즉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 인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에 노출될 소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가령 어떤 장애가 어떤 유형의 사고에 취약하다는 등의 데이터는 없다. 그래도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에 경보음 장치의 설치다. 이는 본 사업의 장애주류화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그 조치로써 본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분류하기는 다소 무리다.
몽골 국가등록업무 시스템 운영지원사업	국가등록업무(주민, 법인, 재산권) 서비스의 질 및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관련 ICT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역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국가 내 인적·물적 체계가 사업의 대상인바, 장애주류화를 할 지점이 없다.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양질의 법과학 감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몽골 사법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
미얀마 교량유지보수 역량강화 사업	사업논리모형(PDM)상의 사업목표는 “교량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제공”이어서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교량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측면의 사업인바,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미얀마 라카인 마나웅섬 2.5MW 태양광전력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은 지역의 전력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그것도 공공시설 및 산업에 전력 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바, 장애인의 복지 등과 무관하여 장애주류화할 부분이 없다.
방글라데시 사이버안전을 위한 디지털 수사 역량 확산 사업	이 사업은 디지털 포렌식 체계 구축을 통해 디지털 범죄수사의 효과성을 제고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디지털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
방글라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활용 국가 간선도로망 안전성 강화 사업	이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국가의 도로교통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도로청(RHD) 제도를 강화하여 도로교통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관리하는 역량을 증대하는 것인바, 특별히 장애인 의 도로교통 이용 및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이 없어 장애주류화의 여지가 없다.
베트남 광남성 땀끼시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실증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집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계획, 구축 및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를 구축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일반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이해관계 자 분석’에서 적시되는데, “일반시민들은 본 사업을 통해 땀끼시의 다양한 도 시운영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연계한 서비스, 예를 들면, 교통정보, 토지 및 건축물 정보, 에너지 사용 정보, 대기질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반시민의 삶에 미치 는 영향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라면, 장애인 의 경우에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주류화 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은 행정의 효율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도시 운영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공공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사업의 세부 항목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소 무리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파편화된 재난관리 기관들을 통합 재난 상황실 구축을 통해 하나로 묶어서 재난 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없다(‘이해관계자 분석’에는 관련 기관들만 포함되어 있고 주민은 빠져 있다). 가령, 이 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세부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위험에 노출되고, 재난 관리 서비스에 더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에서는 그와 관련한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다.
베트남 탕화성 Ma강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본 사업은 강 유역 데이터 기반의 수자원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강 유역 수자원 관리 및 물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장애주류화를 할 사항이 없다.
볼리비아 남부지역 소농민 협동조직 구축을 통한 시장가치창출 및 식량안보 강화 사업 (WFP)	이 사업의 대상은 소농민 개인이 아니라 소농민조합이다. 만약 소농민조합에 대한 참여에서 장애를 가진 소농민이 불리하다면 이 사업의 혜택에 대한 접근에서 장애를 가진 소농민은 불리하고,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주류화가 필요하겠으나, 소농민조합의 구성 자체는 이 사업의 개별활동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는 장애주류화를 해야 할 여지가 없다.
수단 소외열대질환(NTD) 퇴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주혈흡충 등 수인성의 NTD를 퇴치하기 위해 치료제를 대량투여하고, NTD 퇴치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주도의 WASH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위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WASH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주혈흡충 등 NTD에 더 취약할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NTD와 장애의 관련성은 NTD가 장애를 야기한다는 맥락에서만 논의된다. 이처럼 NTD에 대한 장애인의 취약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WASH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의 상대적 어려움만을 갖고서 장애주류화 조치를, 즉 WASH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 달성 직접 관련되는 장애주류화로 보기 어렵다.
수단 카르툼 및 게지라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 강화 사업	이 사업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지원했던 직업기술학교 2곳에서 가르치는 직업 기술이 시대에 뒤지고 사용하는 기자재가 노후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을 가르치도록 교사를 재교육하고, 노후 기자재를 교체하고, 나아가 기술학교 행정도 개선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뒤떨어진 기자재와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바,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은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을 훈련생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훈련시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령 기자재를 필요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게 개조하는 등의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일 수 있다. 참고로, 직업기술학교의 건물을 짓고 학교 운영 체제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장애인을 훈련생을 우선 모집하고 건물의 물리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의 장애주류화는 적절한 것일 수 있다.
스리랑카 콜롬보 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사업	이 사업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공항 인프라 구축 및 역량을 확보하는 국제공항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항공기 운항의 기술적 측면에 집중하는 바, 장애인의 공항청사 및 항공기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한 장애주류화 조치를 사업 내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ICT 기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조세역량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세무행정 체계 효율화와 투명화를 목적으로, 세무행정의 개선을 연구하고 세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세무행정적·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바, 특별히 장애를 고려할 지점이 없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에콰도르 국가품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산업표준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품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에 관한 산업표준화 사업이라면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있으나 품질관리 사업이므로 그 여지가 없다.
에티오피아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리자 및 교사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양질의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관리 역량, 기술교육훈련 교원 교육원의 실습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의 관련 행정 역량과 기술훈련을 하는 교원을 교육시키는 교육원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직업기술훈련 접근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기에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요르단 카락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사업	이 사업은 노후 상수도 관망의 교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상수공급을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받을 소지가 없는바, 장애주류화를 할 사안이 없다.
우간다 직무능력기반 직업교육(CBT) 시스템 역량강화사업	이 사업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그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기술훈련기관의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기술훈련 체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바, 장애인들의 직업기술훈련 접근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장애주류화를 할 부분이 없다.
이라크 한-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 건립 사업	이 사업은 심장병 어린이 전문 병원을 건립하고 기자재를 지원하며, 의사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들이 심장병 수술을 잘 받기 위해 비장애아동과 달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주류화를 할 부분이 없다. 병원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사업의 핵심 부분은 아니므로 물리적 접근성 제공 하나로 이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으로 부르기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짜따룽강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이 사업은 강 유역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권리나 복지와 특별히 연관성이 없어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
카메룬 2개주 주민등록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주민등록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이어서 장애인의 권리나 복지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장애주류화가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캄보디아 보건부의 질병감시체계, 실험실관리체계,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생물안전, 역학조사 등에 관한 것이어서 특별히 장애와 연관성이 없고, 따라서 장애주류화를 할 사안이 없다.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 급식 사업 (WFP)	사업의 목표들 중 핵심은 '균등한 교육 기회 확대'와 '학생들의 영양 섭취 상태 개선'이다. 이 두 번째 목표와 관련한 활동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영양 배분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영양 결핍이 장애아동에게 2차 손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주류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허나 이 사업의 영양 공급 활동은 영양 결핍을 본격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인데(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학교에 잘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학교 급식 제공에서는 특별히 장애주류화 할 부분이 없다. 참고로, KOICA는 이 사업을 SDGs Goal 4(교육)와 연관시키지 Goal 3(보건)과는 연관시키지 않는다.
케냐 북동부 건조지역 농촌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UN WOMEN)	케냐 등 개발도상국 농촌에서 장애여성 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차별사유의 중복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서 비장애여성보다 훨씬 더 불리할 것이나, 본 사업이 개발된 '성인지적 기후스마트농업 가이드라인'을 특별히 적용하기에 성인지 외에 장애 관점의 반영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의 초점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코스타리카 국가표준기관 법정계량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국가표준기관의 계량표준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측정 기자재를 지원하고 측정기술 자문을 하며 실무인력에 대해 초청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와 전혀 무관한 사업으로,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코트디부아르 여성누공 치료 및 사회복귀지원 3차 사업 (UNFPA)	누공 자체가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장애 관련 사업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누공이 장애를 야기한다고 보기도 한다. 누공을 장애로 보거나 누공이 장애를 야기한다고 보는 경우, 누공 치료 사업을 장애주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참고로, 장애 예방 사업을 장애주류화 사업 또는 장애특정적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닐 소지가 크다). 누공을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장애여성이 누공 치료에 대한 니즈가 더 크다는, 또는 장애여성이 비장애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누공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보다 달리 누공 치료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데 물리적·정보적 장애물에 직면할 소지는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 장애주류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콜롬비아 전자조달 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콜롬비아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공조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경쟁촉진 및 예산절감 달성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콜롬비아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와 무관한바,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주변적·간접적 이슈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장애주류화 조치를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키르기스스탄 행정정보를 정부기관 간에, 그리고 정부기관과 주요 민간기관 간에 연계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공행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이나 복지와 무관하다. 따라서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튀니지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개방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공무원 대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한 이러닝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우선 그 마스터플랜을 짜고, 이러닝 스튜디오를 만들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러닝 서비스 운영실을 구축하고, 교육 정보 공개를 위한 교육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고, 비디오 스트리밍 및 회원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이는 이러닝교육훈련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갖추는 것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주류화를 할 사항이 없다. 만약 이 사업이 그러한 요소들을 갖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위해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이 사업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세행정 관리와 신속한 수출입 통관환경이 가능한 전자 관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등과 무관한바,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버스노선체계 및 운영 방식 등의 개선과 첨단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 아순시온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 교통의 흐름에 관한 사업이고 이용의 편의성에 관한 사업 항목이 없는바, 장애주류화의 여지가 별로 없다.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 사업	본 사업은 광산지역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광산 배수처리, 광해 복구공사, 광해방지시설 도입 등과 같은 토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바, 장애주류화의 여지가 전혀 없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필리핀 경쟁위원회 사건처리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을 모델로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시스템을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지원하여, 사건처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처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와 무관한 사업이어서 장애주류화의 여지가 없다.
필리핀 농기계현대화센터 건축 및 역량강화 사업	이 사업은 농기계현대화센터를 건립하고 센터 농기계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와 연관이 없으므로 장애주류화의 여지가 없다. 참고로, 장애를 가진 농민은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개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개조 사업은 장애주류화에 해당하지만, 이 사업은 농기계의 보급이 아닌 제조에 초점을 맞추기에 그와 같은 장애주류화를 하기가 다소 부적절하다.
몽골 울란바타르시 결핵접촉자 검진사업	이 사업은 울란바타르시 결핵 유병률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결핵 접촉자를 대상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전담인력을 구성하며 신속분자진단 객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동검진과 신속분자검진이라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바, 장애주류화를 할 부분이 없다. 참고로, 장애인이 HIV/AIDS 등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장애 분리 통계는 있으나 결핵과 관련해서는 관련 통계를 찾기 어렵다. 설사 장애인이 결핵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상 장애주류화를 할 부분이 없다.
몽골 지역문제 자체해결을 위한 자원봉사단 조직화 및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이 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몽골에서 자원봉사 체계 및 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현재 자원봉사 영역은 빈곤아동, 생활환경, 치안 등인데, 개별활동의 내용은 그러한 자원봉사 영역에서 관련 사회문제의 해소 방안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자원봉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자원봉사조직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주류화를 할 여지가 없다.
스리랑카 와팔라지역 관광직업전문교육 사업	이 사업은 관광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그 졸업생들을 관광산업의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분야의 직업훈련 참가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는 무척 클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장애인이 관광 분야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사회 및 장애인 자신의 편견(태도적 장애물)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사업 제안 기관은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장애인을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전문학교에 입학시키고 필요할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원활하게 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주류화 조치에 해당한다. 다만, 관광산업 측은 직원이 특정 장애를, 특히 외견상 드러나는 장애를 갖지 않을 것을 소위 '진정직업자격'으로 간주할 것이기에 관광 관련 직업훈련을 마친 장애인이 취업될 소지는 매우 낮다. 이처럼 이 사업은 장애주류화를 할 경우 장애주류화의 목표인 장애인 니즈(취업)의 평등한 충족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없기에 장애주류화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캄보디아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및 CSO 실무자 역량강화	이 사업은 캄보디아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캄보디아의 CSO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사 과정을 신설하여 지원하며, 빈곤 패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권리 등과 무관하여 장애주류화를 할 부분이 없다.

사업명	장애주류화 불가능 사유
탄자니아 다레살람 지역사회 중심 신생아 감염관리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사업	본 사업은 감염병으로 인한, 특히 수인성 감염병으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비장애 영유아에 비해 수인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증거가 없는바, 이 사업에서 장애 영유아와 관련하여 사업을 장애주류화할 근거가 없다. 한편, 본 사업에서 산모 보건을 위한 활동도 하는데, 이 활동(지표를 통해 추정되는 활동은 의료시설을 이용한 분만 증진)은 본 사업의 핵심인 감염병 관리와 무관하고 비중도 아주 낮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산모와 관련하여 장애주류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별첨 5] 장애포괄적 사업의 주요 요건

	장애포괄의 요건	유의 사항
장애통계 제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그 충족에서 기존의 격차를 보여주는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의 니즈와 관련하여 해당 니즈가 있음에도 충족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 등 장애특정적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장애인의 니즈가 노동과 같은 특정 사회생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라면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할 수 있다. - 협력국이 사업과 관련한 장애분리 통계나 장애특정적 통계를 생산하지 않아서 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서 소규모 조사를 통해서 해당 통계를 수집해야 한다.	- 해당 니즈가 있음에도 충족되지 않은 장애인의 비율은 주로 사회서비스 등 장애인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수급이 필요함에도 이를 수급 받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다. 재활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의 비율이 그 예다. 이때 재활치료 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인의 니즈는 비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것인데, 만약 사업의 명시적 목표가 '재활치료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향상'이라면 장애인의 일상생활 기능의 제약에 대한 통계도 유의미한 장애특정적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해당 니즈의 충족이 요구되는 정도에 관한 통계 또는 해당 니즈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에 관한 통계라 할 수 있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다. 사업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비장애인과 평등한 사회생활의 참여'이고 그 목표가 명시적이라면 장애분리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령,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더 많은 장애인을 경쟁적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장애로 분리된 취업률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제시한 장애통계를 기초선의 설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활용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기초선은 사업 착수 시 설정할 수 있다.
니즈조사	잠재적인 사업 대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이 불충족된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사업 내용)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도(사업 목표)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니즈는 같다. 다만 장애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장애인의 니즈가 불충족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불충족되는, 그래서 특정한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니즈는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업에서 니즈조사는 장애인에게 특정한 니즈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자, 그 불충족된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라 할 사업 내용과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도라 할 수 있는 사업 목표에 대해 사업 대상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장애인의 니즈를 사업에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에 대한 그들의 참여라는 장애포괄적 개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니즈 충족의 장애물 확인 과 그 제거 조치의 사업 반영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제도적·환경적·태도적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이중트랙접근법의 트랙별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삼는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적용된다. 장애특정적 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비장애인처럼 원활하게 일상생활에, 또는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관련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인 만큼, 또한 그러한 참여가 장애인의 니즈인 만큼,

	장애포괄의 요건	유의 사항
	-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그들의 니즈를 평등하게 충족시키고자 할 때, 장애인의 니즈가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거나 특정 사회생활(교육, 고용, 보건 등과 관련한 생활)에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니즈가 불충족된 것을 완화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러한 불충족을 야기한 장애물들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된다는 말은 장애특정적 사업에도 적용된다. -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장애물들은 비장애인의 니즈 충족에는 장애물들로 작용하지 않는, 장애인만 겪는 장애특정적인 장애물들이다. 그러한 장애물들은 제도적 · 환경적 · 태도적 장애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이 장애물들을 확인하는 것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 장애물들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장애인의 니즈가 불평등하게 충족되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은 최대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상기 세 부류의 장애물들 중 환경적 장애물의 확인이 가장 쉽고, 제도적 장애물의 확인이 제일 어렵다. 후자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할 수 있다. - 확인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조치는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즉, 사업의 개별활동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장애물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개별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해야 한다. 가령, 제도적 장애물이 확인되었음에도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활동을, 예를 들면 장애물이 되는 협력국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장애 민감한 지표 구축	사업이 소득, 교육, 건강 등 권리적 차원의 자산(asset)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나 통제에서의 변화, 사회구성원들의 장애인식에서의 변화와 같이 사람에서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또는 사업이 그러한 접근이나 통제를 증진하는 제도(법 · 정책 ·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같이 사람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변화를 목표로 할 때, 해당 목표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해야 한다. 상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장애 민감한(disability-sensitive) 지표라 한다.	- '장애 민감한' 지표의 장애 민감성은 해당 지표가 권리적 차원의 자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통제의 변화를 측정하는 타당성(validity)의 정도에 따라 커지거나 낮아진다. 가령, 직업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목적이 '장애인의 직업적 스킬 향상'을 그 목적으로, 그리고 그 지표로 '훈련 이수율'을 내세운 경우에 이 지표는 장애를 가진 훈련생들의 훈련에 투여한 노력을 일부 측정하고 따라서 직업적 스킬 향상이라는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도 있다. 허나 해당 변화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낮다. 당해 목적의 달성에서의 진척을 좀 더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 지표는 관련 자격증 취득률으로, 이 지표는 훈련 이수율보다 훨씬 더 장애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 장애 민감한 지표 중에서 비장애인과 대비해서 권리적 차원의 자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통제에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는 '장애로 구분된 지표(disability-differentiated indicator) 또는 장애분리 지표이고, 장애인들에서의 변화만 측정하는 지표는 '장애특정적 지표(disability-specific indicator)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둘 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장애분리 지표여야 한다.

	장애포괄의 요건	유의 사항
장애 민감한 위험 확인 및 대응	사업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장애 민감한 위험이, 즉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 대해 더 부정적인 위험이나 장애특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민감한' 위험은 사업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그러한 위험 중 일부는 사업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사항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험이고, 일부는 장애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가령, 지역주민을 한 장소에 모아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하는 개별활동은 지역주민들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지만 장애인식 자체가 낮기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모으기 어렵다는 장애 민감한 위험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다른 행사를 이용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위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되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의 예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재활 차원의 바리스타 양성 교육에서 화기를 다룰 때 타인들보다 더 화상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다는, 그러나 전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러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화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거나 화상 위험이 적은 화기를 사용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참여 보장	기획 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하며, 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관련 조치와 예산을 마련하여 집행해야 한다.	- 기획 단계는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기에 이 단계에 사업 대상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획 단계에서의 장애인의 참여는 사업에 대한 그들의 니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장애인의 의견을, 적절할 경우 사업 기획에 반영하고 그 반영 내용을 제안서에 적시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기 위해 역량강화가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사업 기획과 평가는 다수의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바, 참여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 강화 활동은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데, 사업 제안서에 해당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적시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장애인단체가 장애특정적 민관협력사업의 수행기관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업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참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 매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수행 기관이 장애인단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사업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장애의 다양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구정보 2020-19-278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발 행 2020년 12월

발 행 인 손혁상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ODA연구정보센터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우: 13449)

전 화 1588-0434

팩 스 031)740-0260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 쇄 (주)명진씨앤피

I S B N 978-89-6469-570-8 93320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KOICA 장애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